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04-01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1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11년 5월 31일 ~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엄석진 교수

공동연구원: 김성훈 교수

2011년 11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론10
1. 연구 분석틀10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10
제3절 국내외 연구동향17
1. 농식품 산업 관련 선행연구17
2. 농식품 연관 산업 관련 선행연구19
3. 농식품 연관 산업 수출 관련 선행연구20
4.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연구 의의24
제2장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 현황26
제1절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 개념 및 범위 설정26
1. 관련 개념26
2. 농식품 연관산업 개념정의37
제2절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 현황45
1. 농식품 연관산업 분류46
2. 농식품과 전후방 연관 검토51
3.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현황53
제3장 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지원 현황87
제1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지원정책87
1. 주요 수출 지원사업87
2. 수출 단계별 지원제도100
제2적 농식품 여관사업 수축지원정책104

1.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환경104
2.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전략과 지원정책113
제3절 주요국 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지원정책123
1. 미국123
2. 일본127
3. 중국134
4. 네덜란드141
5. 시사점143
제4장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145
제1절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유망분야 선정145
1. 수출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AHP 설문조사 개요 ······145
2. AHP 설문조사 결과146
제2절 농식품 연관산업 분야별 정책우선순위 선정148
1. 정책우선순위 선정 조사방법 개요148
2. 조사 결과 분석151
제3절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158
1. 농식품 연관 산업 수출입 통계 구축158
2. 농식품 연관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162
3. 대외 홍보 지원의 강화163
4. 진입장벽 완화163
5. R&D 지원 등 기업의 수출 능력 강화164
제5장 결론166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166
제2절 연구의 한계167
참고문헌169

부록1.	각종 통계 자료	173
부록2.	분야별 AHP 설문지	225
부록3.	농기계 분야 정책별 AHP 설문	229
부록4.	인터뷰 질문지	233

〈표 목 차〉

丑	1 3	주요 산업별 세계 시장규모(2008년) 및 전망치(2013년)	·····2
丑	2 =	국내 식품산업 규모	·····2
표	3 =	총부가가치 중 농림어업의 비중	3
丑	4 3	농림축산물 수출 실적	·····4
표	5 3	푸드시스템 구성 산업 분류	12
丑	7	국내 식품 기계·기구류 산업 SWOT 분석	15
丑	8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론	17
丑	9 3	농식품 및 연관산업 분류	34
丑	10	산업연관표에 의한 농식품 분류체계	·····47
丑	11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농식품 분류체계	·····48
丑	12	종자 수출현황(2010~2011)	·····55
표	13	무종자, 양파종자 수출(2008~2011)	·····56
丑	14	무종자 주요수출국 현황	·····57
丑	15	무종자 주요수출국 현황	·····58
丑	16	농기계 수출 현황(2010~2011)	·····59
丑	17	주요 농기계 품목별 수출 현황(2008~2011)	·····61
丑	18	농업원예, 임업용 기계 수출국 현황	·····62
丑	19	수확기, 탈곡기 등의 수출국 현황	·····65
丑	20	착유기와 낙농기계 수출국 현황	66
丑	21	사육양봉용 기계 수출국 현황	·····68
丑	22	채두류 기계 수출 현황	69
丑	23	식품가공 포장기계 수출현황(2010~2011)	·····72
丑	24	식품기계 주요품목 수출 현황(2008~2011)	·····74
丑	25	식품음료기계 수출국 현황	·····75
표	26	세정, 건조용 기계 수출국 현황	·····77

표 27 용기 충전 기계 등 수출국 현황79
표 28 기타 포장기계 수출국 현황81
표 29 포도주 등 제조 기계 수출국 현황82
표 30 수동식 기계기구 수출국 현황84
표 31 동식물성 비료 수출 현황(2008~2011)85
표 32 동식물성 비료 수출국 현황86
표 33 주요 수출지원사업88
표 34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보조 지원 및 융자 지원 규모100
표 35 수출단계별 문제점과 지원방안103
표 36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기대효과112
표 37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 담당업무123
표 38 수출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AHP 전문가 소속 및 지위146
표 39 수출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AHP 설문결과 ······147
표 40 수출지원정책 분류149
표 41 정책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AHP 전문가 명단150
표 42 농기계 분야 AHP 조사결과 ······152
표 43 외식업 분야 AHP 조사결과 ······153
표 44 HS코드에서 확인 가능한 농식품 연관산업 품목 체계159
표 45 [AG code 2]를 위한 필요 통계 자료 구축 방안 ······161
표 46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165
표 47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농식품 후방연관산업 부문173
표 48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농식품 전방연관산업 부문183
표 49 2005년 후방연관산업 영향력 계수(상위 10개 부문)186
표 50 2005년 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188
표 51 2005년 전방연관산업 감응도 계수(상위 10개 부문)189
표 52 2005년 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192
표 53 2006년 후방연관산업 영향력 계수(상위 10개 부문)193
표 54 2006년 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196

199	부문)	10개	계수(상위	감응도	전방연관산업	2006년	55	표
200	부문)	10개	수출(상위	총합과	전방연관산업	2006년	56	丑
201	부문)	10개	계수(상위	영향력	후방연관산업	2007년	57	표
······204	부문)	10개	수출(상위	총합과	후방연관산업	2007년	58	표
······205	부문)	10개	계수(상위	감응도	전방연관산업	2007년	59	표
208	부문)	10개	수출(상위	총합과	전방연관산업	2007년	60	丑
209	부문)	10개	계수(상위	영향력	후방연관산업	2008년	61	丑
······212	부문)	10개	수출(상위	총합과	후방연관산업	2008년	62	丑
······213	부문)	10개	계수(상위	감응도	전방연관산업	2008년	63	丑
······216	부문)	10개	수출(상위	총합과	전방연관산업	2008년	64	표
······217	부문)	10개	계수(상위	영향력	후방연관산업	2009년	65	표
······220	부문)	10개	수출(상위	총합과	후방연관산업	2009년	66	표
······221	부문)	10개	계수(상위	감응도	전방연관산업	2009년	67	표
224	부무)	1 () 기	수축(사의	초하과	정반여과사업	2009년	68	귰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분석틀10
그림 2 농수산 관련산업의 구분13
그림 3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구분41
그림 4 농생명산업 개념도42
그림 5 농식품 연관산업의 범위45
그림 6 농기계 수출 추이104
그림 7 2011년 상반기 농기계 수출품목105
그림 8 농기계 수출 국가 비중(2011년 상반기)107
그림 9 외식업 성장 추이110
그림 10 수출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AHP 설문결과 ······147
그림 11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활성화 정책맵(map) ·······15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농식품 및 연관 산업 현황
 - 세계적 산업동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데이터모니터
 (Datamonitor)가 2009년 3월 발간한 산업별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농식품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달러에 달함
 - 이는 자동차산업의 1.7배, 철강산업의 5.8배, 반도체산업의 8배 규모로, 이들 3개 유망산업 시장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큰 시장
 -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농식품 시장이 2008~2013년 동안 연평균 4.5%씩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에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
 -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농식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세는 자동차 시장(3.5%), 반도체 시장(1.8%)보다 성장세가 높은 유망한 시장
 - 이렇게 세계 농식품 시장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 가 크고, 성장률도 높을 뿐 아니라 특성상 문화·의학·유통 산업 등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 잠재력이 큼1)

¹⁾ 임정빈 외(2010),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27(4), 한국식품유통학회

표 1 주요 산업별 세계 시장규모(2008년) 및 전망치(2013년)

(단위: billion \$)

분야	2008	2013	연평균 증가율
농식품	4,020.5	5,013.9	4.5%
자동차	2,409.6	2,861.4	3.5%
철강	685.6	1,622.3	18.8%
반도체	279.5	305.6	1.8%
IT 서비스	501	614.3	4.2%

※ 자료: 임정빈 외, 2010

국내 식품 산업은 지속적 성장추세. 식품산업의 규모는 2005년 약 90조원에서 2008년 약 12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 농림업 생산액은 2007년 35.8조원 규모에서 2009년 43조원 규모로 증가. 어업 생산액은 2007년 5.7조원에서 2007년 7조원 규모로 증가 추세

표 2 국내 식품산업 규모 (단위: 백만 원)

년도	시장규모	음료식료품	음식점업
2005	89,920,724	43,668,201	46,252,523
2006	95,273,791	44,381,449	50,892,342
2007	107,514,407	48,149,057	59,365,350
2008	119,923,594	55,211,670	64,711,924

※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는 그 규모면에서는 2003년에 비하여 2009년
 약 25% 성장하였지만,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부터 2007년 사이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2008년 이후 조금씩
 회복세에 있음

표 3 총부가가치 중 농림어업의 비중

(2005년 기준가격, 단위: 십억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부가가치	710 160	749.069	700 004	821.200	865.925	990 700	000 072
(기초가격)	719,169	749,069	780,094	021,200	000,925	889,790	900,073
농림어업	24,112	25,308	25,648	25,774	26,404	27,878	29,964
비율	0.03352	0.03378	0.03287	0.03138	0.03049	0.03133	0.03329

※ 자료: 통계청

- 농림수산 생산 부문 뿐 아니라 관련된 유통, 식품가공, 자제 및 외식산업, 농림수산 서비스 등의 전·후방 산업을 합치면 2008년 기준 국내 총부가가치 비중의 9.4%(김철민, 2009).
- 2. 농식품 및 연관산업의 취약성
- 1) 농식품에서 연관산업으로 낮은 파급 효과
 - 농식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침체의 영향이 적고, 향후 인구증가, 소득증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 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 산업에서 10억 원의 생산증대는 식 품관련 전후방산업에 20억 원의 생산 증대 유발효과를 보임²⁾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식품 산업은 생산 증대 유발 효과가 극히 미약함. 프랑스 와인은 포도 농민,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 업자, 외식산업자, 관광업자의 이익으로 연결됨. 중국은 2004년에 농식품 총생산액이 3조 6,000억 위안에 달했으며 농식품 산업 가

²⁾ 임정빈 외(2010),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27(4).

공산업의 부가가치가 1조 1,000억 위안을 기록.3 한국의 경우에도 쌀 10kg의 가격은 2만 원 수준이나 이 쌀로 떡을 만들어 팔 경우 12만 5,000원이 되고, 술을 빚으면 21만 3,000원으로 더 커짐.4)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산업과 연관산업의 연계가 허술하여 이러한 효과를 놓치고 있는 실정

2) 농식품 산업의 낮은 수출 비중

- 주요 국가의 농식품 수출액에 비하여 우리의 수출규모는 매우 작음.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동남아, 인도 등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농식품 소비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도 2008년 농식품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세계 농식품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
- 또한 국내 전체 수출에서 농림어업축산물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대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비중마저도 2005년의 1.2%, 2006년의 1.04%, 2007년의 1.01% 로 점차 감소추세. 이것은 한편으로 농식품 분야를 단순한 식량적 가치의 강조에만 국한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보여줌.

표 4 농림축산물 수출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수출실적	284,419	325,465	371,489	422,007	363,534
농림어업축산물	3,415.8	3,394.8	3,759.3	4,496.5	4,809.3
비중	0.0120	0.0104	0.0101	0.0106	0.0132

[※]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

³⁾ 정호철 외(2010), 중국 농식품 가공 산업의 현황과 발전, 식품과학과 산업 43(2).

⁴⁾ 임정빈 외(2010),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27(4).

- 이에 반하여 뉴질랜드 같은 경우 농림업 수출액은 143억 달러로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7%이고 뉴질랜드 농축 산물의 총 수출은 2009년 기준으로 2백 6십 5억 달러(NZ\$)에 달함.5) 우리와 같이 농경지 규모가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첨단원예, 가공품을 생산하여 대량 수출하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있음
- 네덜란드는 2008년 농식품 수출액이 약 1,013억 달러로, 미국(약 1,400억 달러)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함. 네덜란드는 10,400ha
 의 첨단 유리온실에서 고품질 화훼, 관상식물, 채소를 생산하고 국내외 가공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한편 전 세계로부터 화훼를 수입하여 중개무역을 함으로써 수출농업 대국이 됨6)
- 3) 농식품 산업과 연관산업 간 상호 연계 부족
 - 농식품 산업과 연관산업들은 동반 성장 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됨. 일례로 음식 및 음식문화 산업을 들 수 있음
 - 세계 각국 정부는 현재 자국의 음식을 산업화 하고 세계화하기위한 노력이 한창
 -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2001년부터 국가 주도로 해외의 태국음 식점을 2008년까지 13,000개, 2013년까지 20,000개로 늘리겠다 는 목표를 가지고 'Kitchen of the world'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⁵⁾ 김경필(2011),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 민 수출조직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한국농촌경제연구원.re.kr/kor/info/world_view.php?cpage=1&paperno=M45-128-02&s_key=title&s_keyword=뉴질랜드

⁶⁾ 임정빈 외(2010),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27(4), 한국식품유통학회

하여 소기의 성공을 거두고 있음

- 일본은 2005년 세계 일식인구 6억 명을 2010년까지 12억 명으로 늘린다는 '일식인구 배증계획'아래 'TRY Japan's Good Food'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이미 어느 정도 세계적 음식으로 자리매김한 이탈리아 음식의 경우 '해외 이탈리아 음식점 정부인증제', '이탈리아 음식 외국 조리사 교육' 등을 통해 음식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7)
- 한국 또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난해 농림부를 농림수 산식품부로 개편하고 2017년까지 한식을 프랑스, 태국, 중국, 이탈 리아와 함께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한식세 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한식 세계화 전략이 홍보에만 그치고 있고 정작 농식품
 및 연관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
 - 또한 한식 세계화가 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데 집중 할 뿐 이와
 관련된 연관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자국의 음식 수출하면서 음식 문화까지 수출하고 있음. 해당 국가의 음식에 관련된 제품, 원료, 시스템, 조리 방법 등 또한 수출 상품이 됨

⁷⁾ 전혜경 외(2009),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및 한식세계화 연구개발 동향, 식품산업과 영양 14(1).

3.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고, 한국은 경 쟁력이 있음
 - 전 세계 농식품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달러에 달하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보다 큰 시장
 - 한국은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동남아, 인도 등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농식품 소비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
 -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한국 농식
 품 및 연관산업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품 측면에서도 한국 농식품 및 연관산업은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 김치는 미국의 건강 전문 잡지 Health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고⁸⁾ 2004년 WTO에서는 한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모범식으로 선정한 바 있음.⁹⁾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일본 수입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한국 농식품 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 국의 장점을 살려 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 먼저, 농식품 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함.
 즉, 농식품 분야를 농어업 생산물과 농식품 가공물 위주로 생각하는 소극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적극적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이는 현재의 농식품 및 연관산업으로의 낮은 파급효과를 인식측면에서 전환하는 한편, 농식품 산업

⁸⁾ 연합뉴스, 〈美잡지, 김치 세계 5대 건강음식에 선정〉, 2006-03-25

⁹⁾ 전혜경 외(2009),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및 한식세계화 연구개발 동향, 식품산업과 영양 14(1)

분야의 장점을 살리는 것. 농식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침체의 영향이 적음은 물론, 향후 인구증가, 소득증대 등으로 시장규모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미래 산업의 중요한 분야.10) 따라서,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산업과 연관산업들 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 둘째, 현재의 농식품 산업 수출의 낮은 비중을 적극적으로 타계하려는 노력이 필요. 현재의 한류열풍이나 인삼·김치 등의 한국 농식품에 대한 호평, 주변지역의 넓은 소비시장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고려한 수출 전략을 고려하여야 함. 현재 한식으로 대표되는 농식품은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해외에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음. 예를 들어, CJ 비비고는 작년 5월 이후 국내 4개, 해외 3개 매장을 오픈했고¹¹⁾ 놀부 NBG는 '놀부 항아리갈비'란 브랜드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싱가포르, 태국 등에 진출했고 베이징에서는 프리미엄 한정식식당인 '수라온'을 운영.¹²⁾ 하지만 농식품의 해외 진출이 농식품 연관산업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 셋째, 농식품과 농식품 연관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방안 및 모델의 수립이 필요. 현재 농식품과 농식품 연관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을 극복하고, 상호간 수출 증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전술적 고려가 필요할 것. 외국의 경우 이탈리아는 '해외 이탈리아 음식점 정부인증제', '이탈리아 음식 외국 조리

¹⁰⁾ 임정빈 외(2010),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27(4), 한국식품유통학회

¹¹⁾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51916443145877&outlink=1

¹²⁾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2550101

사 교육'등 이탈리아 음식뿐만 아니라 시스템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를 통해 음식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네덜란드는 농경지의 규모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연관 및 가공 산업의 수출에 집중함으로서 수출 농업의 대국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음. 반면에 한국의 농식품 산업과 농식품 연관산업 간에는 선진국의 사례와같은 명확한 연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는 농식품 산업과농식품 연관산업이 연계될 때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잃는다는 문제로 나타남. 따라서 농식품 및 연관산업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4. 연구의 목적

- 첫째, 농식품 및 연관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재정리하고, 해당 산업의 현황을 통계 자료와 사례로 제 시
- 둘째, 농식품 연관산업에 관련된 환경을 분석하여 한국 농식품 연 관산업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기를 제시
- 셋째, 농식품 연관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 뷰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수출 애로점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수출 애로점을 파악하고 정리
- 넷째, 위 세 가지를 바탕으로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때는 농식품과의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에 중점을 두어 선행 연구와 차별화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해당 수출산업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술논문으로 발전 시켜 해당 영역 후속 연구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 함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론

1. 연구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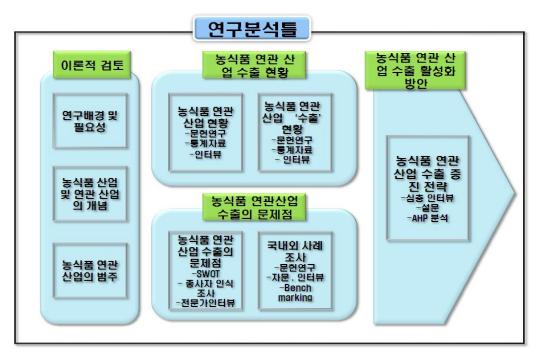


그림 1 연구 분석틀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농식품 연관산업의 정의 및 현황 파악
 - 농식품 연관산업의 정의에 관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6조에서 8조에는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¹³⁾
 - 권오복 외(2009)의 연구에서는 농식품 산업의 개념을 살피면서 밀접한 연관을 갖는 농산업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데이비스와 골드버그는 농산업의 개념을 따라 농산업을 농업 내의 자재 공급산업, 농산물의 저장 가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합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농업에 식품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농식품 산업도 농산업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농식품산업을 농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농식품 산업은 농식품 산업의 생산 부분 뿐 아니라, 농식품 산업의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14)
 - 황수철 외(2009) 연구에서는 푸드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식품산 업을 파악하고 있는데 푸드시스템은 식료공급과 관련된 모든 산 업과 생산단계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식료흐름과 관련되는 모

¹³⁾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¹⁴⁾ 권오복 외(2009), 농식품 R&D 전망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든 구성주체의 경제활동 및 그들 간의 상호관계, 또한 그것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아우르는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식료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모든 경제활동과 그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 등을 포괄하여 푸드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식료의 흐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만으로 푸드시스템의 범위를 한정15)

표 5 푸드시스템 구성 산업 분류

구분	통합소분류
농산물	벼, 백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기타식용작물, 축산, 기타임산물
수산물	수산어획, 수산양식
1차 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품, 정곡, 제분, 제당, 전분 및 당류, 유지 및 식용류
2차 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품, 정곡, 제분, 제당, 전분 및 당류, 빵 과자 및 국수류, 조미료, 유지 및 식용유, 조미료, 과실 및 채소 가공품, 기타식료품, 주류, 음료수 및 얼음
외식	음식점
농자재산업	배합사료, 비료, 농약, 농업 및 건설 기계, 기타토목건설, 기타사업서비스

※ 출처: 황수철 외(2009)

김철민 외(2009)는 농업관련산업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 후, 협의 혹은 전통적인 농업관련산업에는 투입부문만을 포함한 반면 광의의 개념에는 투입 부문,생산물 시장부문, 생산부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또한 서울대 농업개발

¹⁵⁾ 황수철 외(2009), 식품산업의 국내 농어업 성장유발효과 분석, 농정연구센터

연구소는 전통적인 농업생산 부문을 제외하고 전·후방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제반 관련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과 농업생산 부문(Agriculture)을 합친 개념으로 농산업(AgriculturalIndustry)개념을 사용하고 있 다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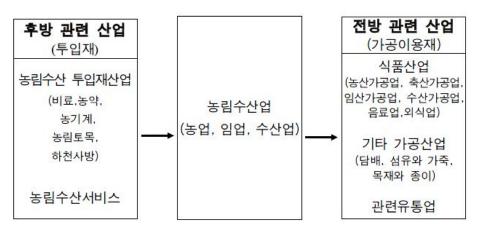


그림 2 농수산 관련산업의 구분(김철민 외, 2009)

-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산업연관표 등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농식품 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정리 한 후 농식품 연관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검토할 것.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농식품 및 농식품 연관산업에 대하여 재분류 할 것. 문헌연구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농식품 산업 및 연관산업의 정의와 범위가 파악되면 문헌연구와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식품 연관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 자료를 정리할 것
- 2) 농식품 산업 연관산업 수출 환경 분석

- 조성제 외(2010)는 2000년 이후 농업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대외적 환경변화요인과 대내적 변화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 대외적 환경변화로서는 첫째, 다자간 농업협상의 시작, 둘째, 국제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요증대, 셋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를 제시. 대내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첫째, 농가 간 경쟁 발생과 개별 농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둘째, 농산물 소비형 태의 변화되고 있으며, 셋째, 고급화는 농산물 소비 형태 변화를 제시
- 임정빈 외(2010)는 21세기 세계경제는 1995년 출범한 WTO 다자체제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쌍무적 FTA체결 등으로 인해모든 분야에 걸쳐 긴밀하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 농식품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 FTA와 WTO를 통한 세계 경제통합 현상의 확대 및 심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농식품 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전통적 1차 농업 생산과 내수 지향적 농산물 유통은 이미 농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현재와 같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의 생산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과 함께 지금과 같은 내수지향적 생산 및 유통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에 이루어진 식품관련 기계·기구류 체계 정비 및 수출 전략 연구에서 식품관련 기계·기구류 관련 환경을 SWOT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표 7 국내 식품 기계·기구류 산업 SWOT 분석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식품 기계의 국산화 비율 상승 - 식품안전(HACCP, 이물검출 등) 분야 기술 수준 높음	 식품 기계산업의 정책적 지원 부족 기계 산업에서의 중요도 및 인지도 낮음 → 식품기계 산업의 구심점 없음 식품 기계 산업의 영세성 대규모 플랜트 규모의 사업체 부족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식품산업진흥원 등 산업 발전의 근간 마련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의 식품산업 발전으로 국내 기계 수출 시장 확대 일로 	-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 국내 기업 간 과다경쟁 우려

※ 출처: 임정빈 외, 2009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 환경 분석을 정리할 것. 그리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AHP 기법을 통해 해당 사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농식품 및 연관산업과 관련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시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 또한 각 사업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각 사업 분야의 특징적인 환경 변화와 각 사업 분야에 결정적인 환경 변화는 무엇인지 제시
- 3) 연관산업 문제점 및 수출 제약 요인,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식 조사
 - 한관순(2009)은 소비자의 취향 변화, 원자재값 상승, 포장수요업체와 유통업체의 다양한 요구, 세계화로 인한 포장 수요 증가, 친환경 등을 농식품 포장 산업의 주요한 환경 변화라고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식품 포장 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40%, 포장 전문 인력 보유는 35%, 포장 관련 인프라 구축은 30%에 그치고 있어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에 이루어진 식품관련 기계·기구류 체계 정비 및 수출 전략 연구에서는 식품 관련 기계·기구류 산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 통계 자료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없는 상황을 지적. 국내의 경우 식품산업의 제조업 23조원, 외식업 60조원 규모로 발전하고 있지만 식품산업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식품기계 산업은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 식품 기계 산업의 발전하고 수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은 식품 기계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나 협의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뤄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식품기계 산업이 발전한 국가들과 한국의 차이는 관련산업의 협회가 업체 대표 단체로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발전되었다는 점을 제시

본 연구에서는 연관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 AHP 설문조사를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의 여건 및 전망, 수출 제약 요인 등의문제점을 조사함. 또한,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의 수출 의식 조사를 통해서 사업자들은 농식품 수출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제시

4)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간한 '한국의 농림수산식품 글로벌시장의 중심에 서다'에서는 세계 시장 진출에 성공한 농식품들의 사례를 소개. 농식품 산업에 관련된 사례는 이 책에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농식품 연관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한 문헌을 찾기가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연관산업의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고 문헌을 조사하여 국내, 국외 농식품 연관산업 성공 사례를
 찾아 소개하고 성공요인 분석

표 8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론

연구 내용	방법론
(1) 농식품 연관산업의 정의 및 현황 파악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2) 농식품 산업 연관산업 수출 환경 분석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종사자 설문
(3) 연관산업 여건 및 전망, 문제점 및 수출 제약 요인,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의 수출 의식 조사	종사자 설문조사, 전문가 AHP 설문, 심층 인터뷰
(4)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세미나 및 협의회

제3절 국내외 연구동향

1. 농식품 산업 관련 선행연구

- 전혜경 외(2009)는 농식품 산업의 대내외 현황을 검토하면서 농식품 및 한식세계화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방향을 소개
 - 이에 따르면 세계 식품 시장이 4조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3.2% 성장이 예상됨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음식 및 음식 문화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국가 차워에서 세계화 정책을 추진
 - 이에 한국 정부도 한식 세계화 의지를 표명하고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단 설립 등을 추진
 - 농촌진흥청은 한식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 세계적인 음식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용화, 산업화, 세계 화를 위해 노력
- 장종익 외(2010)는 농식품 산업에 있어 밸류체인적 접근법이 지니는 유용성을 검토하고 이 접근의 분석 요소와 초점을 규명
 - 농식품 산업 중 건고추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적 접근을 시도함
 으로서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의 차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밸류

체인 분석이 심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 자료들이 무엇인지 논하고 있음

- 밸류체인적 접근 방법은 주로 농식품의 공급체인 상에서의 품 질 차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급 주체들이 여타의 경제 주체 들과 어떠한 수직적·수평적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해 하는데 유용
- 건고추 산업에 있어서 밸류체인적 접근으로 분석한 결과 고춧 가루의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과 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림
- 박민선(2008)은 농업과 식품의 세계화로 인하여 농식품의 위험 역시 세계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농업에 유전공학이 도입되고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의 식품지배 등을 꼽고 있음
 - 농식품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표시제의 도입을 주장
- 유찬희(2009)는 현재 식품산업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친환경 농식품 산업에 대해 검토
 - 유럽연합의 친환경 농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조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발전 추이를 정리
 - 또한 친환경 농식품이 경제·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까지의 연구결과와 미래의 주요 과제를 검토
 - 2006년 유럽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10% 성 장하여 14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성장 양상에는 차이가 있음.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면에서도 마찬가지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농촌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

업을 지원. 연구기관은 민간기관들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90년 대 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

- 김병조 외(2007)는 농림부의 식품산업 관련 전문성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민간단체가 연계를 강화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 식품산업 관련 주요 민간단체들은 농림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돼 있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농림부의 행정조직이 정비되고, 농림부 산하에 새로운 민간단체가 설립된 가운데 본격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가칭)식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건의

2. 농식품 연관산업 관련 선행연구

- 황만길(2009)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식품의 연계방안을 논의
 - 익산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동북아 식품허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식품 및 연관산업과의 연계가 중요
 - 농식품 및 연관산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우선 생산 이전 단계에 부터 농업생산조직과 기업 간의 연계가 필요. 생산 단계에서는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출하·가공 단계에서는 지역내 인프라의 효율적인 결합이 필요. 유통과 마케팅도 중요한데 지역과 세계가 함께 고려될 필요. 소비 단계에서는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며 위의 모든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

- 김종훈 외(2008)는 RFID가 기존 사용되던 바코드에 비하여 내환 경성이 우수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태그가 보이지 않아도 인식 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통신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장점 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 RFID는 향후 물류분야에서 바코드를 대치 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식품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함
 - 선진국에서는 이미 농식품 관련하여 RFID가 도입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에 RFI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RFID 적용 기술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
- 권오복 외(2009)는 토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시설원예산업과 같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발 전해 나가고 있는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도 지속될 전망하고 시설원예산업이 원활하게 발전하려면 후방산 업인 시설농자재 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
 - 시설농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소규모 업체 간의 과당경쟁 구조개선, 둘째, 원자재 공동구매 방안 모색, 셋 째, 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뢰 구축, 넷째, 에너지 절감형 시설농자재 개발, 다섯째, 적극적인 수출시 장 개척 등을 제시

3.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관련 선행연구

- 임정빈 외(2010)는 농식품 산업의 가치와 수출 가능성, 그리고 농식품 수출의 현황과 패턴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과 기

회요인을 살펴 본 후 향후 해결해야할 중점과제를 제시

- 농식품 시장은 세계적으로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 보다 그 규모 가 더 큰 시장
- 농식품의 수출은 농어업 성장 견인 및 농가소득 제고, 고품질 농식품 생산 유도와 수입 농식품에 대한 대응 방안, 국민 경제 및 국격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
- 한국의 경우 중국, 일본 등지와 같은 큰 시장과 인접해 있고 한식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리한 환경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식품 수출 실적은 매우 저조함.
- DDA 농업협상과 FTA의 타결, 수출 유망 국가의 웰빙 선호 추세 확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등은 한국 농식품 산업의수출 증대에 있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음.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차별화된 수출 확대 전략,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 농식품 기술 수출 등이 필요
- 정호철 외(2010)는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의 현황을 검토
 -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농업과 농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산업에서 산업 구조 및 상품 구조와 기술 구조를 적절히 결합해 산업화,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각 중 농산물 생산 면적과 소비 인구가 수십 배에 달하는 강대 국을 가까이 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농산업과 농식품 산업의 정책과 이에 다른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
- 조성제(2009)는 농산물 수출의 의미와 문제점, 향후 과제를 제시
 - 농산물 수출의 의미는 첫째, 국내농업생산기반의 재구축과 농가소득의 안정성 구축, 둘째,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대한 방어 능력 향상, 셋째,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하는 것

- 한국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출 대상 국가가 제한 적이고, 둘째, 수출 품목이 일부로 제한되어 있고, 셋째, 농식품 수출 체계 및 조직이 미흡하다고 지적
- 향후 과제로는 기반조성분야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조직화 가 필요하고 집중수출품목을 집중육성 해야 한다. 지원정책 분 야에서는 수출지원정책의 제도개선과 수출 관련 당사자 간의 유기적 역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
- 조성제 외(2010)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은 새로운 농업개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영세성을 벗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되었다고 지적
 -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한 농업혁신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e-농업 개념을 살펴보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전자무역과 농식품 수출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현재 추진되고 있는 B2B유형의 농식품 e-마켓플레이스의 기본구조와 서비스 그리고 활용도와 문제점을 분석
 -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이 전자무역방식으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결론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생산을 비롯한 유통과 가공 그리고 국제교역에 활용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로부터 유통 및 수출자 그리고 소비자에 이르는 일련의 정보체계를 연계하는 방법이 포함된 전자농업 형태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발전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서 인터넷기반의 전자무역 솔루션을 응용하여 B2B 농식품 e-마켓플레이스인 AgroTrade를 통한 농식품 수출과 전 자무역의 연계는 농식품 수출활성화 추진과 농업구조개선을 위

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의의를 가짐.

- 향후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B2B AgroTrade 시스템의 향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첫째, 공적기능에서 민간기능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 둘째, 아웃소싱기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관설립. 셋째, 시스템 개편을 통한 보다 개선된 농식품 전자무역의 허브화를 구축. 이외에도 무역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한 농식품 e-마켓플레이스의 질적 변화를 추구
- 강창원(2009)은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조사 연구하여 향후 한국 농산물 및 농식품의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등을 꼽고 있음
 - 또한 수출 지원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반면 절차가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제도 자체의 개선과 확대 시행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 농림수산식품부(2010)에서는 식품관련 기계·기구류에 관련하여 식품산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식품 관련 기계·기구의 체계가 미비하고, 식품산업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계·기구 기술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신규 식품시장을 향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이에 따라 식품 관련 기계·기구의 범위 및 분류체계 마련하는 한편 식품 관련 기계·기구류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식품 기계·기구류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

4.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연구 의의

- 선행 연구를 농식품 산업에 관련한 연구, 농식품 연관산업에 대한 연구, 농식품 및 연관산업의 수출에 관한 연구로 분류해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농식품 산업 선행연구들은 안정성에 관한 연구와 한식과 한
 식세계화에 관련된 연구, 농식품 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선행 연구들에서는 농식품 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의 정리와 취합이 부족
 - 농식품 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연관산 업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고 나아가 정부 가 지원할 정책 대상이 명확해 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정리하여 농식품 및 연관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정리하고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음
- 둘째, 선행연구들은 농식품 연관산업 각 분야별로 각종 통계자료들과 정책 방향을 제시
 - 그러나 농식품 연관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 그리고 농식품 산업과의 연관성이 정리하고 있는 연구가 부족하여 연관산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통계 자료와 정책 건의 사항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연관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 그리고 농식품 산업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통계 자료와 정책 건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나아가 이전까지 농식품 연관산업을 농식품에 연관시켜 파악하기 보다는 하나의 산업 분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농식품 산업과 농식품 연관산업을 상호 연관성에 집 중

- 셋째, 농식품 수출 관련 선행연구들은 수출 전략으로 주로 농식품
 자체 관한 전략들로서 원가 절감, 고급화·브랜드화, 수출 대상 대변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
 -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농식품과 농식품 연관산업의 밀접한 연계성에 대한 고려와 이를 수출 전략화하려는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이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한 연구로 식품관련 기계·기구류 체계 정비 및 수출 전략 연구 등 연관산업의 수출에 관한 연구 등 몇몇 농식품 연관 분야에 대한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농식품과 농식품 연관산업의 상호 연계선 상에서 연관산업의 수출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전략을 농식품과 연관산업 간의 밀접한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나아가 두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넷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은 문헌연구에 치중하고있음
 - 이 연구는 문헌연구 위주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연관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재 농식품 연관산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
 - 또한, 연관산업의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의 인 터뷰와 설문(인식조사) 분석을 통한 시장 지향적인 문제점 도출 에 기반을 두어 구체적이고 활용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 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의 계층층화(AHP) 분석을 통해 도출할 것

제2장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 현황

제1절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 개념 및 범위 설정

- 농림수산식품(이하 농식품) 연관산업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하여먼저 농식품의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현재 농수산식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개념 정의는 내려있지 않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신설과 함께 기존의 농수산 물 위주에서 식품을 적극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범위가 확장 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 관련 연구들에서 농림수산업이나 식품산업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이하 농식품법 및 시행령)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의 개념과 범위에접근함
- 농식품의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관산업의 범주를 모 색함
 - 연관산업의 범주는 개념적 접근과 통계적 접근으로 나누되, 개념적 접근은 문헌 및 법령을 통한 해석을 통해서, 통계적 접근은 기존의 연구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토대로 한국은 행의 산업연관표를 분류함
 - 이를 위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와 한국은행의 산 업연관표(2006, 2007, 2008, 2009, 2010, 2011)가 사용됨
- 1. 관련 개념
- 1) 농림수산업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 O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중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O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 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기본법 제3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제2조

- O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 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O 이에 딸린 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으로서 1 . 분재 생산업 2 .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말함.

□ 수산업법 제2조

- O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 O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제2조 제2

항)

- 양식 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 는 행위
- O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유반하는 사업
- O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농수산업16)

- O 한국표준산업분류 의의
 -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3년 3 월 경제활동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부문 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4월 비 제조업 부문에 대 한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체 계를 완성하였음
 - 이후 국제표준산업 분류의 변화와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2006년 4 월 개정되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제9차 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O 농업의 정의와 범위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
 -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임업 이

¹⁶⁾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의 농수산업에 대한 논의는 김철민(2008) 연구를 참조하여 재정리함

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 생산과 버섯 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됨.

-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 활동이지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됨.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은 양자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전문화율이 66
 %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됨.

O 임업의 정의와 범위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함
 -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위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됨
 - 천연고무나무의 재배나 수목원, 식물원 및 야생식물 보호관리 서비스, 휴양림의 관리나 운영은 제외됨

O 수산업의 정의와 범위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 · 식물을 채취 · 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어로 어업은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되는 각종 자연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은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 거나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수행 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 활동이 포함되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됨

□ 산업연관표로 본 농수산업의 개념과 범위17)

○ 1960년 한국은행에서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의 변화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제정책 입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 식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

O 농업의 개념과 범위

- 광의의 농업은 인간의 욕구충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용한 식물성 및 동물성 물질을 생산하는 원시산업의 일부분으로서 작물재배,축산 뿐만 아니라 임업, 수산업, 벌목업 등도 포함된다고 할수 있음
- 산업연관표에서는 농경지에서 곡물, 채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활동과 가축 등 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생 산하는 축산활동을 말함. 이러한 농업부문은 크게 작물, 축산 부 문으로 나눌 수 있음
- 육류 및 육가공품은 가축 및 가금을 도살・해체하여 생산한 육류
 (지육 및 지육부산물)를 만들거나(단, 밀도살 및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은 제외), 이를 주원료로 하여 햄, 베이컨, 소시지, 고기통
 조림 등의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활동을 말함

¹⁷⁾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농수산업 개념에 대한 논의는 김철민(2008) 연구를 참조하여 재정리함

- 낙농품은 젖소에서 착유한 원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우유와 유산균발효유, 연유 등의 액상유제품 및 입상유제품(분유 등), 고 형유제품(버터, 치즈 등), 아이스크림을 포괄
- 정곡은 농업부문의 조곡을 원료로 수탁 가공한 쌀, 보리쌀, 압맥, 할맥 및 부산물인 쇄미, 설미, 미강, 맥쇄, 맥강 등을 말하며, 제분은 밀, 옥수수, 콩, 기타 곡물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분말상태로 가공한 것과 그것들의 부산물 등을 포괄함
- 제당은 정제당과 당밀을 포괄하며, 전분은 저장물질로서 포도당
 분자가 쇄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녹말을 말하고, 당류는 물엿, 포
 도당, 과당 등이 포괄됨
- 기타식료품은 제당, 전분 및 당류, 빵, 과자 및 국수류, 조미료, 유지 및 식용유,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포괄하며, 다른 부문으로 분류할 수 없는 식료품 제조활동으로 커피 및 차류, 인삼제품, 누록및 맥아, 두부, 곡물조리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포함

O 임업의 정의와 범위

- 임업은 산림용 종자의 채취 및 묘목의 생산,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육림활동과 벌목활동을 말하며 산림 내에서 자신이 직접 채취한 야생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행하는 경우도 야생식물의 채취활동으로 보아 임업에 포함함. 수액 및 수목의 채취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함
- 일반적으로 임업은 중간투입 비중이 낮은 원시산업으로서 육림,원목, 식용임산물, 기타 임산물의4 개 부문으로 세분하였음
- 육림이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원목에는 원목과 용재가 포함됨
- 식용임산물에는 산나물, 밤, 대추 등의 종실류, 버섯 등이 포함됨.

O 수산업의 정의와 범위

- 어업부문은 바다, 호수, 강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잡고 채취하는 활동과 인공적 시설을 갖추어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활동을 말 하며 해면어종, 내수면어종, 해면양식어종, 내수면양식어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수산가공품은 어육 및 어목, 수산통조림, 수산냉동품, 수산저장품,기타 수산식품 등으로 분류됨
- 수산통조림은 어·패류를 가공하여 캔에 담아 밀봉한 것을 말하며 수산냉동품은 원형동결 또는 처리동결한 것인데 과거와 달리연근해 냉동품뿐만 아니라 원양 냉동품까지 포괄
- 수산저장품은 주로 장기저장을 목적으로 가공된 것으로 그 처리 방법에 따라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훈건품, 염신품, 염장품 등을 포괄하고, 기타 수산식품에는 김, 미역, 톳 등 식용해조류와 조미 오징어 등의 조미가공품등을 포괄함

2) 식품산업과 푸드시스템

- 농식품에 대한 개념과 범주 정립을 위해 농림수산업의 측면에서 농식품에 접근한 연구 외에 푸드시스템이라는 가치사슬적 접근을 통해 농식품 관련 개념을 범주화한 연구가 있음. 이하에서는 황수 철(2009) 연구에서의 푸드시스템 산업의 일부분으로서 식품산업 에 관한 논의를 살펴봄
- 황수철 외(2009) 연구에서는 푸드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식품산 업을 파악하고 있는데, 푸드시스템은 식료공급과 관련된 모든 산 업과 생산단계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식료흐름과 관련되는 모 든 구성주체의 경제활동 및 그들 간의 상호관계, 또한 그것에 영 향을 주는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아우르는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 으로 정의하고 있음(다만, 황수철의 연구에서는 식료의 생산, 유

통, 소비단계의 모든 경제활동과 그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 등을 포괄하여 푸드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하므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식료의 흐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만으로 푸드시스템의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함)

□ 푸드시스템 구성산업 분류(황수철, 2009)

- 농산물: 벼, 백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기타식용작물, 축산, 기타 임산물을 포함함
- 수산물: 수산어획, 수산양식으로 분류함
- 1차 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품, 정곡, 제분, 제당, 전분 및 당류, 유지 및 식용류로 분류함
- 2차 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품, 정곡, 제분, 제당, 전분 및 당류, 빵과자 및 국수류, 조미료, 유지 및 식용유, 조미료, 과실 및 채소 가공품, 기타식료품, 주류, 음료수 및 얼음 등을 포함함
- 외식: 음식점
- 농자재산업: 배합사료, 비료, 농약, 농업 및 건설 기계, 기타토목건설, 기타사업서비스를 포함함

3) 본 연구에서의 농식품의 개념

- O 기존의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경우 농업, 임업, 수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모든 농수산업의 산출물이 식품 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수산물을 농식품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함
- 푸드시스템의 경우 관련 구성산업에 농수산물 및 1·2차 가공품, 외식, 농자재산업을 포함시켜 농식품과 좀 더 밀접한 개념접근이라 할수 있으나, 어디까지를 농식품으로 범주화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음

O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식품법)과 시행령에서의 조항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식품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재구성하기로 함

□ 농수산업의 개념과 범위

- O 농식품법 제3조의 정의를 보면, 농어업에 대해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O 또한 동법 시행령도 제2조에서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나누고 있으며, 여기에서 농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며, 축산업은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을, 임업육림업은 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O 따라서 농수산업은 기존의 농업, 임업, 수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농수산물의 개념과 범위

O 농식품법 제3조 제6항에는 농수산물의 범위에 대해 농산물을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산물 을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표 9 농식품 및 연관산업 분류

	통합소분류	기초분류
		
	맥류 및 잡곡	보리, 밀, 잡곡
1	채소 및 과실	채소, 과실
농산물	기타식용작물	콩류, 감자류, 유지작물, 기타식용작물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
	기타임산물	식용임산물
A 2) D	수산어획	해면어종, 내수면어종
수산물	수산양식	해면양식어종, 내수면어종
	육류 및 육가공품	도축육, 가금육
	정곡	정미, 정맥
1차	제분	제분
가공품	제당	원당, 정제당
	전분 및 당류	당류
$\overline{}$	유지 및 식용유	식물성유지및식용유
	육류 및 육가공품	육가공품
	낙농품	우유, 유제품, 아이스크림
	수산가공품	어육및어묵, 수산통조림, 수산냉동품, 수산저장품, 기타수산식품
	전분 및 당류	전분
2차	빵,과자 및 국수류	빵및곡분과자, 설탕과자, 국수류
가공품	조미료	정제염, 발효조미료, 기타조미료, 장류
10 म	유지 및 식용유	동물성유지
	과실 및 채소가공품	과실및채소가공품
	기타식료품	커피및차류, 인삼식품, 누룩및맥아, 두부, 기타식료품
	주류	주정, 소주, 맥주, 기타주류
	음료수 및 얼음	청량음료, 생수및얼음
외식	음식점	음식점
	배합사료	배합사료
	비료	질소화합물, 비료
농자재	A TOTAL CONTRACTOR CONTRACTOR CONTRACTOR	농약
산업	2.40 (2000)	농업용기계
	TO SECURE AND THE SECURE	하천사방, 농립수산토목
	기타사업서비스	농림어업서비스

※ 출처: 황수철(2009)

○ 동시행령 제5조도 농수산물의 범위에서는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3조제6호 나목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농식품의 개념과 범위

- O 식품에 대해 동법 제3조조 제7항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O 농식품법의 농림수산과 식품에 대한 정의에 따르자면, i) 농림수산 식품은 농업, 임업, 수산업 중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거나 ii) 농수산물은 원료로 하여 만든 음식물이라고 할 수 있음
- O 농식품과 식품산업과의 관계
 - 다만, 농식품법 제3조 8항과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농식품법은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은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농식품의 범주와 식품산업의 범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즉, 농식품의 경우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물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식품산업 중 농수산물에 인공을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것은 농식품에 포함될 것이나,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식품과관련이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식품은 농수산물 중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 가공, 제조, 조리한 1·2차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함
- O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이란 직접 먹거나 마

실 수 있는 소위 신선농림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물을 농식품이라고 정의함

- O 여기에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물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제1차 가공식품과 제2차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사용함
 - 1차 가공식품이 쌀, 밀가루, 녹말 등과 같이 인공적으로 한번 거친음식물이라면, 제2차 가공식품은 미숫가루, 빵, 포도당과 같이 다시 재가공된 농산물을 의미함
 -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없는 목재, 화훼,
 사료 등은 농림수산업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업에는 포함되나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것이므로 농식품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음
 - 푸드시스템의 농산물, 수산물,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 외식, 농식 재산업 중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물은 농산물, 수산물, 1·2차 가공품이라 할 수 있음. 음식점과 같은 외식의 경우 가공품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농식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 따라서본 연구에서의 농식품은 푸드시스템에서의 농산물, 수산물, 1·2차가공품을 의미함

<농식품의 개념과 범위>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 나온 먹을 수 있는 신선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1·2차 가공한 가공식품

- 2. 농식품 연관산업 개념정의
 - 1) 농식품 연관산업의 개념적 접근

□ 농림수산업의 개념 변화

- 특정 산업의 개념과 범주는 시대나 환경의 변화, 기술의 변화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농업과 같이 역사가 오랜 산업의 경우 그 개념과 범주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본래의 전통적인 의미와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됨
- 한국의 경우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신설되면서 업무영역에 식품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즉, 농림수산업이란 전통적인 1차 농산물 위주에서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농식품으로 재범주화하려는 개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는 오늘날 농수산업 분야의 발전이 농림수산업에서 본래의 생산기능보다 가공, 유통 등 관련 부분의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입재산업, 가공산업, 유통산업, 서비스산업 등 2, 3차 산업의 지원에 힘입어 농업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오늘날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농림수산업의 개념을 생산부문에 국한시키기보다는 관련산업을 합친 농림수산업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즉, 농림수산업의 개념을 전통적인 생산부문에 국한 시킬 경우 비중감소로 인해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나 농림수산업의 개념을 선진국과 같이 생산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산업 부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경우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 할 수 있음(김철민, 2008).

□ 농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O 농식품 연관산업은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을 의미함. 1955년에 하버드 대학의 데비스(John H. Davis)와 골드버그(Roy A. Goldberg)에 의해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란 용어가 처음 사용됨. 그들은 "농업 내의 자재 공급산업, 농산물의 저장·가공·판매

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합친 개념"으로 정의함. 가치사슬의 관점, 산업의 관점에서 농업을 파악하기 시작

- O BRITANNICA 백과사전에 의하면, 애그리비즈니스는 농축수산업 부분에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농업자재산업과 농축수산물을 저장·가 공·운송·판매하는 농축수산물 이용 및 유통 산업을 의미. 농업연구 조사활동 및 행정 서비스 등의 농업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기도 함. 예전에는 농민 스스로가 담당했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분리된 뒤에는 자원이동과 생산물의 투입산출관계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 그러므로 농업부문과 함께 농업관련부문 을 취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우리나라에서는 '농산 업'혹은 '농업관련산업' 등으로 번역 혹은 개념화되고 있음
- 국내 관련 연구로는 「농업관련산업론」(신인식, 1995), 「농업관련산업의 통계지표 개발」(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 2000)등의 연구가 있음(신인식, 1995; 서울대농업개발연구소, 2000; 김철민 재인용, 2008)
 - 신인식(1995)은 농업관련산업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 후, 협의 혹은 전통적인 농업관련산업에는 투입부문만을 포함한 반면 광의의 개념에는 투입부문, 생산물 시장부문, 생산부 문을 포함하고 있음
 -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2000)는 전통적인 농업생산 부문을 제외하고 전·후방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제반 관련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관련산업 과 농업생산 부문을 합친 개념으로 농산업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김완배 외(2000)는 '농업관련산업', '농산업(Agriculture industry)' 개념 제시. 농업관련산업을 전통적인 농업생산부문을 제외하고 농업생산과 전방(forward), 후방(backward)으로 관련된 산업과 이를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 및 지식산업을 정의. 농업생산부문과 농업관련산업을 합하여 농산업이라 함(이종상, 2008)

- 김철민(2008)은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범위에 있어 전통적인 생산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농림수산관련산업을 크게 생산 관련산업분야와 생산외 관련산업분야로 나누고 있음. 이 중 생산 관련산업분야는 다시 농림수산 생산업과 농림수산투입재 산업, 농림수산 경영지원산업으로 나누고 있음
 - 농림수산 생산업: 이는 직접적인 농산, 임산,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함. 주로 기존 전통적 산업 구조 하에서 중시된 분야 임
 - 농림수산 투입재 산업: 이는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부문으로서 특히, 농업 생산성 증대와 관련 있는 부문으로 후방연관효과가 깊은 분야임
 - 농림수산 경영지원산업: 이는 경영 컨설팅, 금융, 정보처리, 기술 개발, 수의업, 위탁 영농, 행정 지원 등 농림수산 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 등을 지원하는 부문임. 이 산업 분야는 농림수산업 생 산방식의 분업화와 전문화 추세 강화로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임
 - 생산 외 관련 분야: 생산 외 관련분야는 식품 가공산업, 유통·운송업, 무역업, 외식산업, 목재·종이 및 석재업 등 주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가공, 저장, 판매하는 기능을 맡은 부문임. 주로 이 산업 분야는 전방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O 이명기(2001)는 농업관련산업을 농업투입산업, 농림수산가공 및 유통산업, 농업관련 서비스 및 지식산업으로 구분
 - 농업투입산업은 농업투입재생산산업, 농업투입재유통산업, 농업 관련서비스산업으로 분류농업투입재산업은 어떤 재화의 전체산 업에 대한 중간투입액 중 50% 이상이 농업생산부문에 투입되는 산업, 산업연관 기본부문의 167개 중 농업투입재 중 투입비중이 1% 이상이 되는 산업, 위 두 가지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농 업생산과정에 필수적인 농업투입재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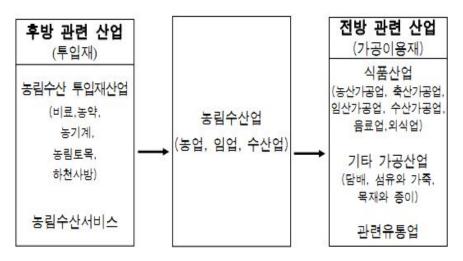


그림 3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구분(김철민, 2008)

-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은 '농산업(Agribusiness)', '농업관련산업' 개념 제시. 농산업은 농업 내의 자재 공급산업, 농산물의 저장·가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합친 개념. 협의로는 농업생산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광의로는 농업생산 부분까지 포함. 일반적으로 광의로 사용. 농산업은 후방 연관산업(투입)으로 생물자원(동식물종자, 유전자원), 토양비료, 농약 등 자재, 동물사료/의약품, 농기계, 농업정보, 농업 생산업(생산)으로 농축산업, 임업, 전방 연관산업(활용)으로 식의약품 가공, 포장, 유통, 마케팅 등을 포함. 농업관련산업으로 종자산업, 농림기자재산업, 농업정보산업, 농산물유통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기능성제품산업, 식품산업, 동물건강산업 등을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215)은 '농생명산업', '농림수산식품 관련산업' 개념을 제시. 농생명산업은 후방 관련산업(종자, 농자재, 농식품 기계), 전방 관련산업(유통, 서비스산업(컨설팅, 회계), 가공), 생명산업(관광, 생명자원, 기능성·건강·의료·공업용 원료) 포함. 이 경

우 농식품 연관산업은 후방 관련산업과 전방 관련산업만을 포함하므로, 생명자원이나 기능성 및 의료 원료 등은 농식품 연관산업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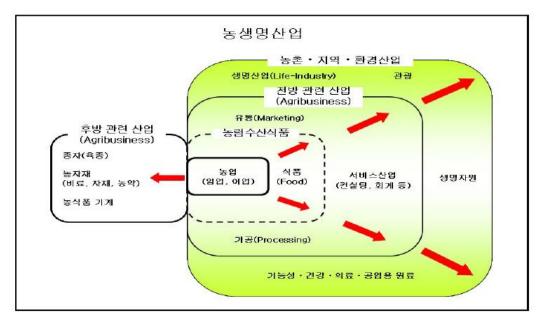


그림 4 농생명산업 개념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농식품 연관산업 개념과 범위 확정을 위해 '전후방'의 개념에 보다 충실할 필요
 - 즉 농식품 전방 연관산업은 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관련 투입재 산업, 농식품 후방 연관산업은 농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다양한 관련산업으로 본다면, 농식품 연관산업 개념은 이러한 관련산업을 모두 포괄할 필요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의 농업관련산업 개념에서 식품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산업이 농식품 연관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의 논의에서의 전방 관련산업 개념에서 생명산업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식품 연관산업의 통계적 접근

- □ 농식품 연관산업의 통계적 접근: 산업연관표
 - O 한 국가 경제에서의 각 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처분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이라고 함
 - 한국은행에서 1960년 처음으로 체계적인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개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 제정책 입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12회에 걸친 실측표를 작성 해 왔으며, 실측표를 바탕으로 통 13회의 연장표를 작성해 왔음
 -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실측표에 의해 작성된 2005년, 2006년, 2007 년, 2008년, 2009년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농식품 연관산업의 분 석을 함
 - O 이 경우 산업 연관표는 농식품을 중심으로 후방연관효과는 열방향의 투입계수를 통해 알 수 있고, 전방연관효과는 행 방향의 투입계수를 통해 알 수 있음

- 후방산업 효과

	농식품A	농식품 B	농식품 C	계
후방산업A 🕳				후방산업A의 연관효과
후방산업 B =				

- 전방산업 효과

	전방산업A	전방산업 B	전방산업 C	
농식품A =				
농식품B =				
계	농식품이 A 산업에 미치 는 전방효과			

- □ 농식품 연관산업의 예시
 - O 후방산업의 예시: 농업투입재 산업
 - 투입재생산산업: 종자 및 묘목, 농약, 사료, 농기계, 비료, 농업용 비닐, 선박 및 어망, 농업용 수공구, 유류, 기타투입재
 - 투입재 유통산업: 투입재 도·소매업
 - 생산 관련 서비스산업: 농업 관련 서비스, 어업 관련 서비스, 임업 관련 서비스
 - O 전방산업의 예시
 - 농림수산 가공 및 유통산업
 - 유통관련 산업: 도매업,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 외식산업: 일반음식점, 기관구내식당, 주점 및 다과점
 - O 다만, 실제 연관산업 분석에서는 하나의 산업이 전·후방 산업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많으며, 유통이나 연관 서비스 등은 전후 방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예임
 - 유통산업: 투입재 유통산업, 농식품 유통산업
 - 농림수산 관련 서비스 및 지식 산업
 - 민간 서비스 산업: 금융 및 공재, 법무 및 회계, 광고, 수의, 농림 수산토목, 관련 회원단체, 자연 및 체육공원, 운수 및 창고
 - 공공 서비스 산업: 농림수산 행정
 - 지식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 학교 및 교육기관

3) 본 연구에서 농식품 연관산업의 개념과 범주

- □ 농식품 연관산업의 개념
 - 논 연구에서는 농식품은 농수산물 중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소 위 신선농림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물(1·2차 가공식품)을 농식품이라고 정의하였음. 이는 푸드시스템에서의 농 산물, 수산물,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과 동일한 범위를 의미함
 - 농식품 연관산업의 범주에 농식품을 포함시키지 않고, 농식품과 연관된 전방산업, 후방 산업으로 농식품 연관산업의 범주를 정함. 이경우 농식품 전방산업은 농식품을 투입재로 사용한 산업들이 해당되며, 후방산업은 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산업들을 말함. 또한 유통산업이나 금융서비스 등은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반산업으로 범주화함
- □ 농식품 연관산업의 구체적 범주 예시
 - O 후방산업: 종자 및 묘목, 사료, 비료, 농약, 기계(농업용, 음식품가공용), 의약품, 비누 및 세제, 가타 기계 및 플라스틱, 금속포장용기등을 들 수 있음
 - O 전방산업: 사료, 의약품, 화장품 및 치약, 비누 및 세제, 일반음식점, 주점, 기타음식점 등이 농식품 분야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분야가 있음

제2절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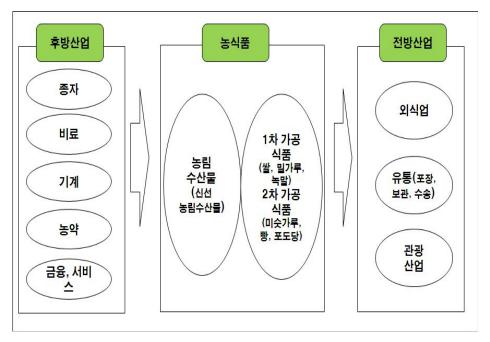


그림 5 농식품 연관산업의 범위

1. 농식품 연관산업 분류

□ 개요

- O 농식품 연관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농식품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라 산업연관표에서 농식품 항목을 선정하고, 이후 선정한 농식품 항목에 대한 전후방 연관산업 효과를 체크함
- O 농식품 항목은 김철민(2008) 연구를 바탕으로 2008-2011 산업연관 표의 소분류와 기본403분류를 검토하여 재분류함

□ 산업연관표에 의한 농식품 분류체계

- 본 연구에서 농식품 산업은 62개의 기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 농식품의 분류는 김철민(2008)이 농림수산업을 분류한 것에 농식품의 개념 요소들을 추가하여 사용함

표 10 산업연관표에 의한 농식품 분류체계

부문 번호 품목 번호 부문 번호 생수 및 실음 0084 담배 교교아 0084 담배 교교아 제품 및 설탕과자 교교아 제품 및 설탕과자 교교아 제품 및 설탕과자 교교아 교교의아 교교의의아 교교의의의아 교교의의아 교교의의아 교교의의아 교교의의 교교의의 교교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기본		기본		기본		기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생수 및 0001 변 0027 수산어획 0062 당류 0082 월음 0002 보리 0028 수산양식 0063 빵 및 국분과자 고코아 기타 이013 일담배 0054 유지 의상품 인상을 및 이043 원염 0064 제품 및 설탕과자 이004 잡곡 0045 도축육 0065 국수류 발효 및 2 기타 조미료 기타 조미료 이006 과실 0047 육가공품 0067 기타 조미료 이008 감자류 0049 유제품 0069 지 이008 감자류 0049 유제품 0069 지 이010 약용작물 0051 어목 및 어목 이070 취공 기타 식용작물 0051 수산물병 5공품 0072 처류 0074 무수산물병 이073 인삼식품 등품 이074 가루 및 맥아 기타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및 맥아	부문	 품목	부문	품목	부문	품목	부문	품목
0001 변 0027 수산어획 0062 당류 0082 얼음 0002 보리 0028 수산양식 0063					번호			
10002 보리 0028 수산양식 0063 빵 및 0084 담배 대 2코코아 2코z아 2zz아								생수 및
O002 보리 O028 수산양식 O063 평 및	0001	増	0027	수산어획	0062	당류	0082	
O002 보리 O028 수산양식 O063 평 및								얼음
No		L - I		A		빵 및		
0003 및 0043 원염 0064 제품 및 설탕과자	0002	보리 	0028	주산양식 	0063	곡분과자	0084	남매
0004 잡곡 0045 도축육 0065 국수류 발효 및 발효 및 발효 및 기타 조미료 기타 조미료 0006 장류 전기로						코코아		
0004 잡곡 0045 도축육 0065 국수류 발효 및 10005 채소 0046 가금육 0066 합성 조미료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	0003	밀	0043	원염	0064	제품 및		
10005 채소 0046 가금육 0066 합성 조미료 1006 전성 조미료 1006 조미료 1007 조명성 지지 1007 조명성 유지 과실 및 1007 채소가공 품 1007 조림 1007 조림 1007 조림 1007						설탕과자		
0005 채소 0046 가금육 0066 합성 조미료 기타 조미료 기타 조미료 기타 조미료 기타 조미료 기타 조미료 기타 조미료 조미료 기타 조미료 조미	0004	잡곡	0045	도축육	0065			
전기타								
0006 과실 0047 육가공품 0067 기타 조미료 0007 콩류 0048 우유 0068 장류 0008 감자류 0049 유제품 0069 동물성유 지 의원성 유지 0009 유지작물 0050 아이스크 림 0070 수모물성 유지 0010 약용작물 0051 어육 및 어묵 의 이071 채소가공 품 0011 기타 식용작물 0052 소리 가류 커피 및 차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생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무루 및 맥아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0005	채소	0046	가금육	0066	합성		
0006 과실 0047 육가공품 0067 조미료 0007 콩류 0048 우유 0068 장류 0008 감자류 0049 유제품 0069 지 0009 유지작물 0050 아이스크 임 이070 심물성 유지 0010 약용작물 0051 어육 및 어묵 및 어묵 및 서용작물 0071 채소가공 품 0011 기타								
O007 공류 O048 우유 O068 장류 S물성유 지 O009 유지작물 O050 임 O070 유지 의실 및 이어되 어육 및 어목 O071 채소가공 품 O011 기타 Q48작물 O052 조림 O072 차류 O012 섬유작물 O053 수산물저 S품 O074 구산물저 장품 O074 구단물저 장품 O074 구단물저 O074 구단물저 O75 구단물가 O75 O75	0006	0006 과식	0047	육가공품	0067			
0008 감자류 0049 유제품 0069 동물성유 지 0009 유지작물 0050 아이스크 임 0070 식물성 유지 0010 약용작물 0051 어육 및 어묵 0071 채소가공 품 0011 기타 식용작물 0052 수산물통 조림 7月의 및 차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생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기타 0074 누룩 및 맥아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0008 감자류 0049 유제품 0069 지 0009 유지작물 0050 아이스크 임 0070 식물성 유지 0010 약용작물 0051 어육 및 어묵 0071 채소가공 품 0011 기타 식용작물 0052 수산물통 조림 7 전원물병 장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생 등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무록 및 맥아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공품	0007	콩류	0048	우유	0068			
0009 유지작물 0050 아이스크 림 0070 식물성 유지 0010 약용작물 0051 어육 및 어목 0071 채소가공 품 0011 기타 식용작물 0052 주산물통 조림 0072 커피 및 차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냉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누룩 및 맥아 0018 낙동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0008	감자류	0049	유제품	0069			
0009 유지작물 0050 림 0070 유지 0010 약용작물 0051 어육 및 어욱 및 어욱 및 서소가공 품 0011 기타 식용작물 0052 수산물통 조림 기타 기				이네스크				
0010 약용작물 0051 어육 및 어묵 0071 과실 및 채소가공 품 0011 기타 식용작물 0052 수산물통 전례 0072 차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냉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무록 및 맥아 0018 낙동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공품	0009	유지작물	0050		0070			
0010 약용작물 0051 어육 및 어묵 0071 채소가공 품 0011 기타 식용작물 0052 수산물통 조림 7차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냉 5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무루 및 맥아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3공품 0075 두부 공품				님				
이어욱 품 0011 기타 식용작물 수산물통 조림 기파 및 차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냉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무록 및 맥아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공품	0010	야요자무	0051	어육 및	0071			
0011 기타 식용작물 0052 수산물통 조림 0072 커피 및 차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냉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무룩 및 맥아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0010		0031	어묵	0071			
0011 식용작물 0052 조림 0072 차류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냉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낙록 및 맥아 0018 낙동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공품		71 E.L		수사묵통				
0012 섬유작물 0053 수산물냉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막이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공품	0011		0052		0072	•		
0012 점유작물 0053 동품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0074 무룩 및 맥아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공품								
0013 잎담배 0054 수산물저 장품 나록 및 맥아 0018 나농 0055 수산물가 공품 0075 두부 공품	0012	섬유작물	0053		0073	인삼식품		
0013 잎담배 0054 장품 0074 기타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0075 두부 공품						누룩 및		
기타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0075 두부 공품	0013	일담배	0054		0074	맥아		
공품						' '		
공품	0018	낙농	0055	수산물가	0075	두부		
		.0						
	0019	육우	0056	정미	0076	기타		

					식료품	
0020	양돈	0057	정맥	0077	주정	
0021	가금	0058	제분	0078	소주	
0022	기타축산	0059	원당	0079	맥주	
0025	식용 임산물	0060	정제당	0800	기타주류	
0026	기타 임산물	0061	전분	0081	비알콜성 음료	

O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하면 아래와 같음¹⁸⁾

표 11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농식품 분류체계

통합다	분류(28부	통합경	중분류(78부	통합:	소분류(168	기년	본부문(403부문)			
	문)		문)		부문)	/ 17	= T & (400 T &)			
번호	부문명칭	번호	부문명칭	번호	부문명칭	번호	부문명칭			
01	농림			001	벼	001	벼			
01				002	맥류 및	002	보리			
	수산품	01	농산물	002	잡곡	003	밀			
									004	잡곡
				000	채소 및	005	채소			
				003	과실	006	과실			
				004	기타	007	콩류			
				004	식용작물	008	감자류			
						009	유지작물			
						010	약용작물			
						011	기타 식용작물			
				005	비식용작 물	013	잎담배			
		02	축산물	006	낙농 및	018	낙농			

¹⁸⁾ 각 항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설명 필요

					0.0		
					육우	019	육우
				007	기타축산	020	양돈
						021	가금
						022	기타축산
		03	임산물	008	임산물	025	식용임산물
						026	기타 임산물
		04	수산물	009	수산어획	027	수산어획
				010	수산양식	028	수산양식
			비금속광		기타		
02	광산품	80	물	018	비금속광	043	원염
					물		
03	음식료품	09	육류 및 낙농품	019	육류 및 육가공품	045	도축육
			700		7/10 8	046	가금육
						047	육가공품
				020	낙농품	048	우유
						049	유제품
						050	아이스크림
						051	어육 및 어묵
		10	수산가공 품	021	수산가공 품	052	수산물통조림
					II.	053	수산물냉동품
						054	수산물저장품
						055	기타 수산물가공품
		11	정곡 및	022	정곡	056	정미
		11	제분			057	정맥
				023	제분	058	제분
		12	기타식료	024	제당	059	원당
			품			060	정제당
				025	전분 및	061	전분

		I				
				당류	062	당류
			026	빵, 과자 및 국수류	063	빵 및 곡분과자
				<i>ξ</i> ήΤπ	064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065	국수류
			027	조미료	066	발효 및 합성조미료
					067	기타조미료
					068	 장류
			028	유지 및	069	동물성유지
				식용유	070	식물성 유지
				과실 및		과실 및
			029	채소 가공품	071	채소가공품
			030	기타 식료품	072	커피 및 차류
					073	인삼식품
					074	누룩 및 맥아
					075	두부
					076	기타 식료품
			031	주류	077	주정
	13	음료품			078	소주
					079	맥주
					080	기타주류
			032	음료수 및 얼음	081	비알콜성 음료
					082	생수 및 얼음
	15	담배	034	담배	084	담배

- □ 농식품 후방연관산업 부문
 - 농식품 후방연관산업은 해마다 기본부문이 조금씩 달라짐
 - O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5년간의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214개의 공통된 농식품 후방연관산업을 제시함
 - 위의 표를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분류 가능(부록 참조)

□ 농식품 전방연관산업 부문

- O 농식품 전방연관 산업은 후방연관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연관표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5년 간 공통된 부문을 제시하고 있음
- O 농식품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차이점은 후방산업에 비해 전방산업 의 개수가 적고 후방산업에 비해서 품목(기본부문)의 변화가 적은 것임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전방연관 산업은 기본부문 71개로 동 일하고 품목도 같음
- 위의 표를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분류 가능(부록 참조)

2. 농식품과 전후방 연관 검토

- O 위의 농식품 산업 분류는 산업연관표 중 기본부문을 기준으로 하였음
- O 전후방 산업의 선정 기준은 이미 정한 농식품 산업에 대하여 생산 자가격평가표를 근거로 어떤 산업이 농식품 산업에 재화나 서비스 를 공급하는지, 농식품 산업에서 재화를 공급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 고 있음
 -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사용함. 이 경우 표의 기본부문 항목 중 음수를 갖거나 미미한 수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후에서는

통합 중분류(78개 항목) 논의하도록 함

- 중분류를 기준으로 논의 할 경우 농식품에 해당하는 분야는 농산물(01), 축산물(02), 임산물(03), 수산물(04), 비금속광물(08),¹⁹⁾ 육류 및 낙농품(09), 수산가공품(10), 정곡 및 제분(11), 기타식료품(12), 음료품(13), 담배(15)가 해당함
- O 전후방연관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이용함
 -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 력계수와 감응도계수임
 - 영향력계수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로서 당해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함
 - 예를 들어 자동차의 수요는 엔진, 타이어 등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영향력계수란 이러한 자동차산업에 의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자동차산업에 의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철강, 전기, 전자 등과 같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부문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지게 됨
 -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 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 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전산업의 평균 으로 나누어 구함
 - 철강산업을 예로 든다면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

¹⁹⁾ 비금속광물이 포함되는 이유는 원염(기본부문 043)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하였을 때 철강산업 등 각 산업에서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감응 도계수란 이때 철강산업에서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평균 과 비교한 것으로 철강산업에서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평 균으로 나누어 구함

- 따라서 석유정제와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라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큼20)
- 농식품 산업을 기준으로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살핀 후 상위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영향력 계수 및 감응력 계수, 생산자 가격표 상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 기본부문의 수치 합계와 수출 합계를 제시하였음
- 이외의 중분류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생산자가격표 상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 기본부문의 수치 합계와 수출 합계를 제시하였음

3.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현황

- □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통계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관세 청의 HS코드2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수출부분을 참조
 - O 현재, 농식품 연관산업의 통계를 정리한 자료가 없음.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농식품연관산업의 수출현황을 파악함
 - 한국무역협회의 한국무역통계에서 산업별 수출입 품목과 코드를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와 품목코드를 선정하여

^{20) 2009}년 산업연관표 해설

²¹⁾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국제 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 가능.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

수출입 관련 통계를 파악함

- 한국무역협회의 품목코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농식품 연관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통계의 경우 HS코드를 통해 보완함(예. 트랙터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의 농기계 품목분류에는 없으나, 주요한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품목이라 할 수 있음)
- 한국무역통계의 품목들을 관세청의 HS코드로 연계하여 최근 3년
 간의 수출통계를 살펴봄
- HS 코드를 통해 연관산업 중 주요 수출품목의 국가별 수출통계를 추가로 검색하여 수출환경을 분석함
- O 농식품부 수출지원품목의 선정
 - 모든 농식품 연관산업을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처간 관계나 품목의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비료의 경우 농식물이나 동식물로 만든 비료의 경우 농식품부의 수출지원정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질소·인산·칼륨 등의 화학비료의 경우 농식품부의 직접적 수출지원대상과는 거 리가 있음
 - 또한 농기계나 트랙터의 경우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지원 대 상이 될 수 있으나, 식품가공기계나 식품포장기계의 경우 농식 품부의 수출지원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농기계와 같이 어업이나 임업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류에 대한 수출은 아직 별도의 수출품목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

1) 종자류

- □ 주요 품목과 수출현황(단위, 천불, %)
 - O 종자류는 2010년 기준으로 총 24,176,000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그 중 무종자와 양파종자가 주요한 수출품목임

O 기타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와 사탕무 종자의 수출이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표 12 종자 수출현황(2010~2011)

٥	U0 7 E	프무머	20	10	2011(1월	닐~08월)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4,176	10.2	17,956	23.3
1	1209919000	기타	19,597	17.1	14,113	27.1
2	1209912000	무 종자	3,420	-16.9	2,528	3.1
3	1209911090	기타	647	-2.8	772	47.5
4	1209911010	양파 종자	481	26.6	517	14.7
5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19	-34.0	21	6.6
6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 종자	0	_	3	_
7	1209250000	라이그래스 종자	0	-100.0	1	_
8	1209299000	기타	4	121.9	0	-100.0
9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 종자	0	_	0	_
10	1209292000	수단그래스 종자	0	_	0	_
11	1209291000	루핀종자	0	_	0	_
12	1209230000	페스큐 종자	0	_	0	_
13	1209220000	클로버 종자	0	_	0	-
14	1209100000	사탕무 종자	8	68.7	0	-100.0
15	1209210000	루우산(알팔파) 종자	0	-	0	_

- □ 무종자와 양파종자의 최근 4년간 수출 현황
 - O 무종자의 경우 2010년 3,420,000 달러로 종자류 수출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양파종자로 2010년 481,000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음

O 무종자의 수출현황

- 무종자의 경우 우리나라 종자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전통적인 수출 품목임
- 무종자의 경우 2008년 4,612,000 달러에서 2009년 4,115,000 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이 10.8% 감소하고, 2010년에도 3,420천불로 16.8%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추세에 있음

O 양파종자의 수출현황

- 양파종자의 경우 무종자에 비해 수출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양파종자의 지난 4년간 수출액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2008년 376,000달러에서 2010년 481,000달러로 크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13 무종자, 양파종자 수출(2008~2011)

품목명 코드	2008		2009		2010		2011(1월~08월)		
古寺の	<u> </u>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 종자	1209912000	4,612	7.2	4,115	-10.8	3,420	-16.9	2,528	3.1
양파 종자	1209911010	376	73.1	380	1.1	481	26.6	517	14.7

□ 주요수출국 수출현황

O 무종자의 주요 수출국 현황

 수출금액 및 증가율: 2010년 대비 2011년 상반기의 수출 금액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다소 증가세로 돌라섰으며, 인도, 중 국, 말레이지아 등의 국가들에 금액과 증가율이 크게 상승. 반면,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수출 금액과 증가율이 감 소하고 있음

- 무종자의 경우 일본이 전체 3,420,000 달러 중 2,208,000 달러로 60%를 넘게 차지라고 있음. 이외에 2010년과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네팔 등의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이 두드러짐

표 14 무종자 주요수출국 현황

순위	20	010	2011(1월	실~08월)
국가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420	-16.9	2,528	3.1
일본	2,108	-24.9	1,604	12.3
인디아(인도)	82	-85.0	190	361.5
방글라데시	165	35.7	172	3.9
파키스탄	152	23.0	126	-14.9
중국	162	95.7	97	58.6
네팔	83	22.0	78	5.9
인도네시아	40	149.0	44	10.0
미국	230	85.3	39	-79.8
말레이지아	24	136.4	32	99.3
러시아 연방	15	_	24	67.4
스페인	195	116.5	17	-87.4
스리랑카	17	34.3	17	73.1
태국	5	-33.2	15	_
우크라이나	5	566.7	15	200.0
필리핀	20	6.5	13	23.1
싱가포르	44	2,105.4	10	-77.4
대만	20	-55.4	10	-24.1
베트남	1	-70.3	8	1,052.2
네덜란드	10	-63.2	7	-31.0
이탈리아	0	_	6	_
카나다	3	_	3	4.9
모리셔스	5	27.5	1	-71.5
오만	_	_	1	_
뉴질랜드	0	25.0	0	-77.1
남아프리카	_	_	0	_
호주	0	_	_	_
불가리아	4	-45.4	_	_
독일	29	_	_	_

카자흐	1	_	_	_
마세도니아	1	_	_	_
세네갈	1	_	_	_

O 양파종자 수출국 현황

- 주요수출국: 양파도 무종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주요 수출국이 며, 이외에 러시아연방,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 올해 파키스탄으로 143,000 달러에 해당되는 양파종자를 수출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수출금액 및 증가율: 2010년 대비 2011년 상반기의 수출 금액 및
 증가율을 보면, 일본의 경우 감소하였으나, 파키스탄으로의 새로
 운 수출로 금액 및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15 무종자 주요수출국 현황

국가명	201	10	2011(1월	실~08월)	
<u> </u>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81	26.6	517	14.7	
일본	303	118.5	246	-18.8	
파키스탄	_	_	143	_	
러시아 연방	60	_	48	-20.0	
네덜란드	63	52.2	42	-9.9	
스페인	10	566.7	20	95.0	
뉴질랜드	0	_	7	4,754.7	
미국	_	_	5	_	
남아프리카	_	_	4	_	
중국	39	-20.1	3	-89.5	
우크라이나	_	_	1	_	
우즈베크	-	_	1	_	
독일	6	-15.8	_	_	

2) 농기계

- □ 주요 수출 품목(단위, 천불, %)
 - O 주요 수출 품목: 2010년 수출 기준으로 수확·탈곡 겸용기, 짚/건초용 의 결속기, 이식기, 파종기, 등이 농기계 품목의 주요 수출종목임
 - O 다만, 트랙터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의 분류에 따르면, 농기계에 포함 되지 않고, 차량수송기기로 다루어지고 있어 농기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표 16 농기계 수출 현황(2010~2011)

순위 코드		품목명	201	0	2011(1월~08월)		
正刊	<u> </u>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Т	140 714	10.0	105 000	0.0		
	0.4074.0000	총계	149,714	18.6	105,630	3.6	
1	8437109000	기타	40,713	3.2	22,388	-15.6	
2	8432909000	기타	17,152	13.6	11,832	10.8	
3	8432800000	기타의 기계	12,667	203.5	10,858	24.3	
4	8436109000	기타	4,759	7.4	8,069	679.8	
5	8433400000	짚/건초용의 결속기	9,550	13.5	7,329	-4.2	
6	8436800000	기타의 기계	5,403	54.9	6,730	95.1	
7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14,572	20.3	6,454	-46.5	
8	8432303000	이식기	7,756	83.1	6,214	9.6	
9	8432299000	기타	2,673	16.8	2,404	10.3	
10	8436990000	기타	1,847	36.5	2,229	67.0	
11	8432301000	파종기	2,620	148.9	2,136	17.6	
12	8437802000	곡물 또는 건조한	3,667	-38.6	2,078	-29.2	
		채두류의 가공기계					
13	8436211000	부란기	2,626	82.6	2,009	-3.4	
14	8433200000	기타의 풀베는 기계	2,591	128.2	1,971	2.6	
15	8424819000	기타	1,923	14.9	1,924	62.2	
16	8424812000	기타 방제기	2,449	-25.3	1,522	-16.0	
17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3,640	50.6	1,023	-63.2	
		것					
18	8436910000	가금 사육용 기계	1,004	76.0	973	128.4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19	8434901000	양육기 착유기의 것	419	34.9	774	175.5
20	8432309000	기타	229	-39.0	550	226.0
21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439	-52.9	536	38.9
22	8432292000	제초기	635	163.4	530	178.5
23	8433909000	기타	658	-2.0	505	41.4
24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141	67.5	464	537.1
25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692	-10.6	458	-11.9
26	8433590000	기타	888	-50.5	388	-42.0
27	8432100000	플라우(쟁기)	153	89.9	311	134.6
28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571	-15.3	254	-54.3
29	8436219000	기타	482	41.4	252	5.3
30	8424811000	자주식 방제기	58	-81.0	244	_
31	8436290000	기타	966	-65.4	243	-74.6
32	8437901000	종자・곡물 건조한	1,157	110.8	240	-37.4
		채두류의 세정 • 분류				
		선별기의 것				
33	8437909000	기타	837	13.3	232	-67.5
34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248	1.8	202	-13.5
35	8432402000	비료살포기	657	241.4	193	-66.1
36	8433530000	구경 또는 괴경의	23	80.9	191	1,539.5
		수확기(근채 수확기)				
37	8433601000	조란 선별기	787	272.9	150	2,627.0
38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23	-59.1	113	388.6
39	8424903000	방제기의 것	122	-73.8	101	5.3
40	8436102000	사료분쇄기	9	444.5	97	_
41	8434100000	착유기	376	1,507.1	95	-74.7
42	8433609090	기타	168	32.6	68	117.5
43	8432401000	퇴비살포기	24	798.9	65	413.7
44	8434209000	기타	5	-93.4	61	1,211.0
45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336 173	224.6	42	-83.7
46	8433520000	20000 기타의 탈곡기		-39.9	40	-74.3
47	8434909000	기타	8	-67.4	27	438.3
48	8432302000	식부기	22	-42.0	18	137.9
49	8433190000	기타	94	-59.8	15	-76.8

50	8436103000	사료배합기	169	-32.8	12	-80.5
51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163	197.6	11	_
52	8433110000	동력식의 것	29	20.9	3	-85.7
53	8433300000	기타의 건초제조용	38	50.9	1	_
		기계				
54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_	0	_
55	8436101000	사료절단기	13	-5.2	0	-100.0
56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177	-41.1	0	-100.0
57	871620000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35	-19.9	0	_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8	8434201000	균질기	79	-39.9	0	-100.0

□ 주요품목의 최근 4년간 수출 현황

- O 최근 4년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농기계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13.1%, 2010년 18.6% 등으로 성장세
- O 품목별로는 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짚 또는 건초용 결속기와 수확·탈곡 겸용기, 이식기 증의 주요 항목이 2009년 경에 본격증가한 이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0 기준으로 147,714,000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8월까지 전년 전월대비 3.6%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17 주요 농기계 품목별 수출 현황(2008~2011)

ᄑᄆᇜ	2008		2009		2010		2011(1월~8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1,562	-3.5	126,185	13.1	149,714	18.6	105,630	3.6
짚 또는 건초용의	9,413	19.2	8,413	-10.6	9,550	13.5	7,329	-4.2
결속기								
수확・탈곡 겸용기	5,814	-9.7	12,108	108.2	14,572	20.3	6,454	-46.5
이식기	1,315	-87.1	4,235	222.0	7,756	83.1	6,214	9.6

파종기	2,128	5.4	1,053	-50.5	2,620	148.9	2,136	17.6
곡물 또는 건조한	3,599	1.9	5,971	65.9	3,667	-38.6	2,078	-29.2
채두류의 가공기계								
부란기	943	24.9	1,438	52.5	2,626	82.6	2,009	-3.4
기타의 풀베는 기계	715	-34.4	1,135	58.7	2,591	128.2	1,971	2.6
수확・탈곡 겸용기의	1,349	27.7	2,418	79.3	3,640	50.6	1,023	-63.2
것								
가금 사육용 기계	696	-5.2	571	-18.0	1,004	76.0	973	128.4
,가금부란기양육기								
종자,곡물,건조한	179	-40.3	549	207.2	1,157	110.8	240	-37.4
채두류 세정ㆍ분류								

□ 농기계 주요품목 수출국 현황

- 농기계의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HS 코드상의 분류를 사용하여 살펴보도록 함
- 농기계의 분류는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로 나누어져 있음
- 농기계의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HS 코드상의 분류를 사용하여 살펴보도록 함.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O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의 수출과 수출국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는 플라우(쟁기), 디스크 하로우(쇄 토기), 파종기·식부기와 이식기,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기타의 기계를 포함하는 항목임
- 농업원예 등의 기계는 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큰 수출시장으

- 로 삼고 있으며, 호자, 이란 몽골 등 수출의 크기를 확장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에도 2009년 대비 수출이 59.3% 증가한데 이어 2011년 8월 현재도 전년대비 14.6% 증가하고 있음. 수출총액의 경우 2010년 45,681,000 달러, 2011년 8월까지 25,532,000 달려를 기록하고 있음

표 18 농업원예, 임업용 기계 수출국 현황

구 분	2	2010	201	1(1~8월)
. –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5,681	59.3	35,532	14.6
미국	18,004	181.4	13,727	15.4
일본	9,991	16.2	6,965	11.0
중국	7,402	32.7	5,733	-2.3
이란	1,611	39.7	2,418	243.1
몽골	59	45.3	681	1,133.2
호주	1,570	28.4	673	-38.7
독일	383	24.9	666	153.8
우즈베크	1	-49.0	653	_
이라크	134	_	532	368.6
뉴질랜드	48	683.5	375	41,774.5
필리핀	70	-5.5	308	2,054.2
인디아(인도)	480	-47.3	268	24.2
인도네시아	93	464.5	237	301.2
요르단	51	-31.8	231	1,399.6
멕시코	283	-6.2	207	22.0
러시아 연방	310	_	197	-34.6
리비아	624	374.2	140	-69.1
프랑스	274	54.9	115	-56.2
방글라데시	70	248.3	109	144.3
베트남	189	83.7	105	-38.2
이집트	186	-51.1	104	-33.6
리투아니아	_	_	89	_
말레이지아	55	31.5	88	700.2
수단	_	_	78	_
영국	98	33.9	78	-11.9
남아프리카	50	1,438.4	60	20.4
페루	274	53.1	58	-18.9
네덜란드	136	-44.1	52	-46.3
스페인	121	53.0	48	-55.5

대만	158	-13.3	40	-71.8
나이지리아	21	-15.0	39	92.6
캄보디아	56	26.8	37	-33.5
에쿠아도르	_	_	32	_
카자흐	16	333.0	31	_
탄자니아	292	96.9	31	-88.8
콜롬비아	208	782.7	20	-89.0
루마니아	_	_	20	_
브루나이	214	_	19	-91.1
그리스	77	-43.2	18	_
브라질	30	_	18	42.0
이스라엘	6	-72.9	15	136.5
모리셔스	2	-12.9	15	514.7
파라과이	133	107.3	15	-89.0
이탈리아	174	-75.1	13	53.4
체코공화국	4	-86.8	13	210.6
가이아나	13	_	12	118.9

-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의 수 출국 및 수출현황
 - 수확기 또는 동력기 등의 분류항목은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 기타의 건초제조용 기계,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 수확・탈곡 겸용기,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부분품 등의 세부품목으로 구성됨

- 수출국 현황

- 수확기 또는 탈곡기 등의 수출은 주로 중국, 이집트, 호주, 우즈 베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 등의 새로운 시장으로의 증가도 꾸준하게 나타남
- 수출 금액 및 증가율
 -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17.7% 증가한 34,300,000 달러의 수출
 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8월현재 전년동월대비 28.2%가 감소

한 19,130,000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수확기 또는 탈곡기 등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감소의 큰 요인인 것으로 보임

표 19 수확기, 탈곡기 등의 수출국 현황

구 분	2	010	2011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4,343	17.7	19,130	-28.2
중국	20,390	62.7	8,725	-45.8
이집트	2,865	-34.3	2,149	-0.5
호주	1,168	562.8	1,394	59.4
독일	321	-55.0	968	303.3
수단	_	_	680	_
나이지리아	63	405.5	585	835.3
우즈베크	1,665	520.6	521	-68.7
이란	352	13.5	518	133.7
인디아(인도)	672	-25.6	455	11.8
일본	900	-18.5	358	-36.3
캄보디아	76	110.6	261	1,546.1
말레이지아	242	-62.9	252	12.5
터키	55	_	233	2,683.4
파키스탄	322	50.0	226	-20.1
베트남	224	-75.9	224	32.5
사우디아라비아	85	39.9	219	_
방글라데시	184	319.5	216	28.3
대만	462	-50.9	184	-54.1
태국	217	15.7	178	37.3
남아프리카	111	-13.2	140	244.5
미국	478	365.2	139	-62.9
미얀마	6	_	105	3,571.9
카자흐	92	_	100	9.1
필리핀	137	129.3	67	7.2
몽골	110	1,399.7	57	-47.3
싱가포르	17	-91.6	44	228.6
파라과이	204	_	31	301.4
인도네시아	29	-50.9	29	384.1
탄자니아	60	647.9	17	-6.2
프랑스	_	_	15	_
홍콩	52	_	13	7,575.1
라오스	52	_	12	_

러시아 연방	2	-99.5	5	_
콜롬비아	122	388.9	3	-97.1
카나다	0	_	1	_
뉴질랜드	140	163.6	1	-99.1
파나마	4	_	1	-84.6
페루	_	_	1	_
벨기에	2	_	0	_
네덜란드	2	-91.9	0	-93.7
카타르	_	_	0	_
아랍에미리트 연합	0	-99.2	_	_
쿠바	112	_	_	_
알제리	49	_	_	_
스페인	13	-8.5	_	_
이디오피아	43	_	_	_
그루지아	21	_	_	_
가나	226	9.2	_	_
헝가리	67	1,832.5	_	_

O 착유기와 낙농기계

착유기와 낙농기계 품목은 착규기와 낙농기계, 부분품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주요 수출국

 착유기와 낙농기계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이 60%가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큰 수출국이며, 증가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출 금액과 증가율

- 착유기와 낙농기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58.2%가 증가한 887,000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고, 2011년 8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28.4%가 증가한 957,000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의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기대됨
- 특히, 주요수출국인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다만, 아직 수출국가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다양한국가로의 수출 확산을 꾀할 필요가 있음

표 20 착유기와 낙농기계 수출국 현황

구 분		2010	2011(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87	58.2	957	28.4
일본	376	516.1	491	44.4
미국	324	57.5	283	24.5
핀란드	_	_	95	_
필리핀	79	_	71	-9.8
독일	8	-82.7	8	11.2
중국	61	48.5	4	-93.0
라트비아	-	-	4	_
대만	_	_	1	_
이스라엘	11	-56.0	_	_
리비아	0	_	_	_
미얀마	0	_	_	_
말레이지아	25	_	_	_
네덜란드	2	-92.5	_	_

- O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 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 기와 양육기
 - 사육 양봉용 기계 등의 경우는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기타 기계로 구성됨

- 주요수출국

 사육·양봉용 기계는 주로 일본과 베트남 중국의 3국에 절반이 넘는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 필리핀, 영국, 러시아 등의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표 21 사육양봉용 기계 수출국 현황

구 분	2010		2011(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7,276	17.7	20,614	115.2	
일본	4,974	46.0	6,997	135.3	
베트남	3,023	3,838.6	4,327	2,905.9	
중국	2,017	79.3	3,539	175.3	
미국	853	17.6	1,295	112.2	
필리핀	91	218.2	1,295	2,542.1	
영국	1,015	42.5	517	-35.9	
태국	98	-80.6	447	531.9	
러시아 연방	504	54.3	345	-11.1	
독일	194	62.7	221	52.7	
벨기에	181	137.5	186	15.8	
이란	156	130.9	185	35.0	
덴마크	81	398.5	170	145.0	
라트비아	_	_	123	_	
카나다	92	-44.1	108	17.2	
이스라엘	12	132.3	103	849.5	
미얀마	_	_	86	_	
호주	129	-14.2	71	-11.1	
체코공화국	44	95.8	57	59.2	
프랑스	128	130.5	48	-22.1	
몽골	_	_	44	_	
스위스	83	237.0	42	-32.8	
대만	100	-3.6	33	-53.5	
터키	12	123.0	32	161.4	
포루투갈	8	1,194.8	29	272.6	
뉴질랜드	55	24.7	29	78.0	
인디아(인도)	425	258.5	28	-48.4	
네덜란드	46	22.4	26	-41.7	
말레이지아	932	435.6	26	-95.8	
이라크	_	_	20	_	
콜롬비아	6	-78.6	19	231.6	
이탈리아	70	80.4	18	-54.3	
스페인	29	21.5	17	25.7	
루마니아	_	_	16	_	
시리아	8	_	12	60.3	
사이프러스	3	-82.8	12	266.3	
<u>캄</u> 보디아	9	-76.3	11	27.2	
방글라데시	9	121.6	9	20.2	
나이지리아	18	1,253.9	8	-55.8	

베네주엘라	_	_	7	_
남아프리카	12	-59.8	7	1,019.2
코스타리카	10	-38.0	6	_
바레인	_	_	6	_
카자흐	12	_	6	136.8
오스트리아	82	1,229.9	5	-31.4
이집트	87	329.0	5	7.5
오만	1	_	5	356.0
칠레	19	479.9	5	-71.5
핀란드	21	75.4	3	-69.8
우즈베크	271	511.8	2	-99.3

- 수출 금액 및 증가율

- 사육·양봉용 등 기계의 경우 2010년 17.7%가 증가한 17,276,000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11년 8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115.2% 증가한 20,614,000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빠른 수출 성장
- 주요수출국인 일본,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필리핀 등으로의 수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이라 할 수 있음

표 22 채두류 기계 수출 현황

구 분	201	0	2011(1월	[~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6,798	-1.0	25,140	-18.5
인디아(인도)	9,650	65.8	7,038	21.5
중국	5,929	-36.6	2,960	-32.2
스리랑카	7,222	62.4	2,895	-27.8
태국	4,013	-16.9	2,692	3.9
방글라데시	2,049	-24.5	1,222	-13.0
터키	941	232.4	1,031	59.9
러시아 연방	4,081	-33.1	1,026	-72.6
일본	217	114.3	747	316.7
필리핀	1,961	23.6	745	-42.9
베트남	1,891	20.1	674	-53.4
콜롬비아	446	-59.3	625	133.4
인도네시아	1,168	32.3	445	-43.9
미얀마	724	928.3	437	-22.0
페루	1,498	-58.4	404	-65.6

말레이지아	1,300	28.5	251	-57.1
멕시코	83	-31.3	212	226.5
라오스	-		201	_
미국	392	10.5	177	-26.8
대만				
개인 캄보디아	225	134.6	162	7.1
	1,007	155.9	150	-27.3
카나다	41	24,853.9	107	_
루마니아	_	_	99	_
카자흐	318	-0.0	97	-67.6
사우디아라비아	_	_	92	_
스페인	_	_	91	_
독일	39	_	87	125.1
파키스탄	758	-4.1	80	-83.9
그리스	1	-98.2	69	7,886.0
아르헨티나	218	_	67	_
우크라이나	135	166.5	55	-59.3
네팔	103	-5.3	55	-47.1
아랍에미리트 연합	_	_	54	_
프랑스	_	_	24	_
케냐	_	_	20	_
나이지리아	1	-99.9	17	_
우즈베크	_	_	13	_
과테말라	_	_	9	_
타지크	_	_	6	_
앙골라	_	_	3	_
싱가포르	0	-99.9	2	1,948.2
이란	125	96.2	2	-98.5
아프카니스탄	52	_	_	_
호주	9	-87.5	_	_
볼리비아	58	19.3	_	_
브라질	1	_	_	_
코스타리카	2	_	_	_
이집트	3	103.3	_	_
영국	2	_	_	_
이탈리아	6	_	_	_
		l	l .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 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
 - 종자·곡물의 세정·분류기, 제분용 기기 등의 경우 종자·곡물 또

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기타의 기계, 부분 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수출국

- 이 품목의 주요수출국은 인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연방 등이 주요 수출국이라 할 수 있음
- 수출 금액 및 증가율
 - 이 품목의 수출금액을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에 1% 감소한 46,798,000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11년 8월 현재에도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25,140,000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인 인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에서의 수출금액이 줄어들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 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식품가공포장기계

- □ 주요 품목과 수출현황(단위, 천불, %)
 - 식품가공포장기계의 수출의 주요품목과 수출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2010년에 전년에 비해 43.8% 증가한 239,255,000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고, 2011년 8월 현재 전년 동월에 비해 30.1% 증가한 192,006,000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O 주요수출 품목의 경우 자동포장기계의 수출 금액이 가장 크고, 병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 베이커리 기계, 과자 등의 제조용 기계가 주요한 수출품목이며, 총 37개의 다양한 품목 수출
- □ 식품기계 주요품목의 최근 4년간 수출 현황
 - O 식품 기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포장 기계의 경우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30%에 이르는 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2010년과 2011년 8월 현재에도 각각 43.8%와 30.1%의 성장

율을 기록하고 있음

O 과자 등의 제제용 기계와 병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 육류 제조용 기계 등 거의 모든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과 수출증가율이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음

표 23 식품가공 포장기계 수출현황(2010~2011)

순위	코드	품목명	20	10	2011(1월	월~08월)
군기	<u> </u>	古古る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39,255	43.8	192,006	30.1
1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57,653	27.9	47,125	24.5
2	8422309000	기타	32,313	109.6	22,025	61.5
3	8422409090	기타	22,405	64.7	19,291	52.7
4	8438809000	기타	18,317	32.0	14,963	27.8
5	8422301000	병 기타 용기의	14,442	13.6	12,987	77.4
		충전용 기계				
6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11,259	911.8	12,923	24.0
7	8438200000	과자・코코아 또는	18,859	98.3	12,820	-4.2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				
8	8422902000	기타 포장기계의 것	4,935	24.3	8,275	173.0
9	8438109000	기타	7,386	-34.6	5,377	-12.2
1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4,720	16.3	5,126	100.8
11	8438900000	부분품	7,340	57.4	4,966	23.7
12	8422303000	병 기타 용기의 캡슐	4,333	49.3	4,337	45.4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13	8438509000	기타	1,323	168.4	3,114	284.2
14	8422909000	기타	3,499	2.7	2,691	15.2
15	8422190000	기타	3,239	28.4	2,629	21.5
16	8422302000	병 기타 용기의	9,544	84.2	2,549	-39.5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17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2,055	23.8	2,510	86.5
18	8422200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2,597	114.3	2,215	120.4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19	8422409030	진공포장기	2,935	2.8	2,207	-5.1
20	8422409020	자동결속기	1,584	-60.4	1,064	-27.5
21	8438600000	과실•견과 또는	687	-35.9	987	176.1
		<u> </u>				

		채소의 조제용 기계				
22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646	-54.1	691	157.6
23	8210004000	세절기 및 커터	178	231.6	213	104.5
24	8210005000	오프너・코르커 및	250	-4.9	181	41.7
		실러				
25	8210009000	부분품	2,763	-9.6	135	-92.7
26	8210008000	기타 가정용	331	7.9	115	-51.0
		식품가공기기				
27	8210002000	추출기 및 압착기	62	226.5	112	155.0
28	8438400000	양조용 기계	306	29.9	102	-65.8
29	8435900000	부분품	41	-69.9	95	131.0
30	8210001000	분쇄기 및 마쇄기	19	-78.2	74	375.7
31	8210003000	비터 및 믹서	43	100.1	64	69.9
32	8435109000	기타	174	44.3	41	-60.6
33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2,017	_	0	-100.0
34	8435102000	과즙 추출용의 크러셔	0	-	0	-
35	8422304000	음료용	0		0	-
		탄산가스주입기				
36	8435103000	과즙음료 제조용의	12	-	0	-100.0
		균질기				
37	8435101000	과즙 추출용의 프레스	989	743.8	0	-100.0

□ 식품기계 주요품목 수출국 현황

- 식품가공포장기계의 수출을 수출국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무협협회에 있는 산업별 분류코드에 일치하는 HS코드상의 품목 분류를 사용하여 검토함.
- 식품가공포장기계의 경우 크게 식품가공기계와 식품포장기계로나눌 수 있음.
- O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함)(HS 코드 8438)
 - 식품 음료 제조용 기계품목의 세부 구성은 베이커리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 설탕 제조용 기계, 양조용 기

계,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의 기계,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기타 기계,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4 식품기계 주요품목 수출 현황(2008~2011)

ᄑᄆᇚ	200)8	200)9	201	0	2011(1	~8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95,094	26.8	166,418	-14.7	239,255	43.8	192,006	30.1
자동포장기계	51,339	38.8	45,072	-12.2	57,653	27.9	47,125	24.5
병 기타 용기의	7,724	16.9	12,712	64.6	14,442	13.6	12,987	77.4
충전용 기계								
베이커리 기계	1,011	32.4	1,113	10.1	11,259	911.8	12,923	24.0
과자・코코아 또는	16,775	51.3	9,510	-43.3	18,859	98.3	12,820	-4.2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								
육류 조제용 기계	3,178	-4.9	4,059	27.7	4,720	16.3	5,126	100.8
병 기타 용기의	1,356	-59.0	2,901	114.0	4,333	49.3	4,337	45.4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병 기타 용기의	3,169	16.0	5,181	63.5	9,544	84.2	2,549	-39.5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어패류 조제용 기계	2,356	145.0	1,661	-29.5	2,055	23.8	2,510	86.5
병 또는 기타	500	20.0	1,212	142.5	2,597	114.3	2,215	120.4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진공포장기	2,009	-16.0	2,854	42.1	2,935	2.8	2,207	-5.1
설탕 제조용 기계	0	_	0	_	2,017	_	0	-100
과즙 추출용의	0	_	0	-	989	743.8	0	-100
프레스								

- 주요수출국

- 식품음료기계의 경우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이란, 베트남, 필리 핀, 러시아 연방 등이 48개국에 걸쳐 수출되고 있음.
- 그 중 중국이 2010년 기준 23,213,00 달러로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로의 수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표 25 식품음료기계 수출국 현황

구 분		2010	2011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4,269	54.8	62,888	18.6
중국	23,213	34.7	16,855	-7.3
이란	9,446	573.1	10,821	14.6
베트남	4,013	-52.1	6,909	262.7
필리핀	3,414	85.5	4,608	92.4
일본	5,820	33.0	4,607	46.2
러시아 연방	10,138	147.5	4,313	-33.9
미국	1,746	-27.5	4,162	391.7
인도네시아	5,235	188.0	2,201	-36.2
호주	405	45.2	1,210	358.3
이집트	100	580.4	1,104	1,009.7
태국	1,630	37.0	948	-28.4
말레이지아	261	9.7	879	288.4
브라질	78	126.8	574	2,897.1
대만	431	23.2	532	97.2
카나다	171	-56.8	333	230.4
아르헨티나	266	44,176.0	294	155.9
홍콩	215	2.7	225	34.6
싱가포르	87	-16.1	220	202.8
독일	262	58.6	219	33.1
벨기에	209	_	159	_
리투아니아	102	59.0	147	43.9
노르웨이	_	_	137	_
멕시코	42	-95.9	107	195.6
우크라이나	35	243.4	104	195.0
인디아(인도)	416	-54.7	98	-59.2
우루과이	_	_	97	_
스페인	17	-0.2	68	1,726.6

마세도니아	_	_	64	-
폴란드	65	1,030.5	59	97.3
요르단	1	-99.3	58	5,121.5
모로코	-	-	49	_
불가리아	10	_	47	357.7
네덜란드	65	-7.8	45	3,050.6
아랍에미리트 연합	10	224.9	41	439.9
과테말라	62	5.8	41	8.7
레바논	46	213.4	41	1.6
포루투갈	_	_	34	_
몽골	300	2,399.6	32	-86.9
페루	990	2,400.8	29	-95.7
이탈리아	53	84.0	28	-20.1
오스트리아	38	-24.1	27	82.1
잠비아	-	-	24	-
뉴질랜드	372	1,008.4	22	-93.8
영국	53	-8.7	22	77.1
사우디아라비아	155	25.9	22	97.8
캄보디아	37	_	20	-42.1
에스토니아			19	_
스리랑카	_	_	18	_
우즈베크	83	1,689.8	17	-54.9

- 수출금액 및 증가율

- 음식품 기계의 경우 2009년 대비 54.8% 증가한 74,269,000 달러를 2010년에 기록하였고, 20011년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8.6%가 증가한 62,888,000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식음료 기계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각 수 출국들에서 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 ·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 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

7] (8422)

식품 세정 및 포장기계에 해당하는 품목의 주요수출국 현황은 HS 코드 8422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자세하게 가정형의 것, 병· 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 부용의 기계 및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 조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부분품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정형의 것과 기타를 제외한 품 목들의 주요수출국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

표 26 세정, 건조용 기계 수출국 현황

구 분	20-	10	2011(1월	실~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597	114.3	2,215	120.4
중국	30	-90.3	1,009	3,360.5
미국	237	144,567.1	305	884.9
일본	181	-17.8	238	39.4
터키	24	235.7	173	2,394.5
베트남	110	-65.4	157	533.1
태국	182	149.9	83	-34.4
홍콩	1	-71.7	52	3,986.5
인도네시아	10	-87.5	47	869.7
호주	6	85.1	14	1,702.6
러시아 연방	8	325.5	13	97.8
파키스탄	6	-32.1	11	138.9
카자흐	70	_	11	_
칠레	7	235.8	9	_
알제리	7	_	8	24.7
독일	7	443.4	8	56.3
싱가포르	11	76.7	8	-8.9
말레이지아	8	-71.0	7	148.6
이라크	3	_	7	_
예맨	6	2,279.5	7	142.1
아랍에미리트 연합	14	57.0	6	-54.6
방글라데시	987	23,219.0	6	-97.9
시리아	4	49.1	5	47.8

사우디아라비아	11	273.8	4	18.8
우크라이나	9	291.1	4	-41.1
필리핀	_	_	4	_
뉴질랜드	1	17.7	3	_
이집트	1	-83.2	2	317.7
대만	_	_	2	_
모로코	3	_	2	58.4
페루	4	56.9	1	-62.5
이스라엘	1	-45.4	1	131.1
베네주엘라	1	-46.1	1	11.2
남아프리카	1	-16.2	1	-5.6
우루과이	3	_	1	97.4
오만	_	_	1	_
멕시코	30	5,907.0	1	-18.2
스리랑카	2	147.4	1	-52.0
튀니지	_	_	1	_
아르헨티나	1	_	1	-30.8
코스타리카	_	_	0	_
도미니카 공화국	_	_	0	_
몽골	_	_	0	_
볼리비아	1	_	_	_
베라루스	172	_	_	_
콜롬비아	8	4,977.3	_	_
에쿠아도르	1	-17.2	_	_
스페인	18	_	_	_
그루지아	1	_	_	_
그리스	0	82.1	_	_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842220)
 - 세정 건조용 기계의 수출은 주로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들어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요수출국으로 자리 잡음
 - 수출금액 및 증가율을 보면, 세정 건조용 기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114% 증가한 2,597,000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도 8월에 동월대비 120%이상 증가한 2,215,000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중국 수출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에 전년 동월 대비 3,360%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27 용기 충전 기계 등 수출국 현황

구 분	2010)	2011	(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0,631	67.4	41,898	48.8
중국	15,559	284.0	6,523	40.3
인디아(인도)	4,934	-0.4	5,121	180.3
태국	1,860	-8.6	3,110	111.8
러시아 연방	1,496	126.3	2,619	131.9
인도네시아	2,592	12.2	2,553	19.3
미국	3,492	101.7	2,095	17.3
일본	2,451	51.3	1,868	-3.3
베트남	1,921	18.8	1,511	-6.6
싱가포르	542	-14.0	1,450	167.8
방글라데시	724	51.0	1,172	148.5
독일	591	33.0	1,100	276.4
우크라이나	30	-6.4	1,034	3,499.4
말레이지아	743	66.4	1,010	82.2
이집트	362	77.4	1,004	28,233.2
네덜란드	844	133.4	939	50.8
터키	615	-36.3	854	63.1
우즈베크	63	_	686	_
앙골라	_	_	680	_
이란	1,303	45.7	666	13.8
멕시코	227	-37.7	656	598.8
홍콩	64	-68.0	574	791.4
대만	465	-9.1	379	6.1
프랑스	3,772	95.7	366	-62.1
미얀마	204	578.5	336	_
스리랑카	113	-69.5	266	211.7
알제리	157	34.9	246	56.6
요르단	0	-99.9	243	64,906.2
그리스	224	459.7	230	10.2
스페인	285	4.7	230	0.1
아르헨티나	-		224	_

호주	2,299	384.4	216	-84.1
시리아	_	_	195	_
남아프리카	849	329.2	166	-76.2
필리핀	1,118	1,888.3	164	-51.1
폴란드	98	-35.4	150	52.4
스위스	_	_	148	_
아랍에미리트 연합	5	_	139	2,785.7
콜롬비아	_	_	125	_
덴마크	163	81.7	117	-28.4
영국	91	-44.6	104	14.5
브라질	228	256.3	89	-42.9
페루	_	_	80	_
이탈리아	300	91.0	74	-64.4
칠레	_	_	72	_
뉴질랜드	101	-43.1	70	-31.3
라트비아	25	-29.8	43	470.6
리투아니아	_	_	34	_
오스트리아	0	-	30	11,900.0
포루투갈	2	-98.0	23	7,333.7

-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 및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 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842230)
 - 용기의 충전 봉함과 관련된 수출품목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큼
 - 수출금액 및 증가율을 검토하면, 전체적인 금액과 증가율을 2009년 대비 2010년에 67.4% 증가한 60,631,000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8월에 전년 동월 기준 48% 증가한 41,898,000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 인디나, 러시아연방,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속적인 수출호조를 나타내고 있어지속적인 수출부분 성장이 기대됨

표 28 기타 포장기계 수출국 현황

구 분	2	010	2011	(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5,223	27.3	70,379	29.0
중국	24,360	36.5	23,532	49.3
일본	5,747	33.2	5,623	16.9
인도네시아	2,752	63.7	3,730	158.3
태국	4,139	8.8	3,489	41.0
폴란드	853	55.7	3,364	311.8
인디아(인도)	2,127	-68.8	3,256	161.2
러시아 연방	6,062	781.3	3,166	-46.3
베트남	5,556	54.1	2,922	-14.4
방글라데시	3,998	76.6	2,484	17.4
미국	7,681	494.7	1,864	-51.3
알제리	178	-47.8	1,398	39,738.0
이란	418	-92.3	1,362	1,531.3
호주	1,620	357.7	1,335	-9.9
말레이지아	1,267	-22.7	1,164	78.4
카자흐	10	-97.6	1,062	10,241.7
터키	1,585	301.0	862	-12.4
멕시코	698	-13.0	850	86.1
사우디아라비아	790	-2.8	734	261.2
필리핀	2,390	337.0	674	-43.0
브라질	461	-38.4	641	125.2
모로코	187	_	554	196.3
아랍에미리트 연합	1,575	1,909.5	546	2.2
대만	706	17.1	458	-23.4
헝가리	206	30,249.1	412	111.3
노르웨이	127	177.1	405	-
칠레	5	-99.8	390	115,697.3
호이	452	53.3	303	160.5
벨기에	134	83.9	256	205.2
싱가포르	841	199.6	252	-57.2
덴마크	6	-62.7	241	15,966.5

그리스	269	115.2	230	-13.8
요르단	553	-84.6	223	-14.2
스페인	298	50.8	213	16.0
이탈리아	170	-52.6	211	37.9
우즈베크	289	376.8	204	164.2
카나다	126	-21.5	179	43.8
독일	252	-49.1	173	129.7
라트비아	137	-21.0	149	243.8
페루	113	995.4	146	37.3
이집트	2,539	714.2	146	-89.2
코트디봐르	8	52.2	140	1,654.9
스리랑카	241	40.9	102	-57.7
베네주엘라	40	-54.9	93	130.8
영국	111	-66.4	70	-18.4
프랑스	59	-55.5	69	136.4
우크라이나	295	1,681.2	64	-77.8
파키스탄	83	-81.3	61	-27.1
남아프리카	136	-55.0	54	-30.5
네덜란드	126	48.6	51	-52.7

-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842240)
 - 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 기타 포장 기계의 경우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일본 인도네시 아 태국 등으로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액 및 증가율 또한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27.3% 증가한 85,223,00 달러의 수출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1년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누적 수출액도 70,379,000 달러로 29%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수출 전망이 밝음
-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8435)
 - 포도주 사과즙 등의 제조 기계의 경우 2010년에는 중국을 비롯한

호주, 네덜란드, 터키 등으로의 수출이 이어지면서 2009년 대비 225%가 증가한 1,217,000 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여주었으나, 2011년은 이러한 국가들에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2011년 8월 현재 136,000 달러의 수출에 그치고 있음

표 29 포도주 등 제조 기계 수출국 현황

구 분	20	110	2011(1	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217	225.2	136	-85.3
중국	118	89.1	95	-17.2
크로아티아	_	_	22	_
일본	0	-92.1	16	10,812.8
미국	5	-89.8	2	533.0
영국	5	328.4	2	-69.4
아랍에미리트 연합	35	156.8	_	_
호주	105	116,516.7	_	_
벨기에	2	_	_	_
카나다	4	_	_	_
코트디봐르	43	_	_	_
이집트	1	-99.1	_	_
스페인	60	_	_	_
마이크로네시아	2	_	_	_
인디아(인도)	2	_	_	_
이란	13	_	_	_
이탈리아	79	118.8	_	_
스리랑카	20	_	_	
리투아니아	1	_	_	_
말레이지아	22	_	_	_
네덜란드	352	_	_	_
파키스탄	0	_	_	_
태국	0	_	_	_
터키	251	264.6	_	_
대만	97	_	_	_
베트남	0	-94.5	_	_

- 수동식 기계기구 (음식물 조리용 ,중량 10KG이하인 것)(8210)
 - 식품가공포장기계중 수동식 기계기구는 분쇄기 및 마쇄기, 추출 기 및 압축기, 비터 및 믹서, 세절기 및 커터, 오프너·코르커 및 실

- 러, 기타 가정용 식품 가공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동식 기계기구의 경우 주요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해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수출액의 경우에도 2010년에는 전년 대비 4.3%가 감소한 3,645,00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1년 8월의 전년동월대비 기준 63.1%가 감소하면서 894,000달러에 그치고 있음

표 30 수동식 기계기구 수출국 현황

구 분	20)10	2011(1	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645	-4.3	894	-63.1
중국	162	24.2	143	20.4
칠레	_	_	105	_
인도네시아	21	1,354.7	85	2,120.8
일본	268	-42.4	85	-50.2
대만	126	9.4	72	-20.8
말레이지아	62	149.8	71	94.8
캄보디아	2	62.6	66	3,903.9
루마니아	21	_	51	_
카나다	153	-8.4	44	-47.3
미국	1,200	-32.5	33	-95.2
베트남	4	-59.2	22	472.5
호주	68	-47.1	18	-52.5
이탈리아	395	154.1	14	-95.0
사우디아라비아	15	_	12	52.4
태국	6	-33.6	11	84.6
독일	218	32.9	10	-93.3
케냐	16	53.4	7	-26.3
엘살바도르	_	_	6	_
우즈베크	_	— -	6	_
스리랑카	0	_	4	29,853.3
홍	91	67.9	4	-95.0
인디아(인도)	39	283.7	4	-88.7
싱가포르	27	10.8	3	-87.2
동티모르	_	_	3	_
콩고	_	_	3	_
헝가리	9		2	-57.4
뉴질랜드	5	16.1	2	-45.8

폴란드	_	-	2	_
에쿠아도르	1	-90.0	1	9.8
영국	29	-52.2	1	-96.0
스페인	130	33.7	1	-98.7
몽골	4	-85.0	1	-75.2
이스라엘	7	-53.8	0	-92.8
페루	12	216.7	0	-95.0
스웨덴	-	_	0	_
필리핀	52	_	0	-99.4
뉴 칼레도니아	_	_	0	_
콜롬비아	1	_	0	_
아랍에미리트	21	184.0	_	_
앙골라	3	_	_	_
아르헨티나	7	_	_	_
브라질	49	10.8	_	_
알제리	6	_	_	_
이디오피아	0	_	_	_
핀란드	38	32.6	_	_
프랑스	64	7.3	_	_
그리스	1			_
과테 말라	10	_	_	_
크로아티아	2	70.5	_	

4) 기타

□ 동식물성 비료

- 동물성비료 ,식물성비료 ,동 .식물성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처리 한 비료
- 아노, 식물성 비료,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기타 품목을 포함함

표 31 동식물성 비료 수출 현황(2008~2011)

구 분	금액
2008	4,245
2009	1,404
2010	2,881
2011	1,035

- O 주요 품목과 수출현황(단위, 천불, %)
 - 동식물성 비료의 경우, 2008년에서 4,245,000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라 할 수 있음
- O 동식물성 비료 수출국 현황
 - 동식물 비료의 경우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 주요한 수출국이나 2010년에는 38.2% 증가한 반면, 2011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42.3% 가량이 감소하고 있어 전체 수출액도 약 46.3% 정도 감소
 - 비료 중 인산비료, 칼륨비료, 질소비료, 기타 비료 등의 화학비료는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

표 32 동식물성 비료 수출국 현황

구 분	20	10	2011(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881	105.2	1,035	-46.3
일본	1,848	38.2	683	-42.3
인도네시아	1	_	165	28,856.4
중국	57	832.5	79	736.7
대만	29	400.7	27	37.5
요르단	-	_	26	_
캄보디아	1	_	25	3,824.7
베트남	19	-13.3	16	43.8
우즈베크	_	_	15	_
네덜란드	_	_	1	_
베네주엘라	-	_	0	_
오스트리아	1	-45.8	_	_
가나	2	179,000.0	_	_
홍콩	0	_	_	_
인디아(인도)	892	3,100.0	_	_
키르기스	15	_	_	_
카자흐	0	_	_	_
미얀마	0	_	_	_
말레이지아	18	444.6	_	_

제3장 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지원 현황

제1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지원정책

O 현재 농식품부의 수출지원은 사실상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연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출지원은 현재거의 없음. 따라서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지원 제도에 앞서 농식품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연관산업대한 지원제도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함

1. 주요 수출지원사업22)

- □ '11년 수출 지원 예산은 총 5,725억 원 [보조 733, 융자 4,992]
 - O 보조사업: 해외시장개척,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농축산물판매촉진
 - O 융자사업: 농식품 운영활성화지원, 우수 수산물지원,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구축
- □ 바이어 거래알선 사업
 - O 사업목적
 - 해외 유망바이어 초청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및 개별 바이어 수시 초청 등으로 실질적 수출성과 거양
 - O 사업내용
 - 바이어 초청, 생산현장 견학·식문화체험, 수출상담회 개최
 - 대형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업체와 1:1매칭을 통한 대규모 수 출상담회 개최
 - 개별 유망바이어를 수시 초청하여 수출 현장방문 및 수출상담
 - 국내초청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숙식비) 등 지원

²²⁾ 농식품부 내부자료

표 33 주요 수출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해외시장개척 (298억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경영체, 수출농가 및 관련 단체 등 (주요사업) ·수출기반조성(48) : 수출선도조직 육성, 해외무역정보 인프라 구축,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 ·성장동력 확충(46) : 수출유망품목 육성,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지원, 공동브랜드(휘모리) 운영 ·해외홍보마케팅(204) :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거래알선, 해외판축행사 개최, 홍보마케팅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40억원)	(지원대상)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주요사업) 수출 유망 품목 육성, 수출협의회 활성화,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홍보 등
농축산물 판매촉진 (395억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경영체, 수출농가 및 관련 단체 등 *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이 20만불 이상인 업체 등 (지원내용)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인프라 강화 (수출보험, 안전관리, 선도유지 지원 등)
농식품운영 활성화 지원 (융자 3,652억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예정) 업체 ·지원금리: 연리 3.0~4.0%(농업경영체 3%, 일반업체 4%) * 평가 결과 최우수업체 1.0%, 우수 0.5% 추가인하 (지원용도) 수출원료 구매 및 운영자금 (사업주체) 농수산물유통공사(3,202), 농협중앙회(450)
우수 수산물 지원 (융자 1,340억원)	(지원대상)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금리) 연리 3.0~4.0%(어업인 3%, 비어업인 4%) * 평가 결과 최우수업체 1.0%, 우수 0.5% 추가인하 (지원용도) 수출원료 구매 및 운영자금 (사업주체) 농수산물유통공사(804), 수협중앙회(536)
해외전진기지 구축 (융자 200억원)	(지원대상)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중국시장 개척에 필요한 냉장·냉동 물류기능과 마케팅 기능을 갖춘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운영 (사업주체) 농수산물유통공사(10년거치 10년 무이자 분할상환)

O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aT 소재(관할)지역 바이어 초청 집중으로 신규시장 개척효과 미흡. 재외공관 등과 연계한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시장 바이 어 초청방안 추진

□ 농식품 해외 판촉 지원

- O 지원내용 및 항목
 - 지원내용 :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 마케팅 활동비
 - 지원항목: ① 임차·장치비, ② 시식행사비(판촉요원 고용비, 시식 물품대) ③ 홍보비(매체광고, 전단지, 포스터, 이벤트 등) 등

O 해외 판촉행사 지원 성과

- MOU체결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공동마케팅을 통한 신규품목・입점매장 확대로 한국 농식품 진출 교두보 마련(일본/이온, 중국/무한중백)
 - MOU 현황: '08년 2개국 2개업체에서 시작하여 현재 7개국 29 개 업체(총매장수 7,506개)
- 판촉행사 성과제고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업체에 수입의 무액 500%를 부여함으로써 '10년 수출 확대에 기여
 - 수출 기여액: ('09) 14,574천불 → ('10) 27,255 (전년대비 87% 상승)

O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업체 공모에 따른 배정 및 해외aT 소재지역 행사 집중으로 신규 시장 개척 미흡 및 중장기 전략 부족. 국가별 전략 수립 및 이에 근거한 해외판촉전 운영 방안 개선. 신규시장 개척 가점부여 및 국가별 전략품목 중심의 집중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수출 홍보

Ο 도입배경

 외교부와 MOU를 체결('07),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우리 농식품 및 한식을 현지 주류계층에 소개함으로써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외교 부와 MOU를 체결('07),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우리 농식품 및 한식을 현지 주류계층에 소개함으로써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O 추진경과

-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 MOU체결('07.4)을 계기로 전 세계 재외공관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 전개

O 지원내용

- 국경일 리셉션 등 공관행사와 연계하여 현지 유력인사, 대형유통 업체 관계자, 수입바이어 등을 초청 우리 농식품 및 한식 홍보
 - 수출농식품 전시·상담·판매, 수출상담회 개최, 한식 시연시식 회, 요리교실 운영, 언론홍보 등
- 지원내용 : 임차비·장치설치비, 전시품 구입비, 홍보비 등 지원
- 선정기준: 수출연계성, 기대효과,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평가
 - 선정위원회 : 농식품부·외교통상부·한국관광공사·aT·외부 전문가 등

O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산투입 대비 농식품 수출과의 연계성 및 계량적 성과 미흡. 일부 한식홍보 이벤트 중심의 일회성 행사로 운영되며 기존 공관행사의 부대행사로 활용되는 사례 발생. 행사내용 및 성과에 따른차등지원, aT 인력지원, 행사점검 강화, 계획변경시 사전승인제도입, 홍보물 제작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농식품 수출 과당경쟁 방지 방안

O 추진배경

- 국내 업체간 가격위주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발생
 - (파프리카) 일본의 국가별 수입단가('10년) : 한국 328엔/kg, 네 덜란드 432엔, 뉴질랜드 474엔
 - (김) 대만의 수입시장 점유율 : 한국 ('01)58%→(′10)15%, 중국 ('01)38%→(10)62%
- 농식품 수출업계 자율적으로 과당경쟁 방지 방안 추진 필요

O 과당경쟁 방지 방안

-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가격, 수출시기, 품질기준 등 가이드라인 설정 및 불이행업체 제재 조치 시행²³⁾
 - 대상: 수출협의회 결성 품목의 수출업체 전체
 - 수출협의회 구성현황 : 현재 17개(농산물 16개, 임산물 1개)
 - 딸기, 채소종자, 막걸리, 사과, 밤, 식품기업, 김, 단감, 쌀, 파프리카, 버섯, 인삼, 김치, 전통주, 유자차, 배, 양란
- 품목별 수출협의회 역할 강화 지원
 - 위반업체 적발, 심의, 제재요청 권한 부여
 - 공동마케팅 지원확대(22억원 → 37)

O 향후 조치계획

과당경쟁 방지 필요성 및 노력 등을 언론을 통해 홍보(9월). 자율수출관리 결의대회 개최(10월). 수출협의회의 과당경쟁 방지노력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 구축. 품목별 이행현황 점검(매월). 점검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 지속 추진

²³⁾ 수출업계 의견 수렴 결과('11.6.24. 수출협의회 대표자 등 15명 참석)

[•]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필요성에 참석자 대부분 공감

[•]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등 수출협의회의 결정사항 반영이 중요

□ 수출물류비 지원

O 도입배경

- UR협상 등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 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0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

Ο 사업내용

수출물류비(35,000백만원) + 수출 인프라강화 사업(4,458백만 원)등 총 39,458,000원의 물류비 지원을 함

O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20만불 이상인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기준: 신선 및 전통가공 식품류에 대하여 표준물류비의 1
 0%²⁴⁾
- 지원품목: 신선류(과실, 채소, 화훼, 축산물), 축산가공(분유, 요구르트, 열처리제품), 가공식품(김치, 전통주, 장류, 쌀가공품, 인삼제품, 녹차)
 - 가공식품(막걸리 제외)은 주원료가 순수 국내산인 경우에 한하 여 지원
- 수출물류비는 향후 WTO협상결과에 따라 감축 또는 철폐 예상
 - WTO농업협상 의장초안('08.12)에 따르면, 감축의무 보조금은 선진국 '13년까지, 개도국은 '16년까지 철폐,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 물류비 지원은 '21년까지 철폐
 - 수출물류비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출인프라사업 확대 방향으로 추진함

Ο 개선방향

직접보조(물류비)의 비중을 줄이고, 수출 인프라 지원 강화. 수출
 농산물 안전성, 검역, 수출보험, 해외 상표등록 등 기반조성 지원

²⁴⁾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자체간의 편차가 커서 수출업체간 저가경쟁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부터 지원기준을 물량으로 통일하고, 중앙과 지자체 물류비 지급 총액한도를 설정 운영

[·] 지원비율 총액한도: ('10) 중앙15%, 지자체30% → ('11) 중앙10%, 지자체25%

□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Ο 도입배경

수출업체와 생산자 조직(농가) 간 계약으로 재배(안전·품질), 선별, 포장, 수출을 일괄 수행하는 규모화된 조직육성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제스프리, 선키스트 같은 마케팅보드 지향

O 사업 대상(15품목 16개 조직)

- 채소특작[파프리카(2), 토마토, 멜론, 여름딸기, 팽이버섯, 새송이, 겨울딸기], 화훼(백합, 장미, 국화, 선인장), 과실(단감, 사과), 가 공품(김치, 유자차)
 - ('09)10품목 13개업체, ('10년) 6품목 6개업체, ('11)1품목 1개소 선정
- '10년 사업성과 부진으로 3품목(배, 김치, 감귤) 4개사업자 제외 ○ 지원 내용
 - 수출선도조직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인센티브" 지원
 - 지원액(연 1.5억원~1억원): ('09)16.7억 → ('10)18.3억 → ('11)17.5 억
 - 수출실적에 따른 추가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지원
- 지원액(표준물류비의 12~3%): ('09) 28.4억원 → ('10) 33.3억원
 성과 평가
 -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액의 평균 38.3%로 신선농산물 수출 주도
 - 팽이버섯(84.1%), 파프리카(54.2%), 멜론·새송이·선인장·장미 40% 이상)
 - 수출업체간 공동브랜드, 신시장 공동개척 등 과당 경쟁 방지
 - 수출업체 공동법인 설립, 품목별 공동브랜드(BOX) 활용 등

O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합조직 결속력 부족, 공동브랜드 사용·규모화 부진. 사업 이해도 제고와 연합조직의 결속력 강화 방안 필요. 조직별 규모화를 위한 수출업체·농가 추가 등 확대 추진

□ 전문생산단지 조성

- O 원예전문생산단지('94년~)
 - 안전·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수출진흥을 도모하 기 위해 채소·과실·화훼 분야의 집단화된 수출단지 육성
 - 관련규정: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훈령 제161호, '09.9.18)
- O 지정 현황('11.7월 현재 162개소)
 - 부류별 단지 개소수: (과실) 52개소, (채소) 64개소, (화훼) 46개소

O 지원 내용

- 수출물류비 인센티브(최우수 12%, 우수8%), ('09) 44억 → ('10)51억원
 - '11년 운영평가 결과(155개소): 최우수36, 우수32, 일반57, 저평 가30
- 해외선진농업기관 교육 및 국내외 기술연수 기회 부여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원예경영과)
 - ('10) 42개단지 622억원 → ('11) 23개단지 583억원

Ο 사업 성과

- 국가전체 수출액의 품목평균 57.2%로 비중으로 수출주도
 - 장미(96.6%), 파프리카(91.0), 백합(81.4), 선인장(78.9), 포도 (63.0), 배(58.5)
-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전업농 육성

□ 수출 농식품 안전관리

O 추진배경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잔류농약에 대한 PLS제도* 시행확대 등으로 미허용 농약사용, 허용기준 초과 등 검역위반 사례 발생 증가**

- Positive List System: 자국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성분 검출시 수입금지
- 일본 수출채소류, 미국 감귤, 대만 사과, 러시아 MOU 요구
- 검역위반시 해당품목 전체 전수검사 등으로 수출확대에 영향 초래
- 농약안전관리 등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수입국별 검역제도·농약기준 등에 맞추어 재배·생산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나 그 동안은 현안에 따라 각 기관별로 대응하는 수준

O 추진 경과

- 유관기관 및 수출업체들과 공동으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방 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4.7) 및 대책 수립·통보(5.1)
 - 참석기관: 농진청(농과원), 품관원, 식검, 지자체, 유통공사, 농 협, 수출업체
 - 국가별 수출요령·안전관리방안 마련, 각 기관별 수출농산물 전 담팀 구성 및 추진방안 수립, 안전성검사·수출업체교육강화 등 추진키로 혐의

O 추진 현황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대응계획"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 수 립 및 역할 강화 등 추진.²⁵⁾ '11.12월까지 각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을 완료하여 '12.1월부터 시행

²⁵⁾ 국가별 농산물 수출요령 및 안전관리방안 제도 마련

^{*} 러시아 양해각서에 따른 고시제정('11.9), 대만 수출사과 수출요령 배포('11.8)

[▷] 기관별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역할 강화

^{*} 수출농산물 전담팀 구성(농진청), 농약전담지도사 지정(농협, 지자체), 식물검역단지 및 수출계약 등을 통한 농가관리 강화(식검, 품관원)

[▷] 해외농약 정보전달 체계구축 및 수출농산물 관리 교육 강화

^{*} 농진청, 식검, 유통공사, 교육기관 등 수출안전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

[▷]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 의무화 및 수시 모니터링(품관원)

[▷] 외국 농약등록을 위한 체계구축 및 수입국 협상 추진(농식품, 농진청)

[참고자료] <대만의 한국산 사과 안정성 검사 강화조치와 대응>

1. 현황

- O 대만으로 수출된 한국산 사과에서 잔류농약기준 초과 검출 사례 발생
- O 대만측 미등록 농약 검출('09년 4건, '10년 6건), 한국산 사과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 *모니터링 2%→20%('10.1)→전수조사('11.2)
- O 양측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차이에서 기인
- O 국가별 사과 등록 농약성분 차이 : 한국 191성분, 대만 89, 일본 354

2. (영향)

- O 대만측의 한국산 사과 안전성 검사 강화 조치에 따라 통관기간 지연 및 보관· 검사 비용 추가 발생 등으로 수출경쟁력 하락
- 사과 수출(전체/대만): ('08) 9.4백만불/8.1 → ('09) 19.6/17.9 → ('10) 17.9/15.2 → ('11.8) 1.3/0.2(전년동기 대만수출감소 △78.1%)

3. 대응 경과

- O 대만 수출사과 농약안전사용 지침 마련 및 농가 교육
 - * 농진청, 품관원, 식검 합동 교육 실시('11.4~10, 2천농가)
- 대만측에 농약잔류 허용기준 추가 등록(21개 성분) 요청('11.3)
- O 대만측 기준에 따른 농약안전사용방법 마련 및 농가지도('11.5)
- O 한·대만 경제통상협의시 21개 농약성분 추가 등록 및 사과에 대한 전수검사 해제 요청('11.7.20, 타이뻬이)
- (대만) 우리가 요청한 농약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에 대해 적극 검토, 전수 조사 해제 여부는 10월 한국산 검역상황에 따라 완화검토
- O '11년산 대만 수출사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의무화(8.3)
- 안전성검사 요령 관계기관 배포(8.26) 및 검사비용 지원(80%)

4. (향후 계획)

O 우리가 사용하는 품목별 농약성분 등록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11년산 대만 수출 사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과장, 농가 등 현장지도 강화

0

- □ 농식품 수출 공동브랜드(whimori)
 - Ο 도입배경
 - 품질 고급화와 효율적 마케팅을 통한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04년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휘모리) 도입
 - 회모리는 판소리에서 절정을 묘사하는 장단으로 수출농산물의 우수성을 이미지화
 - O 운영 현황 : 2년 주기로 3단계 심사(서류, 현장, PT)를 거쳐 업체 선정
 - 운영품목 및 업체 : 6개 품목 10개 업체
 - ('04)파프리카(농산무역), 국화(구미원예수출공사), 배(대왕농산, 아이신안, 태봉, NH무역), ('06)장미(대동농협, 로즈피아), ('09)새 송이버섯(머쉬엠), 김치(이화종합식품)
 - Ο 지원 내역
 - '11년 해외시장개척사업 200백만 원
 - 브랜드 관리운영(41백만 원), 품질제고 시범사업(159백만 원)
 - 인센티브: 표준물류비의 10% 이내(휘모리 품위규격 준수 물량)
 - O 추진 중의 애로사항
 - 진단 컨설팅 결과 사업 의지와 조직 취약,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의 혼재, 수출선도조직사업과 중복, 중장기 비전 부재 등 문제점
 노출
 - 휘모리 사업 개선방안(안): 브랜드 정체성 정비, 수출선도조직사업 과 조정. 휘모리 운영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 추진
- □ 농식품 수출 해외 전진기지 구축
 - Ο 도입배경
 - 식품 수입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필요
 - O 사업 환경

- 중국의 수입식품시장('10년 602억불)은 연평균 31.6% 성장
-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10년 7.8억불로(연평균 23.8% 증가), 중국
 은 한국의 제2위 수출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중국 수입식품시장
 전체의 약 1% 정도에 불과
- 중국의 농식품 물류 환경은 Cold-Chain 인프라 부족으로 유통과 정 중 손실율이 25~30%로 매우 비효율적
- O 설치 지역 : 중국 청도
 - 청도는 물류 인프라 수요, 통관의 신속성, 투자비, 지방정부 지원 측면에서 유리
- O 사업 추진 주체(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융자, 농안기금 200억원, 10년거치 10년 무이자 균등 분할 상환)
- O 조성 및 운영 방안(안)
 - 물류시설 8,640㎡, 마케팅시설 등 2,830㎡ 총 11,470㎡ 규모로 조 성
 - 물류 기능은 aT가 전문 물류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판로 개최 등의 마케팅 기능은 aT가 직접 담당하여 물류 서비스와 연계운영
- O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 기획재정부와 현지법인 설립 협의 완료
 - 부지 확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잦은 계약 조건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 법무법인 자문을 토대로 하반기 중 부지 확보 예정
- □ 해외 물류기반 구축사업
 - Ο 도입배경
 - 우리 수출농식품의 해외물류기반구축을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와 신규시장 개최 지원으로 수출목표 달성 경인
 - O '10년도 추진실적: aT 해외지사 소재국 중심으로 수출농식품 냉장·

냉동 물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격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성화

- 냉동냉장창고(이용료 70%), 냉동냉장운송(70%) 등 업체당 60백만 원 한도
 - 해외 aT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전담직원 배치
 - 5개국 8개소(도쿄, 오사카, 뉴욕, LA, 베이징, 칭다오, 싱가폴, 로테르담)
- 지원실적: 4개국 7개소 22업체 약 2,800톤 / 260백만원 지원
 - 로테르담 Yarra사에 냉동창고 이용지원을 통해 호산물산 냉동 굴 수출성사(최초 35천불 규모, 향후 120천불/월 예상)
 - 막걸리는 중국 수출이 5배 이상 증가(('09) 273톤/139천불 → ('10) 1,021/912)
- O '11년도 추진내용 : 지정 위탁물류업체를 통해 냉장·냉동 창고이 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의 80%를 물류업체와 직접 정산
 - 사업예산 2,000백만 원, 상반기 311백만 원 집행
 - 지원대상: '10년 지원업체는 '11년 계속 지원, 신규 지원업체는 해외 aT별로 5업체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추가 선정 가능
 -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이용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외aT가 수요조사 후 정비
- □ 수산 분야 수출지원제도
 - O (실적) '10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7.9억불 달성
 - O 국제 규범 상 수산물 수출 지원은 보다 엄격히 규제
 - GATT 및 보조금 협정(SCM협정 제3조제1항(a) 및 부속서 1 (a), (C)) 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

표 34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보조 지원 및 융자 지원 규모

	구 분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비고
보조	해외시장개척지원	298억원	40억원	
지원	농축산물판매촉진(20504.01		국제규범상
	물류비 등)	395억원	_	금지
융자	수출업체 운영자금	3,652억원	1,340억원	
지원	융자	3,002 12	1,01012	
시원	해외전진기지	200억원	_	

-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개발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 검토
- O 일본의 김 수입할당 제도
 - 일본은 김 수입쿼터를 국가별(한국, 중국 등) 종류별(마른김, 조미 김 등), 대상별(수요자, 상사, 선착순)로 세분하여 자국 생산자 보 호
 - 한국의 대응 방안
 - 김 IQ 공고 시기 조정(현재 2월 초 → 전년도 12월)을 통해 우리 김 생산(10~4월) 및 수출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수출 단계별 지원제도26)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활동을 수출단계별에 따라 파악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음. 이 경우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활동은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다양한 과정을 거치지만 활동 주체와 장소에 따라 다음 6단계에 따라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출활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생산단계, 상품화 단계, 수출물류 단계로, 해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통관 및 검역단계, 수입유통단계, 해외소비자 구매단계로 나눌 수 있

²⁶⁾ 농식품부 내부자료

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27)

- O 제1단계: 국내 생산단계
 - 국내부문의 1단계는 농가나 생산업체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단계(production stage)임. 생산단계에서는 농지와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결합하여 해외시장 소비자 선호나 수입국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조건과 규격, 품질 등을 고려한 바이어의 주문 (order)에 따라 상품을 생산함.
- O 제2단계: 국내 상품화 단계
 - 국내부문의 2단계는 수출농가나 수출업체 등이 생산된 농식품을 선별장등에서 수출용으로 상품화하는 과정임. 상품화단계 (merchandising stage)에서는 세척이나 절단 등 단순 가공과정과 수출 규격에 따른 선별 및 포장등의 활동이 행해지며 바이어가 제공하는 해외시장 정보를 고려한 맞춤형상품화(custom-made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기도 함.
- O 3단계: 국내 수출물류 단계
 - 제3단계는 상품화된 농식품을 수출업체가 통관하여 항공기나 선박에 선적, 운송하는 과정으로 수출물류단계(export logistic stage)임. 수출물류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선도가 요구되는 상품의 경우 냉동콘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이용해야 품질을 유지하는 것임. 상품화단계와 수출물류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 절차나 제도 등 시스템을 수출인프라로 분류할 수 있음.
- O 4단계: 해외 통관 및 검역 단계
 - 4단계는 해외부문의 수출활동으로 수입국 세관의 검역과 통관단계(quarantine and customs clearance stage)임. 공산품이 아닌 신선 농식품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의 엄격한 검역과 검사를 통과해야 한며,이 단계에서 수입국 검역기관에 의해 반송, 폐기 또는 추가 검역 등 여러 가지 예상치

²⁷⁾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1/2차연도)

못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생산부터 상품화 및 수출물류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수입국 검역과 통관을 고려한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업체보다 수출국 정부의역할이 중요해지는 단계이기도 하며, 검역이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역협상이나 무역원활화 협상 등 정부 간 통상협상을 거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O 5단계: 수입유통단계

- 5단계는 상품을 주문한 바이어가 검역과 세관을 통과한 상품을 수입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입유통단계(import marketing stage) 임. 수입국 시장 정보를 반영하여 주문한 상품을 현지유통업체나 직영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송 및 판매하는 과정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현지 대형유통업체 입점이 관건이 됨. 물론 입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판촉활동이 필요하지만 일단 '수출고속도로'라 불리는 현지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음.

O 6단계: 해외소비자 구매단계

- 6단계로 현지 소비자들이 현지 도소매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구매단계(consumer purchasing stage)임. 이 단계에서는 바이어나 현지 유통업체 들이 광고나 출시 이벤트 등 판촉활동을 통해 상품을 알리고 맛이나 효능 등에 관한 상품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구매가 이루어지게 됨.

□ 국내 생산단계 수출지원제도

- O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하는 수출선도조직(18개) 지정·육성
- O 수출상품화사업 등 유망품목 육성 지원
- O 수출 농식품 안전 관리 지원
-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원료 구매 및 운영자금 융자(2~4%) 지원

- O 수출용 농식품 기술개발 지원(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175억원)
-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지정('11.3월 164개), 생산시설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지원

표 35 수출단계별 문제점과 지원방안

수출 단계 별 활동	국내		해외시장			
	생산	상품화	수출물류	통관 및 검역	수입유통	소비자 구매
장소/주체	농가	선별장 등	운송	수입국세관	바이어	수입국시장
문제점	저품질, 물량확보, 협상력	바이어 요구 반영 미흡	물류비, 적재공간	검역, 관세	과당경쟁, 시장교란	낮은 인지도, 교민시장
해결방향	R&D, 조직화, 집단화	시설투자, 맞춤형 상품화	비용절감, 업무협력	검역협상, FTA	평가제도, 규모화, 현지유통업 체 입점	홍보 및 관촉활동 확대
지원방안	R&D지원, 제도개선, 특성별 조직화, 수출보험, 수출금융	시설투자, 시장정보 전달체계, 시장 다변화	수출물류 기반시설, 현행제도 개선, 유가 연동제	검역해제, 현지검역, 등록농약 확대, 원산지증명 발급간소화	사후관리 강화, 과당경쟁 방지, 수출금융 및 보험	해외판촉, 휘모리브 랜드 홍보, 홍보지원 강화, SNS 활용, 현지유통망 연계 지원

- ※ 출처: 농촌경제연구원, 2010
- □ 수출물류단계 수출지원제도
 - O 수출 물류비 지원(표준물류비의 10%)
 - O 해외 냉장·냉동 물류시설 이용료 지원
 - O 활·어패류 항공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O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중국 청도 지역, '12년 완공)
- □ 통관 및 검역단계 수출지원제도
 - O 검역협상을 통해 수입규제 해제(미국 삼계탕, 중국 파프리카)

- O 수입국 등록농약을 우리나라 수준에 가깝게 확대 요청(대만 사과)
- O 고관세 품목에 대한 개선 협상 및 FTA 체결 등

□ 해외유통단계 수출지원제도

- 수출업체들로 구성된 품목별 수출협의회(17개)의 공동마케팅 등
- O 수출업체와 현지 유통망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바이어초청, 대 형유통업체와의 MOU 등 추진

□ 해외소비자구매 단계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미디어 광고, 판촉 등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 O 한식세계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제2절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지원정책

- 1.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환경
- 1) 농기계

□ 수출현황²⁸⁾

O 2005년 농기계 수출이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3억 달러 돌파. 2000년 이후 6년 연속 흑자²⁹⁾

²⁸⁾ 해당 목차에서 트랙터를 농기계 품목에 포함하여 수출 통계를 잡고 있음. 이는 본 연구에서 농기계의 경우 트랙터 부분을 제외한 것과 다르지만, 신문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트랙터를 포함한 수출 추이를 그대로 인용함.

⁻ 농민신문. 2011년 9월 30일. 농기계 수출 10년간 4배 늘었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3281&subMenu=articletotal, 2011년 10월 6 일 검색)

²⁹⁾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4&newsid=01666246579783976&DCD=A 00105&OutLnkCh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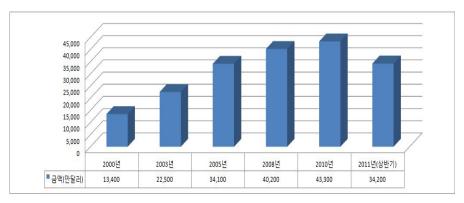


그림 6 농기계 수출 추이(농민신문, 2011. 9. 30)

○ 농기계 수출은 2000년 1억3,400만 달러에서 2010년 4억3,300만 달러로 10년 동안 약 4배 증가. 2011년 상반기 농기계 수출액은 3억 4,2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2,300만 달러에서 5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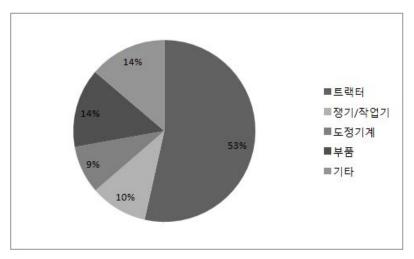


그림 7 2011년 상반기 농기계 수출품목

O 2011년 상반기 농기계 수출품목으로 트랙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부품, 쟁기/작업기, 도정기계 순을 보임

[참고자료]

대동공업(주), LS엠트론(주), 동양물산기업(주) 등 종합형 업체의 올 상반기 농기자재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15% 이상 늘었다. 대동공업의 경우 상반기 수출 규모는 9531만7000 달러로 전년 7578만3000달러보다 25.8% 증가했다. 트랙터, 엔진, 작업기 등이 동남아 및 유럽 등 신규시장을 확대하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부품 수출실적도 약 1626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2배 성장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LS엠트론은 트랙터와 작업기, 부품 등으로 5991만7000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해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가과른 상승세를 보였다. 주력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아시아, 터키 등에서 60~10% 늘었다. 중동 및 아프리카는 지난해보다 무려 6배 늘어나기도 했다. 동양물산기업도 상반기 수출실적이 약 3500만 달러로 올 수출목표 6000만 달러중 58%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려 연말에는 올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농어민신문. 2011년 8월 18일. 농기계업계, 수출 채산성 확보 안간힘 (http://www.agrinet.co.kr/news/news_view.asp?idx=103604&main_idx=5&CCD=%B3%F3%B8%EA&main_link=1&menu_color=%B3%F3%B1%E2%B0%E8)

농기계 제조업체인 ㈜국제종합기계 등 9개사로 구성된 충북 옥천 전략산업클러스터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국제기계전시회에 참가해 1천344만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클러스터센터에 따르면 ㈜국제종합기계가 1천300만달러의 이앙기.트렉터를 중국에 수출계약했고, 회원사인 ㈜대송, ㈜경원정밀, ㈜선호종합기계등 8개사도 44만 달러의 농기계부품 등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클러스터센터 관계자는 "대 중국 수출을 통해 국산 농기계의 우수성이 입증된 셈"이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중국 현지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출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이 클러스터는 2009년 독일전시회에도 참가해 350만달러의 농기계를 수출했다. 이 클러스터는 옥천군과 (재)충북테크노파크가 ㈜국제종합기계 중심으로 기계.금속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했다.

* 출처: 연합뉴스. 2011년 7월 5일. 옥천 농기계 중국서 호평..1천300만달러 수출계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 148281)

O 국가별로 미국이 39.3%, 중국 6.6%, 일본 4.4%, 인도 3.5%로, 미국 이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국, 일본, 인도 순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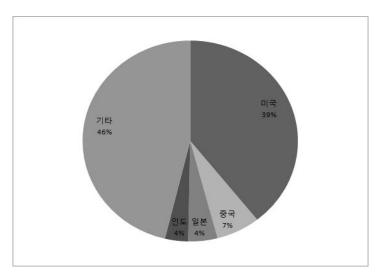


그림 8 농기계 수출 국가 비중(2011년 상반기)

□ 수출환경

O 강점

- 기업의 현지화 노력: 수출업체가 현지 시장수요에 맞는 정원형 트랙터 등 다양한 모델 개발³⁰⁾
- > 농기계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고 다기종 소량생산을 할 수 있음³¹⁾

O 약점

- 농기계산업 중소기업의 영세성: 농기계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소기

³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4&newsid=01666246579783976&DCD=A 00105&OutLnkChk=Y

³¹⁾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1081001106&c_code =0103

업의 비율은 전체 232개 중 228개로 98.3%를 차지하지만, 매출액은 약 1조560억 원으로 전체 2조2247억 원의 절반 이하 수준. 전문인력, 기술, 자금 확보 어려움

수출 중소기업의 영세성: 수출 중소기업은 약 70여 개로 대부분 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체. 주로 1000만원 미만의 중소형 및 트랙터 부속작업기 위주로 생산. 수출 품목으로는 트랙터 부속 작업기와 농산가공기계 등. 수출전략과 계획이 부실하고, 저가 수출에 의존하고 내수형 모델을 수출형으로 일부 변형하는 정도여서, 현지적응형 전략모델 개발이 매우 미흡32)

O 기회

- 신흥 시장 개척 가능성 높음: 아시아 시장 개척 가능성 높음. 중국은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는 인건비상승으로 기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시장의 잠재력도 높음.33) 중동, 유럽 등 시장 또한 개척 가능성 높음
- 농식품부의 적극적 지원: 농식품는 2015년 수출목표를 10억달러로 설정하고 농기계 수출전략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농기계 수출 종합대책 수립 추진 방침

O 위기

- 세계 경제 위축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 가능성. 세계 경제 위축은 농기계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농기계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농기계산업의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
-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수요 증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은 가격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됨
- 농업 위축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의 변

³²⁾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1081001106&c_code=0103

³³⁾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8141&subMenu=articletotal

화로 쌀수요가 줄어들면서 국내 농기계 수요 감소 가능성

FTA(Free Trade Agreement)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한-EU FTA, 한미 FTA 체결 등, FTA의 가속화는 국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FTA로 인한 국내 농업 기반의 붕괴는 농기계 내수의 기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국내 농기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2) 외식업

□ 수출현황34)

- O 2006년 8월 현재 총 52개 브랜드가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주로 진출
- O 52개 브랜드 목록은 부록 참조

□ 수출환경

Ο 강점

- 외식시장 규모 확대: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가정대용식 시장의 활성화, 핵가족화와 단독가구의 증가, 산업화와도시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외식시장 규모가 커지고있음. 외식시장 규모 확대: 국내 외식시장규모는 2000년 불변가격기준 시 1990년 약 18조원에서 2003년 약 40조원으로 두 배 이상규모로 성장

³⁴⁾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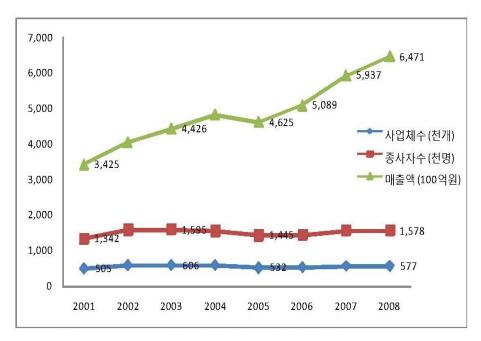


그림 9 외식업 성장 추이(한국식품연구원, 2010)

O 약점35)

- 표준화 부족: 우리나라 음식은 표준화된 레시피가 없음. 주방장의 감각으로 하면서, 일정한 맛의 음식이 제공되지 않음
- 음식의 현지화 부족: 미국에서 한국 음식점은 한국인만 대상으로
 함. 현지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 한국음식의 퓨전화도 병행할 필요
- 위생관념 부족: 미국에서 음식점 위생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음식점은 B가 가장 많음
- 고가의 음식가격: 다른 국가의 음식에 비해 가격이 비싸게 책정됨
- 메뉴판 문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메뉴판에 음식 명칭만 제공. 또한 음식명칭도 음식점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소비

³⁵⁾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자에게 혼란. 음식명 표준화 필요

- 외식산업 통계 부족: 외식산업 관련 수출입 통계 필요

0 기회

- 정부의 의지: 2011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제시. 2009년 현재 131조원의 식품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245조 원으로, 48억 달러인 농식품 수출액을 200억 달러로, 식품분야 고 용인원을 176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4개 분야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23개 과제 추진. 식품 연 구개발 투자를 현재 1040억 원에서 2017년 4000억 원으로 증가시 켜 식품 기술 수준을 높임. 전북익산에 2015년까지 3대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하고, 150여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국가식품클러 스터 조성 계획.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만들어 식품기업에 상 담·수출·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매출액 100억 원 기업을 2017년까지 2000개로 늘림. 식품기업이 원활하게 원료 조달하도록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60%로 높이고, 곡물 138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해외농장 38만ha를 개발하고, 해외 곡물회사 를 설립해 2015년까지 연간 수입량의 30%인 400만 톤의 곡물을 도입하도록 함
- FTA 활성화: FTA로 서비스 장벽이 완화되고 외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서비스 산업의 고도 와를 가져올 수 있을 것. 또한 선진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업계의 경쟁이 유발되어 국내 외식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FTA로 관세 등,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외식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³⁶⁾

³⁶⁾ 김성훈, 이계임, 김윤식, 장도환. 2007. FTA 협상에 따른 가공식품 및 식품·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6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기대효과

	구분	2010년		2017년
	식품산업 매출액	131조원(2009)		245조
총괄	식품산업 고용	176만 명(2009)	\Rightarrow	200만 명
	농식품 수출	59억 달러		200억 달러
	식품기술 수준	선진국의		85%
	'국품기술 TT 	30~65%		00%
식품산업	그게시프크게 A 다		\Rightarrow	매출 4조
	국가식품클러스터	_		고용 22천명
인프라확충	식품산업 인력 교육	2,100명		10만 명
	농식품 모태펀드	250억		최대 4,000억원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946개소		2,000개소
	매출 500억	54개소		100개소
	지역전략식품사업단	(매출평균 340억)		1007117
농어업과	매출 50억 농공상 융합형			300개소
식품산업	기업		\Rightarrow	30071172
연계강화	1인 기업 창업 지원	연 120명	연 120명	
	- 가공 플랜트	4개소		100개소
	사이버 거래소 거래량	1,000억		1조원
	해외 한식당	1만개		2만개
글로벌경쟁력	포장김치 비중	40%	ightharpoonup	60%
강화	막걸리 국산쌀 비중	33%		50%
	기능성 식품시장	2조		4조
소비자	인증제	18종		8종
정보제공 및	GAP 시설	총 생산량 3%	\Rightarrow	10%
보호	녹색식생활 실천율	10%		60%

※ 출처: NEWS1. 2011년 9월 28일.³⁷⁾

- 첫째,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생산의 특화와 교환의 이익 가능
- 둘째, 시장 개방에 따라 장벽 철폐로, 기업의 생산규모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 발생 가능
- 셋째, 개방으로 생산자들에게 시장이 확대되며, 기회가 증대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

³⁷⁾ http://news1.kr/articles/385234

급하려는 노력을 제고할 것

- 넷째,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기술 혁신 노력을 유발할 것
- 다섯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것
- 여섯째, 기술지식의 창출을 증가시키고 간접적 기술 이전으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외국인 직접투자를 톡진하고, 경쟁 촉진 으로 소비자 잉여 증대될 것

O 위기

-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2011년의 세계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을 보임. 세계 경제의 위축은 외식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의 어려움 가능성
- 원재료비 상승: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곡물 등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 이는 가격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2.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전략과 지원정책

1) 농기계

□ 수출전략과 방안

○ 중소농기계업체의 수출강화를 위해 국가별, 유사품목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성화할 필요. 협의 체 중심으로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장조사, 설계, R&D, 생산, 판촉, 사후관리까지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수출지원체제 구축. 고유 특수 기술을 확보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등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원 가절감, 마케팅, 국제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함. 중소업체의 연구 개발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진청, 농기평, IT융합농기계지원사업단의 연구지원 필요. 학계와 제조업 체와의 거버넌스로 지원활용맵을 구축할 필요38)

- 전략적 접근 중요. 특히 현지 고위인사들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아시아의 지역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 능력이 거의 없어 농가를 상대로 한 판매전략은 잘못된 것. 과거 우리나라는 90% 이상 정부가 주도하여 농업기계화가 추진됨. 현지 고위공무원·대학 관계자 등 지도급 또는 유력인사를 활용할 필요. 국내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세미나에 초청하고, 간담회·공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인간관계를 형성할 필요³⁹⁾
- 기업 규모별로 수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 규모가 큰 업체는 현지 업체와 개별접촉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면 유리한 반면 중소업체는 정부나 학계·농기계조합 같은 공공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 축하고 이후 전시회 참가 등을 공동진출하는 방안
- O 현지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지 전시회에 참가 혹 은 현지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 O 국가별 맞춤 지원 필요. 이슬람 국가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수출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훈련, 교육 프로그램 필요

³⁸⁾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1081001106&c_code =0103

³⁹⁾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8141&subMenu=articletotal

[참고자료]

종합형 농기계업체인 동양물산기업㈜(회장 김희용)이 중국에 농기계 합자회사를 설립한다. 동양물산은 지난 18일 중국 장쑤(江蘇)성 옌청시에서 정부 인사 및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집단그룹과 합자회사인 '강소동화기계유한공사'설립 조인식을 체결했다. 총 투자금액 1,150만달러(약 120억원) 가운데 동양물산기업이 550만달러(약 58억원)를 부담한다. 투자 내역은 현금 100만달러와 기술이전료 450만달러다. 특히투자 형식으로 트랙터 3개, 콤바인 1개, 승용이앙기 1개 모델의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 동양물산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내 농기계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지역에 기술이전을 통한 합자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합자회사의 생산 및 판매규모는 2015년까지 약 10억위안(약 1,700억원), 2020년 20억위안(약 3,4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동양물산기업은 이번 합자회사 설립으로 중국 내 현지 국산화가완료되기 전까지 완제품과 부품 수출을 통한 매출 증대와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합자회사의 제품이 중국 내수시장에 한정해 판매가 이뤄지고 수출 판권은 동양물산기업이 갖게 돼 앞으로 수출이 본격화되면 직간접적인 수혜도 누릴 수 있게 된다.한편 강동집단그룹은 1945년에 설립돼 엔진을 연간 150만대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 내 상장기업이다.

출처: 농민신문. 2011년 7월 27일. 동양물산, 중국에 농기계 합자회사 설립.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0773&subMenu=articletotal)

□ 지원제도/정책

○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키엠스타) 활성화: 기존 서울국 제농업기계박람회(SIEMSTA)와 대전 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를 통합하여 2010년에 처음 개최됨. 아시아 최대 규모. 2010년 전시회에는 26개국 271개 업체(해외 25개국 57개 업체)가 참가, 23만여 명(외국인 2,100명)이 관람하고, 상담 및 계약실적이 3,940건으로 1,431억 원에 달함. 이는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기계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세계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수출에 기여할 수 있음. 2009~2010년에 걸쳐 인도, 중국, 미국, 일본,

이집트, 호주 등에서 참판 홍보를 함. 행사장에 수출 및 바이어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47개국, 878명의 바이어가 다녀가 765건(1,079억 원)의 계약 및 상담 실적을 기록함. 이를 독일과 비교하면, 많이 뒤 짐. 2009년 독일 하노버박람회에 해외 45개국, 1,074개 업체 참여하 고 88개국에서 8만여 명이 관람⁴⁰⁾

2) 외식업

□ 수출전략과 방안

- O 현지화 전략⁴¹⁾: 외식업의 현지화 전략이 중요함. 단순히 우리 음식을 이식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우리 고유음식의 특성을 살리면서 현지인에 맞는 음식 개발 필요.
- O 표준화 전략: 한식의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함. 맛의 정도뿐만 아니라 메뉴의 표준화가 필요. '신선 설농탕'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이고 있음. 영문 표기의 표준화 노력 필요
- O 다양성 전략: 한두 가지 종류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종류의 한식이 동시에 소개되고 홍보될 필요.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메뉴의 한식이 개발될 필요
- 홍보의 중요성: 현지의 외식업 전시회,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류'이용한 홍보. 중앙정부 간 연계 통한 홍보. 현지 영사관, 교민 등 한인 네트워크 활용. 지역사회 명소화 전략

□ 지원제도/정책

O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 필요. 태국정부는 태국의 음식과 외식산업을 식문화를 통한 수출상품의 하나라는 인식 하에 태국 상무성의 수출진흥국 하의 서비스무역과(Office of Serviec Trade)에서

⁴⁰⁾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1911&subMenu=articletotal

⁴¹⁾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181143

태국 외식업체 및 태국요리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음. 수출진흥국은 국외에서 태국 외식업체의 수가 2005년 8,500개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수행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 표준화 정책: 국내 외식 기업의 해외 진출시 각국의 선호 음식, 문화 차이 등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한국메뉴를 선정하도록 지원하기위해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등 4개국의 대표한국음식 개발 사업실시하여 20대 메뉴 선정하고, 표준조리법 구축. 외국인에게 한식정보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100대 한식 메뉴에 대한 영문 명칭과메뉴 설명, 표기방법 등을 일원화. 이의 적극적 활용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 홍보지원 정책: 각국의 전시회 참가 지원. 예)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식품수출팀은 최근 일본 외식시장 개척을 위해 오사카 수출 상담페어 참가업체 모집. 2011년 제3회 오사카 한국산 농식품 수출상담페어. 오사카aT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개최. 임차 및 장치비 100%, 냉장(동)비품 100만원 한도 70%, 운송통관료 100만원 한도 70%, 통역판촉요원 업체별 1인 50% 지원42)
- 농림수산식품부 등 외식업 관련 정부부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외식업 관련 공공기관, 한국식품외식발전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외식업이나 수출 관련 협회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연계 및 협조 통한지원 제도 마련 및 집행
- O 외식업체 브랜드화 지속적 추진: 놀부, 원앤원, 본죽, 채선당, 신선설 농탕 등의 성공은 외식업의 브랜드화가 가능함을 보여줌43)
- O 한국 브랜드 추진 가능성: 태국정부는 2001년 'Global Thai Restaurant Project'에 따라 태국 음식의 표준화, 음식점 매뉴얼화, 정부인증제 등의 브랜드화. 이를 통해 2004년 태국 음식점 6,803개

⁴²⁾ http://www.kfida.co.kr/Notice/?W=v&No=18

⁴³⁾

http://month.foodbank.co.kr/Pastmag/section_view.php?secIndex=1419&page=3§ion=006&back=S

소가 진출하여 60억불 매출 효과. 국외 태국 음식점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태국 브랜드(Thailand Brand)와 세계 태국 음식점에 대한 표준 증명서를 발급. 태국 브랜드를 이용하는 태국 음식점은 일정한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참고자료] <국외에서 태국 상표를 이용하는 태국 음식점의 의무>

- 허가를 받은 태국 음식점은 적어도 1년 정도는 태국 음식점 사업을 운영해 야 한다.
- 태국 음식점은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영업을 해야 한다.
- 태국 음식점은 그 나라 단위별로, 안전과 건강에 따른 규정(식품위생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 태국 음식점은 American Express, visa 등과 같이 주요한 신용카드회사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 태국 음식점은 태국음식요리 방면에 적어도 1년 정도의 경험이 있고, 훈련을 받은 남자 요리사(여자 요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 태국 음식점은 태국 고유의 요리 방법에 조화로운 도구와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 태국 음식점은 적어도 6가지 정도의 태국 음식 목록이 (신청서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 목록에 따라) 서비스 되어야 한다.
- 태국 음식점은 태국 무역 사무소 또는 그 나라의 대사관에 의해 검사되고 보증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 전문인력 양성: 전문 한식 교육기관 및 한식조리사 육성
- O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 한식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 O R&D 강화: R&D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준비

[참고자료]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하영제)는 5월 21~24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주 최대 규모 외식산업박람회 'NRA(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how 2011'에 참가해 외식·식품업체 해외진출 지원 및 한식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미국 회사와의 소스 공동개발, 중남미 시장에서의 한국식품 유통 등에 대한 협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외식·식품업체관'에 참가한 CJ제일 제당(고추장 및 불고기 소스류), 대상 FNF(김치), (주)카페베네(홍삼라떼, 오곡라떼) 등은 수출계약 체결은 물론 현지합작회사에 대한 활발한 협의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한국관에서는 미국셰프협회 Walter Neuhold 회장을 비롯한 유명셰프들을 초청해 불고기쌈, 빈대떡 등 전통한식과 김치크로켓, 인삼두부무스등 퓨전한식 시연을 세미나와 함께 진행하는 등 현지인들이 한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종서 aT 수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외식·식품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우리 농식품의 미국 시장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한식 홍보를 위해 세계적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외식진흥팀). 2011년 6월 1일. 국내 외식기업 해외 진출 늘어날 듯.

(http://www.kati.net/homepage/atkati/tra_info/month_market.jsp?MENUCODE =224&BBSID=1&ARTICLESEQ=98593&SLT_BBS_SEARCH_TYPE=TITLE& EDT_BBS_SEARCH_TEXT=외식&ITEMCODE_TRA=&CONTCODE_TRA=&FILDCODE_TRA=&PAGE=1)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외식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동남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삼겹살 프랜차이즈 '꽁돈'으로 알려 진 (주)위두는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싱가포르 'JP 페퍼다인 그룹(JP Pepperdine Group)'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프랜차이즈 판권을 사고파는 계약을 뜻한다. 이번 계약은 aT가 지난 9월 지원했던 '싱가포르 프랜차이즈박람회'에 한국관 참가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주)위두는 국내산 식재료 수출 및 로열티를 제공받는 대가로 3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특히, JP 페퍼다인 그룹이 소스류 및 양념류 등 국내산 식재료를 (주)위두로부터 직접 공급받기로함에 따라 연간 250만 싱가포르달러(23억원) 상당의 추가 수출효과도 기대된다. 1967년 창립한 JP 페퍼다인 그룹은 연 매출액 181억원 규모의 중견 외식기업으로 싱가포르 내에 5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서 aT 수출이사는 "꽁돈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선호하는 칠리소스를 삼겹살에 접목해 새로운시장을 개척한 브랜드"라면서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외식브랜드가 동남아에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외식진흥팀). 2011년 10월 4일. aT 외식프랜차이즈 지원사업'결실'.

(http://www.kati.net/homepage/atkati/tra_info/month_market.jsp?MENUCODE =224&BBSID=1&ARTICLESEQ=98845&SLT_BBS_SEARCH_TYPE=TITLE& EDT_BBS_SEARCH_TEXT=외식&ITEMCODE_TRA=&CONTCODE_TRA=&FILDCODE_TRA=&PAGE=1)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식은 브랜드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주방장 손끝에서 맛이 결정된다는 고정관념으로 다점포화에 있어 물음표를 달고다녔던 한식. 그러나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접목되면서 한식의 브랜드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맛과 운영상의 표준화 역시 상당 수준 진일보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광우병, AI, 트랜스지방 파문 등 먹을거리 관련 사고가터질 때에도 '한식=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인식으로 한식 FC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선례를 남겨왔으며 유난히 수명이 짧은 국내 외식 트렌드의 주기에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메뉴의 강점을 살려 창업시장에서의 수요도 꾸준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창업시장이 초토화된 올

해 한식 프랜차이즈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원앤원(29개점), 본죽(102개점), 채선당(28개점) 등은 전년대비 가맹점 수에 있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2008년 10월 현재). 또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명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식 전문기업 놀부(1987년 창업)와 원앤원(1991년 설립)은 올해로 각각 21주년, 17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외식 FC업계 선두 기업에 자리매김해 있다. 한편 지난 7월 한국외식연감편찬위원회와 (사)한국음식업중앙회가 전국 16개 시도 1173개 음식점 경영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음식점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향후 전망 있는 외식업종·업태를 묻는 질문에 한식(고깃집 26.2%, 전통음식전문점 20.1%)을 꼽은 경영주가 전체의 46.3%를 차지해 음식점 경영주들 역시 한식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한식 프랜차이즈가 꾸준한 성장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선두업체들을 중심으로 메뉴 표준화 및 운영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꾸준히이어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놀부는 충북음성 공장에 이어 HACCP을 받은 곤지암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맛의 표준화를 꾀했다.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고 있는 원앤원은 국내 외식업계 단일투자로는 최대규모인 총 투자비 220억원을 투입해 HACCP 인증을 받은 천안식품공장을 준공, 콜드시스템을 통한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외식업계 최초로 보쌈, 족발, 김치, 새싹쟁반무침면 등에 MSG(인공화학조미료) 무첨가 제품을 출시해 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건강지향적인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외식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업방침의 일환이다.

국물요리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CK(중앙공급식주방)에 대한 투자로 국물요리는 표준화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다. (주)미라지식품의 추어탕 브랜드 '남가네 설악추어탕'은 완제품 공급으로 맛의 표준화를 꾀한 경우다. 충남서산에 자체 CK를 운영하고 있는 미라지식품은 전통 가마솥에서 1일 2만4000인분의 추어탕을 끓여 냉장유통 방식으로 120여개 가맹점에 공급, 매장에서는다시 한 번 끓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추어탕을 일원화된 맛으로 제공하고 있다. 삼계탕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는 지호한방삼계탕이 삼계탕의

육수를 원액 상태로 공급해 맛의 표준화를 달성했으며 신선설농탕 역시 중앙 CK에서 사골육수, 고기육수, 고기, 김치, 깍두기 등을 생산해 전 매장에 일일배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능력은 당일배송, 당일소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샤브샤브 전문점 채선당은 주재료인 육수,소스,유기농 채소,고기,해물 등 전 식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물류 노하우를 축적,전 가맹점에 대한 동일한 제품을 공급, 맛의 표준화를 달성하고 있다. 유통이 까다로운 채소류의 경우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영농조합과 직거래를 통해 연중 균일한 가격대의 유기농 채소를 공급받음으로써 식자재 안정화를 꾀했다.

한정식 프랜차이즈에서는 좋구먼, 찌개애감동을 운영하고 있는 (주)맛있는 상상(가맹 16개점, 직영 6개점)이 자체 식품관 운영으로 맛의 표준화를 꾀했다. 맛있는 상상은 전 매장에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의 장류뿐만 아니라 김치류, 장아찌류, 소스류를 일괄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한정식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월간식당. 2009년 1월 6일. 세계화 추진과 맞물려 새롭게 조명받는 '한식'. 제285호.

(http://month.foodbank.co.kr/Pastmag/section_view.php?secIndex=1419&page=3 §ion=006&back=S)

제3절 주요국 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지원정책

1. 미국

□ 개요44)

○ 미국의 농산품 수출 지원은 정부부처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역, 식품안전, 바이오연료, 환경보존, 식품지원 등에서 여러 정부부처 간의 협력(농무부 산하기관 간에 아니면 농무부와 다른 부처 간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7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 담당업무

농무부 프로그램	관련기관	업무	
농가·해외농업	FCA FAC DMA	곡물조달, 신용, 보존,	
증가에 최공합	FSA, FAS, RMA	재난, 긴급재난프로그램	
식품·영양·소비자	CNPP, FNS	기아극복, 건강증진, 영양교육	
식품안전	FSIS	식품소비안전, 올바른 레이블링,	
역품인인	L919	포장과 관련한 캠페인	
ᄋᇀᄀᆌ	AMO ADUIO OIDOA	국내외 미국농산물 유통원활화,	
유통·규제	AMS, APHIS, GIPSA	동식물 건강	
TIOLSL74	FO NDOO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으로 국토의	
자원·환경	FS, NRCS	건강상태 유지	
연구개발	ARS, CSREES, ERS,	건재권 제고	
인무개월 	NAL, NASS	경쟁력 제고	
농촌개발	RD	농촌지역 경제발전, 지역개발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 미국 농업정책에 대한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는데, 연방의회가 농업 정책의 틀이 되는 법을 제정하면 농무부가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 행함. 미국 농무부는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하기관으

⁴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R577.

로 미국농업진흥청(FSA: Farm Service Agency), 농업위험관리청 (RMA: Risk Management Agency), 자연자원보전청(NRCS: Natural Resources and Conservation Service), 미국농업연구소 (ARS: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등을 두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의 수출입 업무를 위해 농무부 산하의 해외농업청(FAS)가 주도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이 외에도 미보건부 산하 FDA,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 등이 교역 업무를 담당함.

□ 교역업무 추진체계

O 해외농업청(FAS)

- 농림사업 중에 상당수가 농무부 주도하에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집행되고 있음. 교역부문에서는 미무역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농무부 산하의 해외농업청 (FAS)가 담당함.
- FAS는 농업부문 시장개발, 무역협상, 그리고 시장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수출신용보증과 식량지원프 로그램도 집행하고 있음.

O 미국식품의약청(FDA)

 식품안전 규정마련과 집행은 농무부와 미국식품의약청(FDA)에서 담당하고 있음. 육류는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청에서 과일과 채소는 FDA에서 담당하며 수입농산물은 국가안전부가 전반적으로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는 동·식물 건강증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식품안정에 역할을 하고 있음.

O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

- 검역, 해충국내반입에 관해서는 APHIS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1999년 침입종협의회(National Invasive Species Council)가 법정부적으로 구성되었으며, APHIS내에 국내 식물보호를 담당하

는 식물보호·격리, 가축과 관련한 가축서비스, 국제문제를 다루는 국제서비스가 있음. APHIS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동물의 건강을 감시 또는 국경으로부터의 유해물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며, 동물과 식물, 동식물 제품 및 생물학적 약제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함.45)

0 기타

- 식품지원과 관련하여 국내의 식품안전과 유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은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 (FNS)에서 담당하고 있음.. 여기서는 식권프로그램과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영양서비스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농식품은 농무부 산하 농업유통서비스(AMS)를 통해 조달함.
-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과의 협력 하에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청(FAS)에서 국제 식량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무부내에서는 미국농업진흥청(FSA) 산하 상 품신용공사(CCC)가 다른 정부 부처와 외국정부에 대한 곡물판매, 식량 국제지원을 돕고 있음.

□ 수출 지원체계

- O FAS는 미국제품의 외국시장 접근을 개선을 맡고 있는데,46) FAS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시자에서 미국 농산물의 경쟁적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또한 FAS는 세계 수요와 공급, 무역동향, 시장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업무를 담당함.
- O FA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해외에서 미국 농업 대표
 - 국제 무역 정책: 미 무역대표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국제 무역협

⁴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미국 농정의 주요이슈 및 정책결정 주체. 연구자료 D261.

⁴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미국 농정의 주요이슈 및 정책결정 주체. 연구자료 D261.

상 시 농무부의 업무를 조정·지휘. FAS의 무역정책 전문가는 외국 무역장벽 및 기타 미국 농산물 수출을 저해하는 관해와 정책을 파악해서 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 데이터수집: FAS의 분석가들은 생산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출품의 마케팅 기회를 평가하며 미국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상의 변화를 추적
- 생산 및 무역분석
- 미국 농업의 증진과 지원: FAS는 각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수출입자들이 벌크 제품에서 브렌드 제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의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최·유지하도록 지원. FAS의 최대 홍보 프로그램은 시장접근프로그램(MAP)과 외국시장개발협력프로그램(FMD). 이들 두 프로그램에 따른 홍보활동은 주로 이들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 자원과 재원을 계획, 관리, 제공하는 농산물 무역조합들과 주 지역 무역단체, 소기업, 협동조합에 의해 실시됨. 또한 FAS는 수출업자가 바이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음
- 수출에 대한 상업적인 재원조달: FAS는 주요 농산물 신용법인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농산품 수출업자들에게 중단기 재정조달 지원을 제공
- 기타: 시설보증프로그램, 기증 및 특별할인판매
- O FAS는 미국의 농업관련 이해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90여개국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FAS는 미국제품의 시장접근성을 개선하기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산출함. 또한 수출재원 조달과 시장개최 프로그램을 집행하며 식량자원과 시장과련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세계 자원과 국제기구에 대한 연계고리를 제공함.
- O FAS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는 무역뉴스, 무역정책, 수출업자지 원, 주요농산물정보, 국가정보, 수출프로그램, 식량지원프로그램, 수

입프로그램, 농무관보고서, 주요농산물 교역보고서, 수출판매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 정보 및 미국-중남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

2. 일본

□ 개요47)

- 일본의 농업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정책영역 등을 규정한 기본법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 제정)임. 이 기본법에 근거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시책, 추진일정 등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10년 정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농정의 구체적인 시책을 결정한 것이며, 5년 마다 수정하고 있는데, 현행 기본계획은 2000년 3월에 결정된 이후, 2005년 3월에 수정되었음.
- 또한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농정의 중점시책을 결정한 연차계획이 있음. 2008년도 연차계획은 '21세기 신농정 2008'로, 여기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과 농산어촌 활성화, 환경 및 자원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대신관방에 '식량안전보장과'를 신설하여 식량의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식량 자급률 향상, 식량수급전망 등의 업무를 담당함.
- O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즉 농림수산물의 대부분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서 수출촉진 그 자체가 농업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못하고 있 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여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첫째, 일본의 국내시장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음. 일본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진입하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농

⁴⁷⁾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R577.

림수산물에 대한 총수요 그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국내시장이 축소되는 반면에 해외시장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음. 특히 아시아의 경제 성장으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확대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일본 요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에힘입어 일본 식재료의 해외수출을 가능성이 높아졌음.
- 셋째, 일본 국내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의 증가도 중요한 배경의하나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은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정책을 추진했으나, 농업시장개방이 협정체결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수세적 농정을 공세적 농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 따라서 일본정부는 지난 2007년 이후 일본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 의 해외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⁴⁸⁾ 고이즈미 정부는 5년 이내에 농림수산물 수출을 배증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아베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조 엔 수출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

□ 교역업무 추진체계

- O 일본 정부의 농산물 수출 추진체제는 다음과 같음.49)
 - 먼저 수출촉진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는 농림수산성의 대신관방 국제부 수출촉진실이 맡고 있음. 수출촉진실은 타 정부 부처와의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식품위생(후생노동성), 무역관리(경제산업성), 관광홍보(관광청), 주류산업(국세청), 해외홍보(외무성) 등이 농림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분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농림수산성의 각 부서와의 업무조정 역할도 수행하

⁴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중국, 일본.

⁴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중국, 일본.

고 있음.

- 농림수산성은 전국의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전국적인 협의체제를 형성함.50) 대표적으로 「농림 수산물 등 수출촉진 전국협의회 (이하, 전국협의회)는 2005년 4 월에 설립된 단체로 일본의 농림수산물 · 식품의 수출촉진을 목표 로 삼고 있음. 이 전국협의회에는 농림수산단체, 식품산업 · 유통 관계단체, 외식·관광관계단체,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지역블 록별 수출촉진협의회, 관계 정부부처 등 148개 회원이 참가함. 따 라서 전국협의회는 전국의 농림수산업·식품과 관련되는 민관단 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기구이며 주요 활동으로서는 수출에 관 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확산, 수출과 관련된 계몽활동 및 홍보, 수출 촉진에 관한 대책을 검토하며,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국제부 국제 경제과 수출촉진실에 사무국을 두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전국협의 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일본의 수출전략은 농림수산성 의 수출촉진본부가 주도하여 작성하고 이 수출전략을 전국협의회 를 통하여 관련 단체에게 설명·홍보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승인 을 얻음으로써 수출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게 됨.

□ 수출 지원체계

○ 농림수산성은 2007년 5월에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 적 수출전략」(이하, 수출전략)을 제시하였고 동 전략은 동년 6월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승인되어 일본의 수출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채 택되었음. 그러나 2008년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엔고(高)로 인하여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이 주춤하자 일본정부는 2009년 6월에 수출전략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동년 6월 전국협의회는 개정안을 채 택하여 현재에는 이 개정된 수출전략에 의거하여 수출촉진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⁵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중국, 일본.

- O 수출전략에서는 네 가지 주력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는 수출환경정비
 - 둘째는 품목별, 국가·지역별 전략적 수출대책
 - 셋째는 의욕적인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
 - 넷째는 일본음식·일본식재료의 해외수요개척

O 수출환경정비

- 농림수산물의 수출에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됨.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또한 상대국 정부의 요구조건도 충족시켜야 함. 따라서 먼저일본의 수출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상대국 정부의 요구조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거나 상대국 제도가 수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있음.
- 수출환경정비를 위해 수출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검역협의를 가속화하고 수출검사체제를 강화.
 - 둘째, 수출에 관한 증명서 발행을 원활화. 수산물, 식육, 우유·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위생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위생증명서를 신속하게 발행하면서 동시에 상대국이 요구하는 증명서의 항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 번의 증명서 취득으로 수개월 동안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셋째, 유기농산물 JAS규격의 동등성에 대한 상대국 심사의 신속화를 요청함. 일본정부가 인증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유기JAS 규격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도록 하여 일본의 유기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 넷째,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의 관세철폐·인하를 지속적으

로 추진함.

- 다섯째, 미국이나 EU 등 일부 지역에 수산물,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촉진함. 수출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강습회 개최, 전문가파견,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작성하고 취급 시설의 인증취득을 촉진하며 HACCP(위해분석 중요관리점 기법)에 기초하여위생관리의 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생산단계에서 GAP(농업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전국적으로 도입·보급함. 이를 위해 강습회 개최, 전문가 파견,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작성, 보급 지도원에 의한 생산현장에서의지도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O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전략

- 수출환경은 품목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점개별품목과 중점국가·지역' 그리고 '특정중점품목과 특정 중점지역'을 설정 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현재 11개의 '중점개별품목'을 설정하고 있고 이들 개 별품목별로 중점국가·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조치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음.51) 한편 '중점개별품목과 중점국가·지역' 중에서 잠재적 시장규모가 특히 크거나 원래 시장규모가 큰 품목과 지역 을 조합하여 '특정중점품목과 특정중점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쌀, 야채, 과실, 목재, 동 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식육, 수산물, 북미에 대해서는 식육, 차, 수 산물, 중동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이 특정중점품목으로 설정되어

⁵¹⁾ 중점개별품목으로서는 ①쌀 및 그 가공품, ② 야채 및 그 가공품, ③과실 및 그 가공품, ④꽃과 나무, ⑤우유 및 유제품, ⑥식육, 식육 가공품 및 기타 축산품, ⑦차, ⑧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⑨특용임산물, ⑩가공식품, ⑪목재가 선정되어 있다. 중점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중점국가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쌀에 대해서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가 중점국가로 선정되어 있고 과실 중 사과에 대해서는 대만, 홍콩, 중국, 태국, 러시아, UAE, 한국을 설정하고 있다.

있음

O 의욕적인 농림어업자 지원

- 의욕적인 농림어업자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실시함. 상대국 바이어가 집결하는 국제견본시장·상담회 등에 일본 전시관을 설치하거나 해외에서 독자적인 상담회를 개최하여 일본 농림수산물을 알리며 해외백화점 등에 상설점포를 설치하거나 일본식재 페어를 개최. 국내에서도 외국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품목횡단적인 상담회, 업종별·품목별 상담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
- 한편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 담체제도 강화한다는 방침. 상대국에 존재하는 수출상의 애로사 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외무성, JETRO가 연대하여 상 대국 정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체제를 구축.
- 농림어업자가 수출을 도모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 집하여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에 대한 힌트집」을 농림수산 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출 시의 유의점, 해결해야 할 점, 수출상대국의 제도와 지원조치, 우수 수출사례, 국내외 바이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O 일본음식·일본식재의 해외수요 개척

해외에서는 일본음식이 건강에 좋은 요리로 알려져 있고 일본 레스토랑 등도 많이 존재하나 아직 일본요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상태. 따라서 해외에서 일본요리와 일본식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수요를 창출·확대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의 수입업자, 도매업자, 음식점 업자, 소매업자, 요리학교 관계자, JETRO, 재외공관, 일본음식 공로자 등이 참가하는 수출촉진을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외수요를 개최.

- 일본음식 레스토랑 해외보급추진기구(JRO)는 해외 각지의 일본음식 레스토랑 네트워크를 구축.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음식 레스토랑에서 일본식재료 박람회, 상담회 개최, 레스토랑 쇼에의 출품, 산지견학을 실시. 재외공관이 주최하는 모임에서 해외의지도자들에게 일본음식을 제공하는 사업(WASHOKU - Try Japan's Good Food)을 추진하고 동시에 일본요리강습을 병행함으로써 일본 요리를 홍보

□ 수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 O 농림수산성은 수출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 첫째, '1/2 보조사업'. 이 사업은 수출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반을 상한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에 5.4 억 엔의 예산이 지원. 총사업비가 400만 엔(국고보조금액 200만엔) 이상인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며 공모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주체는 농사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삼림조합, 어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상공회, 농업생산법인, 유한책임사업조합(LLP) 등
 - 둘째, '매칭 지원사업'. 매칭지원사업은 해외에서 일본음식이나 일본 농림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담회나 전시회, 시식회 등 매칭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업에 대해 정액보조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2010년도에는 5.4억 엔의 예산 설정. 주로 물류사업자나 민간단체가 매칭 이벤트를 개최할 때 지원. 2009년도에는 17차례의 매칭 이벤트가 미국, 네덜란드, 대만, 베트남, 홍콩, 태국,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개최되었고 이들 이벤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셋째, '수출과제 해결대책'. 농림수산물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여러
 러 가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조사·연구활동에 대해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10

년도에는 1.2억 엔의 예산이 책정. 보조대상사업은 수출을 위한 생산체제 구축(수출 상대국의 규제상황에 대한 조사나 수출 농림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물류 효율화(수송의 공동화에 의한 수송비 절감방안 조사, 농림수산물 등의 수송 방법의 표준화 등) 사업

- 넷째, 기타 지원사업으로 일본의 각 지역블록별로 농림수산물 수출에 관여하는 관계자가 모두 모이는 종합 이벤트인 '수출 오리엔 테이션 모임'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의 식품전시회 등에 일본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2.8억 엔의 예산 책정. 동일한 맥락에서 해외의 고급 백화점에 일본 농림수산물의 판매 거점을 설치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2.8억 엔의 예산이 이 사업에 배정

3. 중국52)

□ 개요

- O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30년간 농업의 대외개방 역시 큰 성과를 기록. 농산품 무역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1978년 61억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총액이 2007년에는 781억 달러로 11.8배 증가. 그 결과 중국은 이미 세계4대 농산품 무역국
-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수출상품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중지하는 수출 전략 추진. 지속적으로 관세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를 수용하여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대상국들의 관세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지게 되었으며, 2004년 전반기에 모든 관세 삭감. 또한 관세할당에 해당하는 10가지 농산품 수입품목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수입 관세할당 수량을 확정하여 할당한도 내에서 저관세를 시행하고 할당한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⁵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중국, 일본.

고관세 부과. 국영무역(國營貿易)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산품의 경우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을 하게 함과 동시에 일부 관세할당분 을 비국영무역기업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짐

- 중국 경제에서 농산품 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중국은 국내 및 국외의 시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내시장의 부족분을 조정하고 농산품의 효율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중국 농산물 수출 정책의 목표는 농업의 전략적 구조 조정, 농민의 취업 증가,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 □ 수출 지원체계: 농산물 수출 11차 5개년 발전계획(農産品出口"十一五 "發展規划)
 - O 2006년 8월 24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농산물 수출 11·5 발전 계획(農産品出口"十一五"發展規划)'은 중국의 첫 번째 농산품 5개년 계획으로, 2010년에 농산품 수출 38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연평균 7%의 성장 목표로 제시. 이 계획은 향후 선진국들의 높은 농업보조금, 높은 보호무역 수준 등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몇 년간 농산품 수출에 미칠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제시. 그 결과 '농산물 수출 11·5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의 농산품수출 지원 정책조치에 대해 재정, 세수, 금융 및 보험 등 각방면으로 제시
 - O 품질안전관리의 강화, 농산품 수출 경쟁력 제고
 - 중국은 농산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용 농산품을 생산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 우수농산물인증(GAP)기술의 응용을 적극 촉진하고, 전통적인 생산방식의 개선을 통한 표준화된 생산을 추진. 또한 농업 투입품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비료 및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고독성·고잔류 농약의 사용·생산·판매에 대해 엄격히 금지
 - 뿐만 아니라 농산품 수출가공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및 지도를 확대 실시. 국가 검사면제, 명품브랜드 수립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식품의 품질 향상과 식품 안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유도.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수제조관리(GMP)를 추진하고 손상분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품질관리방식과 수출식품 위생등록제도를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GAP, GMP, HACCP 및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농산품 품종, 양식이력 및 품질 이력 추적시스템 수립을 통해 국제시장 표준에부합되도록 함

이 외에도 안전 검사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출용 농산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농산품 검사 기초설비 건설을 확대하고 출입국 검역 장비 및 검사기술의 수준 제고하고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배양. 또한 업종별 조직 및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사전검사 능력이 강화되도록 독려

O 수출상품 구조의 최적화, 브랜드 전략의 시행

- 가공단계 수준을 높인 고부가가치 농산품 수출을 하도록 기업을 격려하고, 농산품 수출기업이 자사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시장에서 브랜드의 명성을 형성하고 고정적인 소비 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첫째, 기업이 해외 선진기술 및 우량 품종을 도입·연구하여 고유 제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핵심 경쟁력 향상. 기업이 국제 선진 설비, 농업생산 및 가공 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정. 또한 신품종, 농업생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비료, 바이오 농약 등 농업 생산을 위한 제품의 수입 장려
- 둘째, 농산품 원산지 표기 등록 제도를 적극적인 추진하여 원산지 표기로 보호된 농산품은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사 면제. 또한, 유명 원산지표기로 보호된 농산품 수출기업은 간단하게 통관 시 행

- 셋째, 제품품질 표준시스템을 수립하고, 농산품 수출 업종표준 및 표식에 대한 홍보 적극 추진. 동시에 표준단위 실제 단가, 제품 기본성분 표시, 식품영양품질표시, 제품의 신선 정도(출품일자)등의 식별 표지를 만들어 제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도록 함
- 넷째, 브랜드농산품의 해외마케팅 계획 수립. '수출 브랜드 발전자금'으로 우선적으로 농산품 수출브랜드 형성 지원. 수출브랜드 발전자금은 유명 농산품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브랜드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비용,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개하는광고 선전, 전람회 참가, 전시판매 및 판촉활동에 지원하거나 찬조하는 방식으로 쓰임
- 훈련 및 정보 서비스 강화, 농산품 수출 촉진 계획의 시행
 - 국제시장에서의 농산물 수출기업의 입지를 제고하고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전람회 참가를 통해 기업이 국제마케팅 능력을 제고하여 안정적 인 수출경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첫째, 권위 있는 농산품 무역정보 제공 시스템과 민감 상품 수출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부처와 업종협회가 주요 수출국 시장에서 중국 농신품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을 추적하여 실 시간으로 알려주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기경보 기능 수행. 특 히 해외의 중국 농산품 무역에 대한 조사 방식을 파악하고 신속 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반덤핑 제소에 응소하는 문제도 체계적으로 기업에게 법률적 도움 및 기술 제공 지원
 - 둘째, 농산품 수출 정보서비스 수준 강화. 수출 농산품에 대한 통계분석을 강화하고, 중점 수출시장의 동태에 대한 추적 및 감시, 해외 농산품시장 조사연구를 전개하여 중국의 농산품 수출에 필요한 정보와 시스템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에 협조 강화, 중국내 지방과 업종조직을 독려하여 지역·전문적인

농산품 수출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일체화된 농산품 수출정보서비스 시스템 형성. 정부는 신속히 수 출기업에게 수출 대상 국가의 농업, 무역정책법규, 유행성전염병, 품질위생표준, 전염병 검사조치, 무역마찰, 농업협상 등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 셋째, 중국 기업의 국제적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 중국 기업이 국제 박람회 등에서 중국 농산품을 홍보하여 중국 농산품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국제 인증 허가 및 국제 소매상 조직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농산품의 국 제 상호인증 작업을 추진하여 국내 인증기구가 수입시장의 요구 에 부합되는 인증을 하도록 지원
- 넷째, 수출농산품의 물류조건을 개선하여 수출 효율성 제고. 냉장 및 저온창고 운수 위주의 농산품 냉동시스템 구축을 신속히 진행 함과 동시에 신선농산품 화물차를 위한 면세통로를 조속히 개통. 또한 농산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세를 감면하여 성(省)간의 이동 을 원활히 함

O 업종 조직의 설립을 확대하여 농산품 수출의 조직화

-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농업 생산의 조직화. 농산품 수출 중점 지역에 농업전문협력조직을 설립하여 조직차원에서 표준화된 생 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조직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농산품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 이를 바탕으로 농산품 수출업종 조직의 설립을 강화하는 것. 농산품을 수출하는 각 업종의 상회·협회 및 중개조직을 발전시키고, 수산물·육류·채소·과일 등 주요 수출상품을 선택하여 업종별조직 및 상품협회를 설립하여 기업 스스로 서비스 및 감독을 할수 있도록 관리. 업종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업종조직화를 강화하고 농산품 수출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무역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이를 위해서 농산품 수출 경영 주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 다양한 형태의 농업 산업화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윤연결 방식을 적용하는 선도 기업을 격려하 여 농업기지와 농민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

O 농산품 수출정책 지원 시스템의 확대

- WTO 규범에 대한 심층연구와 해외 농업발전의 성공사례를 참고 하여 농산물 수출 지원 정책시스템을 개선하고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우수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세수·금융· 보험 체제를 모색
- 첫째, 중앙무역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출을 위해 사용하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표준 인증·수출기지의설립, 농산품 품종 개량, 품질추적시스템의 설립, 기술 연구개발을할 수 있도록 지원
- 둘째, 대출조건에 부합되는 농산물 수출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지원 제공.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정책성금융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 설계.
- 셋째, 농산물 수출 정책성 보험제도 지속 개선. 수출신용보험과 농업보험이 결합된 리스크 방어 시스템을 구상하여 농산물 수출 신용보험의 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산물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비 능력 강화
- 넷째, 세수 지원정책 개선. 농산물 가공품의 상품코드를 통일할수 있도록 규범화하여 농산물 수출환급세율의 구조를 조정하여기업의 가공식품 수출 장려. 농산물 수출기업이 생산가공설비를수입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세감면 등의 적합한 우대조치
- 다섯째, 수출 농산물의 검사·검역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감 면하여 통관을 신속히 하도록 함. 농산물 수출의 검사·검역 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 검측대 증가. 동시에 수출기업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HACCP, GMP, GAP, EU등록인증 등 품질 인증을 통과한 우수한 농산품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검사·검역 절차를 간략히 하도록 함

- O 대외 교섭능력을 확대하여 대외환경 개선
 -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정부부문간 빠른 반응 능력을 제고하여부문간 정보소통을 강화하여 대외교섭 능력 확대
 - 첫째, WTO의 새로운 협상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추진. 이를 통해 농산물 무역에 있어 3가지 주요 문제점인 시장진입, 국내지원, 수출보조를 해결하여 타국으로 부터의 불공정한 경쟁을 줄이고 중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공평하고 완화된 경쟁환경 조성
 - 둘째, FTA 체결을 위한 협상 확대 실시. 중-아세안, 중-호주 등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주변국가와의 지역경제 공동체 형성을 통해 농산품 수출시장 확대. 그 외, EU・일본・미국・동남아 국가・러시아 등 중점 시장과의 쌍방 협의 제체를 구성하여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외교 교섭력을 강화하고 최대한도에서의 화해 및 분쟁해결을 통해 농산물 수출에 비교적 유리한 국제시장 환경 조성. 그와 동시에 각국의 민간단체와의 관민결합의 협상교류 채널 구축

□ 주요 사례: 산동성 농산물 수출 지원 사례

○ 산동성은 농업생산 측면이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으로 중국 전체 농산물 수출의 약 1/4(24.9%) 차지. 중국의 10차 5개년 기간(2001~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산동성의 농산품 수출액 은 27.9억달러에서 93.5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8년 연속 전국에서 1위 차지. 산동성의 농산품 수출액은 省농업 총생산 액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동성 GDP 성장에 2%p 기여

- O 산동성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동성 정부는 농산품 수출정 책을 새로이 정비. 2006년 9월 선동성정부는 《농산품 대외개장 확 대에 대한 의견(關于進一步擴大農業對外開放的意見)》을 내놓고, 같은 해 10월에는 《산동성 수출용 농산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규 정(山東省出口農産品質量安全監督管理規定)》을 시행하여 전국에 서 처음으로 지방정부의 명의로 수출용 농산품품질안전관련 행정규 정을 규범화한 성이 됨.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 해 산동성 정부에서는 《농업표준화를 시행한 전면적인 농산품 품 질의 제고(關于大力推行農業標准化,全面提高農産品質量的意見)》 등의 규정을 공포하여 농산품 품질안전 관리를 규범화·제도화시킴 ○ 다음으로 수출용 농산품의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농산품의 수 출경쟁력을 향상시킴. 2000년대 중반 들어 산동성에서는 동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유행성 전염병 시범구 건설을 강화하여 동식물 병충 해에 대해 관리하기 시작. 이와 동시에 검역부문에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산동검역당국은 약 8,000만 위안(원화로 약 104억 원)을 들여 실험실 장비 시설을 확충하여 수출 농산물 품질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높임. 2006년에는 일본의 "인증리스트제도(肯定列表 制度)"에 대응하기 위해 최다 1회에 251종의 잔류농약을 검측 해낼 수 있는 잔류농약 검측기술 개발. 그와 동시에 성 검역 당국에서는 기업들이 유행성전염병 및 잔류농약의 통제, 검사검측, 제품추적 및 오류정정시스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품질통제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
- 4. 네덜란드53)
 - □ 개요
 - O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은 농업자연식품품질부(LNV)의 10개의 담당

⁵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R577.

과(Department)와, 산하기관인 규제이행청을 포함한 6개의 청 (Service)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토해양부에 해당하는 주택공간계획환경부에서 농촌개발계획 관리, 감독

- 네덜란드의 농업정책 목표는 국제기준의 식품생산과 농촌지역 활성화. 안전한 식품생산, 활발한 경제활동과 함께 전통과 경관이 잘 보존하는 농촌지역을 추구.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효율적인 농촌정책의 집행을 위해 농업자연식품부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가 함께 협력.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농기업들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네덜란드 농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함
- 네덜란드는 중앙농정조직과 지방농정조직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음. 효율적인 농업정책의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 주정부(12), 기초자치단체(443)개가 유기적으로 협력. 중앙정부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주정부에 가이드라인 제공. 주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는 자연지역 개발, 보존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정책의 구체화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주에도 수천 명의 인원이 농촌정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는 주정부가 세운 지역계획을 토대로 실행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 교역업무 추진체계

O 네덜란드에는 농식품의 원활한 수출이나 유통을 전담하는 정부기관 은 없음. 대신 품목별 생산자위원회(Board)에서 회원농가와 사업체 들을 위해 수출증진, 유통원활화를 위한 기획을 수립하고, 대외적으 로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음

5.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의 사례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연관 식품을 포함하는 농관련산업(agri-business)의 수출 활 성화를 위한 각국의 지원제도에 관한 것임.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 인 농식품연관산업의 수출활성화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지 원정책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임
- O 첫째, 농식품연관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혹은 중 장기 계획이 필요함.
 -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중국이 '농산물 수출 11차 5개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것임.
 - 한국의 경우 농식품연관산업의 수출 활성화에 관한 장기 계획 (master plan)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O 둘째, 국가 혹은 산업계의 특성에 맞는 수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 및 농관련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중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달리 조합주의가 발달한 북유럽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품목별 생산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출 전략이 형성됨.
 - 농업에 관한 국가의 조정과 통제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과 관련 기업들을 결합하 는 농관련산업 수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셋째,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앞서 살펴본 네 나라 모두 수출 대상 국가의 정보뿐만 아니라, 국 제적인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농식품연관산업은 해당 국가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장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어느 산업 영역보다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수 있음.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국가별 수출전략을 형성해야 함.

- 국내외 농식품연관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농식품연관산업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의 범위와 그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인 업종을 구체화하여필요한 통계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함
- 넷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함
 - 많은 국가들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상의 혜택도 지원하고 있음.
 - 농식품연관산업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록 국제적인 경쟁력도 낮아지게 됨.. 따라서 국가 내부적인 비용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농식품연관 수출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관련세제상의 혜택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제4장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제1절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유망분야 선정

1. 수출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AHP 설문조사 개요

O AHP 설문조사 의의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는 정책대안 간 쌍대비교를 통해 대안의 타당성과 중요도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쓰이는 분석기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대안을 설문함으로써 대안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

O 대상 분야 추출

- 관련 수출 통계가 있는 품목 중 농식품 산업과의 연관도가 높고 수출입 규모와 수출 증가율의 증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신문자료 내용분석, 전문가 검토, 농식품부 관계자 검토 등을 통해 총 9개 분야 선정. 전방 연관산업과 후방 연관산업으로 구분
- 후방 연관산업은 농기계, 비료, 사료, 온실플랜트, 동물의약품의 다섯 가지 분야 선정. 전방 연관산업은 외식업, 천연재료 의약품, 천연화장품, 천연 비누치약의 네 가지 분야 선정. 기존의 후방 연관산업 분야에서 농업정보산업, 농산물유통산업, 관광 등 서비스 분야제외. 종자는 농식품 산업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제외. 전방 연관산업 분야는 후방 연관산업과 균형을 맞추고 농식품 원료를 이용하여 활용한 상품 중, 신문자료 내용분석을 통해 최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선정

O 전문가 선정

- 농식품 수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함.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을 선정하고,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여, 최종 10명의 전문가의 설문조사 자료 를 확보함. 최종 대상 전문가는 교수 3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 전문가 1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5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 사 1인으로 구성됨

표 38 수출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AHP 전문가 소속 및 지위

ID	소속	지위
1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7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8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9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2. AHP 설문조사 결과

- O 전방연관산업보다 후방연관산업이 더 수출 유망하다고 전문가들은 생각함
- O 후방산업의 경우
 - 비료 > 농기계 > 동물의약품 > 온실플랜트 > 사료
- O 전방산업의 경우

- ─ 외식업 > 천연화장품 > 천연재료 의약품 > 천연비누/치약○ 농식품 전체 연관산업의 경우
 - 외식업 > 비료 > 농기계 > 천연화장품 > 동물의약품 > 온실플 랜트 > 천연재료 의약품 > 천연비누/치약 > 사료

표 39 수출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AHP 설문결과

대분	<u> 류</u>	소분	전체			
내용	가중치	내용	가중치	순위	가중치	순위
		농기계	0.223	2	0.120	3
후방	0.54	비료	0.231	1	0.125	2
구 등 산업		사료	0.134	5	0.072	9
선됩		온실플랜트	0.191	4	0.103	6
		동물의약품	0.221	3	0.119	5
		외식업	0.302	1	0.139	1
전방	0.46	천연재료 의약품	0.223	3	0.103	7
산업	0.40	천연화장품	0.261	2	0.120	4
		천연비누,치약	0.214	4	0.09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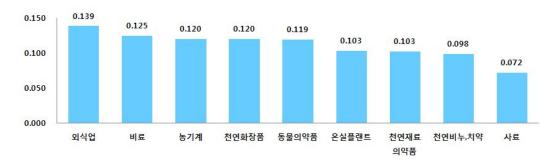


그림 10 수출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AHP 설문결과

제2절 농식품 연관산업 분야별 정책우선순위 선정

- 1. 정책우선순위 선정 조사방법 개요
 -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AHP 방법과 FGI 집단면접 방범, 개별 심층면접 방법을 동원함
 - 관련 전문가 확보가 용이한 경우 AHP 방법 이용. 그렇지 않을 경우 FGI 집단면접, 개별 심층면접 방법을 이용함
 - 이에 따라 농기계, 외식업 분야의 경우 AHP 방법 이용. 비료 분야의 경우 개별 심층면접 방법 이용. 동물의약품 분야의 경우 FGI 집단면접 방법 이용

1) AHP 설문조사 개요

O 수출지원정책의 분류

- 수출지원정책은 정재승(2006)과 고용기·배정한(2008)에서 제시한 지원정책의 분류를 중심으로 농식품부(2011)의 수출지원 정책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전문가와 농식품부 담당자의 검토 과정을 거 침
- 수출지원정책은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 무역정보제공 지원정책,
 수출인프라 지원정책, 수출금융 지원정책의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다시 각각을 세 가지 하위 지원정책으로 세분화함

표 40 수출지원정책 분류

대분류	소분류
	(1) 해외전시회 지원: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여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
1)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수출 관련 종합 혹은 개별상담회 개최
	(3) 해외상품홍보지 제작/배포: 기업 상품을 홍보책자화하여 해외전시회, 무역유관기관에 배포
	(1) 해외시장조사 지원: 개별 수출업체 의뢰로 공공기관의 해 외무역관이 현지 조사하여 제공
2) 무역정보제공 지원정책	(2) 무역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무역정보 DataBase 구축, 인 터넷 거래알선시스템 운영
	(3) 무역실무교육 지원: 상품 수출에 필수적인 실무지식에 대한 교육
	(1) 수출선도조직 선정·육성: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하 는 농식품 수출조직 선정 및 육성
3) 수출인프라 지원정책	(2) 수출 물류 인프라 지원: 물류비(선별비, 포장비, 운송비등) 부담이 큰 경우 물류비 지원
	(3) 수출 전용 상품개발 R&D 지원: 수출을 위한 맞춤형 상 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 무역금융 지원: 상품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4) 수출금융 지원정책	(2) 수출신용보증 지원: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연대보증 지원
	(3) 수출보험 지원: 환율변동, 가격상승 등 수출여건을 고려 한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O 대상 전문가 선정

-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우선설정을 위한 전문가는 정책고객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함
- 농기계 전문가는 10인의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고, 전화 및 이메일 접촉을 통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총 6인의 전문가를 확보함. 전문가는 교수 1인, 수출기업 인사 5인으로 구성됨
- 외식업 전문가는 32인의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고, 전화 및 이메일 접촉을 통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총 11인의 전문가를 확보. 전문가는 교수 4인, 관련 협회 인사 6인, 수출기업 인사 1인으로 구성됨

표 41 정책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AHP 전문가 명단

분야	ID	지위	소속				
	1	교수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2	부장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통상지원팀				
 농기계	3	본부장	대동공업㈜ 해외사업본부				
증기계	4	부장	동양물산기업㈜ 해외영업부				
	5	상무	㈜아세아텍 해외영업				
	6	대표	㈜그린맥스				
	1	교수	경기대학교				
	2	상무	아워홈				
	3	부회장	(사)한국음식업중앙회				
	4	교수	한국관광대학				
	5	부회장	(사)프랜차이즈협회				
외식업	6	국장	(사)한국음식업중앙회				
	7	교수	경희대학교				
	8	위원장	(사)프랜차이즈협회				
	9	부회장	(사)한국외식산업협회				
	10	부장	(사)한국음식업중앙회				
	11	교수	백석대학교				

2) FGI 개요

- FGI(Focus Group Interview)란 직접설문법의 일종으로써 적절한 사용자를 선발해서 그룹을 형성하고 주제에 따라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
- 즉 FGI는 관련 전문가를 그룹으로 모은 후 중재자(moderator)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
- FGI는 일종의 그룹 활동으로 여러 사람들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과 새로운 아이디어 를 도출하는 조사방법

2. 조사 결과 분석

1) 농기계 분야

O AHP 설문조사 결과

- 첫째, 농기계 분야 수출 전문가들은 대분류에서는 수출인프라 지원정책 > 해외시장 개척지원 정책 > 수출금융지원정책 > 무역정보제공지원정책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남
- 둘째, 수출인프라지원정책 분야에서는 수출전용 맞춤형 R&D >
 물류인프라 개선 > 수출 선도조직 지원정책의 순위를 보임
- 셋째, 해외시장 개척지원 정책 분야는 해외전시회에 대한 지원 >
 상품홍보지 제작 >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넷째, 수출금융지원정책은 무역금융 > 수출보험 > 수출신용보험의 순으로 나타남
- 다섯째, 무역정보제공지원 분야 중에서는 해외시장 조사지원 >무역정보 시스템 지원 > 무역실무교육지원으로 나타남

표 42 농기계 분야 AHP 조사결과

대분류			중분류			최종	
내용	가중치	순 위	내용	가중치	순위	가중치	순위
			(1) 해외전시회지원	0.713	1	0.240	2
해외 시장개척	0.337	2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0.130	3	0.044	8
지원정책			(3) 해외상품 홍보지제작/배포	0.158	2	0.053	6
므여	무역 정보제공 0.070 지원정책	0.070 4	(1) 해외시장조사 지원	0.772	1	0.054	5
정보제공			(2) 무역정보시스템 지원 0.158		2	0.011	11
시원성잭			(3) 무역실무교육 지원	0.070	3	0.005	12
수출		0.402 1	(1) 수출선도조직 선도·육성	0.168	2	0.068	4
인프라	0.402		(2) 수출 물류 인프라 지원	0.114	3	0.046	7
지원정책			(3) 수출전용 상품개발 R&D 지원	0.718	1	0.289	1
			(1) 무역금융 지원	0.658	1	0.126	3
수출금융 지원정책	0.191	3	(2) 수출신용보증 지원	0.162	3	0.031	10
			(3) 수출보험 지원	0.180	2	0.034	9

O AHP 결과해석

-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R&D 지원, 해외 전시회 지원, 무역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수출인프라 지원정책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수출인프라 지원정책은 중요도가 크게 나뉘고 있음. 즉 수출전용 상품개발
 R&D 지원 부분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수출선도

조직 육성 정책이나 수출 물류 인프라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농기계 분야에서 다른 무엇보다 R&D 지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무역정보제공 지원정책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협회를 중심으로 한 농기계 수출입 기업들이 수출입현 황이나 수출입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옴으로 인해 필 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여짐
- 셋째, 수출금융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지만 무역금융 지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 번째의 값을 나타내어 여전히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넷째,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 또한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전문가들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홍보지 배부 등의 지원 보다는 해외전시회지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2) 외식업 분야

O AHP 조사결과

- 첫째, 외식 산업 분야 수출 전문가들은 대분류에서는 수출인프라 지원정책 > 무역정보제공 지원정책 > 수출금융 지원정책 > 해외 시장 개척지원 정책 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답변함
- 둘째, 수출인프라 지원 정책의 경우 수출물류 인프라 개선 및 지원 > 수출전용 맞춤형 상품개발 R&D 지원 > 수출선도 조직 육성으로 답변함

표 43 외식업 분야 AHP 조사결과

대분류			중분류			최종							
내용	가중치	순 위	내용	가중치	순위	가중치	순위						
			(1) 해외전시회지원	0.466	1	0.098	6						
해외 시장개척	0.211	4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0.405	2	0.085	7						
지원정책			(3) 해외상품 홍보지제작/배포	0.130	3	0.027	12						
무역			(1) 해외시장조사 지원	0.382	1	0.100	4						
정보제공		63 2	(2) 무역정보시스템 지원	0.378	2	0.099	5						
지원정책			(3) 무역실무교육 지원	0.240	3	0.063	10						
			(1) 수출선도조직 선도·육성	0.231	3	0.064	9						
수출 인프라	0.278	0.278	0.278	0.278	0.278	0.278	0.278	0.278 1	(2) 수출 물류 인프라 지원	0.389	1	0.108	2
지원정책					(3) 수출전용 상품개발 R&D 지원	0.380	2	0.106	3				
			(1) 무역금융 지원	0.557	1	0.138	1						
수출금융 지원정책	0.247	0.247 3	(2) 수출신용보증 지원	0.265	2	0.065	8						
			(3) 수출보험 지원	0.178	3	0.044	11						

- 셋째, 무역정보제공지원정책에서는 해외시장 조사지원 > 무역정보 시스템 지원 > 무역 실무교육 지원 의 순서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있음
- 넷째, 수출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역금융 > 수출신용보증 >수출 보험 의 순서로 정책 중요도를 선정함
- 다섯째, 해외시장 개척지원 정책 분야에서는 해외 전시회 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해외시장 홍보지 제작/배포 의 순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선정함

 여섯째, 외식산업 분야의 최종 가중치를 반영한 우선 정책을 보면 무역금융 > 수출물류 인프라 개선 > 수출전용 맞춤형 R&D 지원 을 우선적인 수출 지원 사항이라고 선정하고 있음

O AHP 결과해석

- 첫째, 대분류 차원에서는 수출인프라 지원정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출인프라인프라 지원정책 중에서는 수출선도조직 육성 정책에 비해 수출 물류인프라 지원이나, 수출전용 상품개발 R&D 지원의 중요도를 높게평가
- 둘째, 대분류 차원에서는 수출금융지원정책이 세 번째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금융 지원 정책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임. 외식업 분야의 경우 무역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반해 수출신용보증의 지원이나 수출보험 지원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셋째, 무역정보제공 지원정책은 두 번째로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무역실무교육보다는 해외시장조사나 정보시스템 지원이 중요함. 특히 해외시장조사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다른 정보 지원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해외시 장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넷째,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지원정책의 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전시회 지원제도나 해외시장개척단 파 견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임

3) 비료 분야

- O 수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 국내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수익 감소는 장기적인 비료산업 투자를 위축시킴
 - 비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
- O 수출 지원 우선 정책
 - 국내 기업의 경영 다각화 지원
 - 경영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 경영다각화는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력구조의 개편, 새로운 경영시스템의 도입 을 전제로 추진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영여건이 기업의 수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음
 - 주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 비료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광석, 염화 칼륨 등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의 자원무기화 경향이 점점 더 심 해지고 있음
 - 따라서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국내 비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가격안정화에 필수적임
 -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자원확보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새로운 기술개발 지원
 - 화학비료에 대한 감축정책보다는 비료 사용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지원정책 강화하는 것이 중요
 - 화학비료에 대한 감축정책으로 인해 시장 경쟁에서 탈락되는 업체가 속출할 경우 공장의 폐쇄는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안정적인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정부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4) 동물의약품 분야

O 수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이 부족
- 2010년도 국내 동물용의약품 생산액 4,670억 원 18%에 해당하는7,400만\$를 수출함 (2011년 축산물 수출금액 5,400만\$ 보다 2,000 만\$ 더 많은 수출 금액을 기록)
- 2005년 이후 8회에 걸쳐 해외 축산전시회 한국관 단체 참가 등을 통한 해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림수산식품부의 홍 보 지원이 부족하고,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수출 주력품목 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부족
- 기타, 개별 기업의 힘으로는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넘기 어렵고, 제조업체의 시설 노후로 인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평가절하되는 문제 발생

O 수출 지원 우선 정책

- 법령 및 통계의 정비
 -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효과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
- 대외홍보 및 시장개척
 - 농림수산식품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축산전시회 에 한국과 단체 참가를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의 국내 초청 강화 필요
- 진입장벽 완화

- 정부는 수출 가능 국가별로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각종 비관세 장
 벽의 해결 필요
- 수출 상대국의 동물약품 시장현황, 관리제도 및 등록절차, 소요 기간, 비용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확산하는 역할이 필요
-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업체의 노후한 GMP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여 한국 제품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제3절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1.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입 통계 구축
 - O 기본적인 농식품 연관산업 통계의 부재와 수출지원의 한계
 -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지원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1) 농식품 연관산업의 범주 정립, 2) 연관산업에 대한 기초 자료, 즉, 수출입 규모 및 증감, 주요 수출입 국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관세청이나 한국은행의 수출통계의 경우 농산물 분야는 세부 분류코드를 통해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농식품부의 경우 aT 센터의 AG code를 통해 농산물과식품에 대한 자세한 수출입 자료들과 통계를 구성하고 있음
 - 하지만, 농식품 연관산업의 경우 기존의 수출입 통계로는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농식품부의 해당 부서의 경우에는 농기계 등과 같은 몇몇
 품목에 대해 해당 협회의 자료 지원을 통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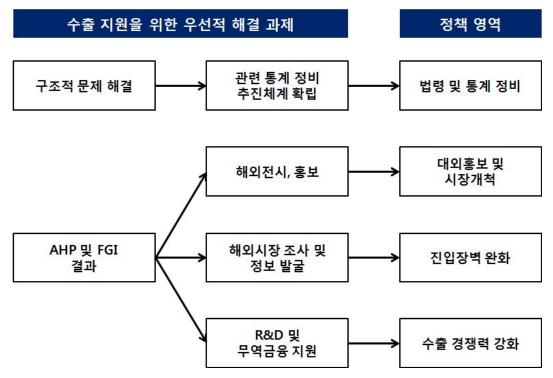


그림 11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활성화 정책맵(map)

-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입 통계 작성: (가칭) AG code 2
 -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입 통계 작성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재 HS코 드에서 확인 가능한 연관산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HS코드에서 확인 가능한 농식품 연관산업은 종자, 농식품 기계 분야의 75개 세부품목임
 - AG코드2를 작성함에 있어 농식품 기계 분야, 종자 분야는 확인
 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코드 작성할 필요
 - 이외의 분야는 기존 AG코드와 HS코드 등의 분류체계를 참조 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표 44 HS코드에서 확인 가능한 농식품 연관산업 품목 체계

군별		소년	분류	세분류 이하						
코드	품목	코드	품목	코드	품목					
			파종용 의	1209100000	사탕무 종자					
				1209210000	루우산(알팔파) 종자					
	채유용		_ ㅋ 종자	1209220000	클로버종자					
12	종자	1209	과실	1209230000	페스큐종자					
	인삼		및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종자					
			l .	1209250000	라이그래스 종자					
			_ 포자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400	농업 • 원	예 또는 임업용의	의 기계와 잔디 또는 운동장					
		8432	용의 롤리	러(15개 세부품목)						
			수확기 또는 탈곡기,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2							
		8433	타농산물의 세정 • 분류 또는 선별기(15개 세부품목)							
		8434	착유기외	와 낙농기계(6개 세부품목)						
	보일러 기계류							포도주•	사과숙•과즙 뚜-	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
		8435	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5개							
		보일러 기계류		세부품목						
84									715101	<u>'</u> 노어 의제 이어
	× ×1	8436	' ' '		・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 와 양육기(9개 세부품목)					
					채두류의 세정 • 분류 또는					
		8437	선별기,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기계(6개 세부품목)							
		0.400	식품 또	는 음료의 조제 5	E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10					
		8438	개 세부품목)							
		8478	담배의 3	조제 또는 제조기(2개 세부품목)					

- 농식품부에서 지원 가능한 수출입 부문, 즉, 농식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품목에 대해 체계적인 수출입 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연관 산업의 범위에 따른 세부품목의 분류 및 해당 산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주요 수출입 국가에 대한 현황 조사를 포함하게 될 것임
- 이를 위해 농식품 연관 산업 분야 수출입 관련 협회와의 협조,
 현재 수출되고 있지만 파악되지 않은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전국적 인 조사/통계가 필요할 것임

O 수출입 통계 구축 전략

- 단기적으로 첫째, HS코드, AG코드 등을 참조하여 연관산업의 범주에 따른 세부 분류 확정 및 AG code 2에 대한 통계 플랫폼 작성, 둘째, 연관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수출 기업 조사 및 수출입 현황 파악, 셋째, 수출입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협회, 학회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54) 협회 등이 회원사들의 수출입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
- 장기적으로 이러한 연관산업 코드를 통해 기존의 관세청 및 한국 은행 등의 수출입 코드 및 산업통계 분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해당 수출입 통계 관련 기관과의 정책 협의와 농식품 연관산업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 부처와의 적극 적인 정책 협조를 주도함

표 45 [AG code 2]를 위한 필요 통계 자료 구축 방안

- 1. 통계분류 코드 작성(HS코드, AG코드 참조)
- 2. 월간/분기별/연도별 연관산업 분야 "국제"수출입 동향
- 3. 월간/분기별/연도별 국내 연관산업("품목별")의 수출입 동향
- 4. 월간/ 분기별/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 5. 월간/ 분기별/ 연도별 "대륙/경제권별" 수출입
- 6. 수출상품 정보
- 7. 수입상품 정보
- 8. 추가적으로 통계자료 이외의 무역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수집

⁵⁴⁾ 예를 들어, 농기계 분야에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업기계학회는 공동으로 '농업기계연감'을 매년 발간하며, 이는 농기계 수출입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2.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 O 추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
 - 농식품 연관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은 대부분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기계의 경우 장래적으로 수출이 유망하지만, 농기계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농기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수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농기계 수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려할 수 있음
- O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도 체계적인 역할 조정이 부족한 실정
 -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진흥의 경우 담당 부서의 수출지원 예산이 없어 수출진흥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상황
 - 많은 산업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 부처의 중복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효과적인 수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외식산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명확히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외 식산업진흥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함
 - 동물약품의 경우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수출 주력품목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이 연간 1회 정도로 제한적임. 뿐만 아니라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수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이 열악한 상황임. 동물약품에 대해 「약사법」은 농림부령으로 관리를 위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물약품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정책 대상으로 적극 포함되지 못했음
- O 따라서, 수출 지원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거나,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 설계를 고려할 수 있음

3. 대외 홍보 지원의 강화

- O 한국 농식품 연관산업에 대한 대외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 상품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 해외 박람회 참여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함
 -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의 회사 개요와 특징, 서비스, 현지 파트너 자격조건 등을 현지 국가의 대상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잠재적인 파트너 기업을 선정하여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O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신흥시장 개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류, 개발원조사업
 (ODA)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음

4. 진입장벽 완화

- 농식품 연관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시, 관세, 타국의 국내 시장 상황, 인적 네트워크, 유통망, 법·제도, 언어, 문화 등 다양한 진입 장벽에 부딪힐 수 있음
- O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진입장벽은 산업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이를 위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 나라별 상권 및 트랜드, 식당 창업 관련 인·허가 사항, 종사자 구인에 필요한 법적인 내용 등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

- 수출 국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 민간기업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교역 대상 국가·지역의 정보를 수집·분석
 - 국가별 상권, 트렌드, 수출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기회 제공
- O 국가 차원에서 양자간 통상교섭 활동 추진
- O 민간 상호 간 정보 교류 활성화 지원
 - 민간 상호간의 해외 시장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 해외 진출시 수집한 정보를 정부나 다른 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
 하여 공유

5. R&D 지원 등 기업의 수출 능력 강화

- O 개별 품목이 수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활동 지원, 수출 금융 지원이 시급함
 - 수출 전략형,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R&D 자금 지원의 경우, 농기계는 1위, 외식업은 3위를 차지. 수출금융 지원은 농기 계는 3위, 외식업은 1위를 차지. 정책수요가 두 분야 모두에서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
- O 외식산업의 경우 다양한 글로벌 메뉴 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 식재 료의 가공 기술과 물류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국내 농산물 등 관련 산업의 수출 증대에 시너지 효과 기대

표 46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7 H	수출 활	성화 방안		
구 분	정부	민간		
법령 및 통계 정비	- 수출 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체계 형성 -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과 추진 체계(전담 조직, 수출촉진 기구 등) 마련	- 다양한 기업·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자료를 종합하여 DB 구축		
대외홍 보 및 시장개 척	- 적극적인시장개척을직·간접적으로추진하고필요자금을지원 - 국내 기업의 해외 홍보(박람회등) 및 해외 바이어의 국내 초청 활동을 지원 - 수출상품과문화원조활동을결합하여수출의시너지효과극대화	- 개별 기업 혹은 협의체를 구성하 여 적극적인 홍보 및 시장개척활 동 추진		
진입장 벽 완화	- 민간기업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교역 대상 국가지역의 정보를 수집·분석 - 국가별 상권, 트랜드, 수출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기회 제공 - 국가 차원에서 양자간 통상교섭활동을 추진	 민간 상호간의 해외 시장 및 정 책에 대한 정보 교류 해외 진출시 수집한 정보를 정부 나 다른 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 하여 공유 		
수출능 력 강화	- 수출에 필요한 R&D 지원 - 산·학·연·관협력체계구성 - 수출기업의시설·설비자금지원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수출관련 전문인력 양성 수출 대상 국가에 적합한 상품개발 시설·설비의 현대화 및 투자 강화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 O 농식품 연관산업은 농식품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의미함
 - 농식품 후방 산업은 농식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투입재 산업
 - 농식품 전방 산업은 농식품을 투입하여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 산업을 의미함
- O 농식품 후방산업의 영향력, 농식품 전방산업의 민감도를 측정하여 상위 10개 부문을 제시함
- O 농식품 연관산업은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농기계, 비료, 사료, 동물의약품, 시설농자재, 외식업, 천연화장품, 천연비누치약 등의 수 출이 급증하고 있음
- O 그러나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미흡함
 - 농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지원 정책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수출 선도조직 육성, 해외무역정보 인프라 구축, 수출전문인력 양성, 수 출유망품목 육성,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지원, 공동브랜드(휘모 리)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거래알선, 해외판촉행사 개최, 홍보마케팅, 수출 유망 품목 육성, 수출협의회 활성화,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 국내외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수준. 연관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라기보다는 농식품 지원의 일부로 이루어지거나, 계획만 존재하기도 함. 수출입 통계 정보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해당국 시장에 대한 정보, 해당국의 법제도 관련정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O AHP, FGI, 개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활성

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법령 및 통계 정비가 필요함. 수출 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형성해야 함.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과 추진 체계 (전담 조직, 수출촉진기구 등)를 마련해야 함
- 정부가 대외홍보 및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야 함. 적극적인 시장개 책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 국내 기업의 해외 홍보(박람회 등) 및 해외 바이어의 국내 초청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수출 상품과 문화·원조활동을 결합하여 수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시켜야 할 것
-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 민간기업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교역 대상 국가·지역의 정보를 수집· 분석. 국가별 상권, 트렌드, 수출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기회 제공. 국가 차원에서 양자간 통상교섭 활동을 추진
- 수출기업의 수출능력 강화가 필요함. 농식품 연관산업에 대한 R&D지원, 수출금융 지원이 중요함. 농기계, 외식업 AHP 분석에서 두 영역에 대한 정책 수요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이뿐 아니라,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함.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상호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또한 수출기업의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제2절 연구의 한계

- O 농식품 연관산업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문제가 됨
 - 농업관련산업, 농업연관산업, 농산업, 농식품산업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
 - 다양한 개념들은 농식품 연관산업의 대략적인 개념 정의에 도움을 주지만 개념들 간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외식산업은 식품산업에 포함시켜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 농식품 전방산업으로서의 연관산업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념의 혼란은 분석의 어려움을 가져옴
- O 적절한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통계 정보 확보의 어려움
 - 기존 수출통계로는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음
 - 관련 협회 등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일부 있으나, 그것의 수집방법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확성에 의문이 있음
 - 더욱이 협회 등이 다양한 수출입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
- O 농식품 연관산업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 농식품 전문가는 많지만, 농식품 연관산업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음. 더욱이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음
 - 농식품 연관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수출기업이 많지 않음. 발현 단계의 산업이 많이 존재함. 예를 들어 외식산업의 경우 그 가능성에 비해 이제 수출이 활성화되는 시작 단계여서 그 규모가 작음

참고문헌

- 강정일. (2003). 농업기계화사업의 전망과 정책과제. 농업생명과학연구, 37(4).
- 강창원. (2009).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유통과학 연구, 7(4).
- 고길곤, 하혜영. (2008). 정책학 연구에서의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17(1).
- 고용기, 배정한. (2008).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 개선 방안. 통상정 보연구, 10(2).
- 권오복, 김창용, 이응연. (2009). 시설농자재 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권오복, 김정호, 정호근, 이웅연. (2009). 농식품 R&D 전망과 과제.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권오상. (2005). 화학비료 수요의 변화요인 분석. 농촌경제, 28(1).
- 김경필. (2011).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조직 동향. KREI세계농업.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김병조 외. (2007). 식품산업육성 정책방향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종훈, 정진웅, 권기현, 강주선. (2008). 농식품 물류관리를 위한 UHF 대역의 게이트형 RFID 시스템 개발. 바이오시스템공학, 33(3).
- 김철민, 이명기, 한호석. (2008).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준. (2010). 사료업계의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KIS Credit Monitor. 2010년 11월 8일.
- 김성훈, 이계임, 김윤식, 장도환. (2007). FTA 협상에 따른 가공식품 및 식품 모시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09).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

차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2010a). 식품관련 기계·기구류 체계 정비 및 수출 전략 연구. (주)한국식품정보원.
- 농림수산식품부. (2010b).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중국, 일본.
- 박민선. (2008). 세계농식품체계와 식품안전. ECO, 12(2).
-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2000). 농업관련산업의 통계지표 개발.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2010). 생명산업의 현황 및 전망. 동향리 포트, 2010-0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인식. (2005). 농업관련산업론.
- 이계임, 김민정. (2005).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의영, 신범철. (2010).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 한국기업경영학회, 17(4).
- 이종상. (2008). 농업관련산업의 농업관련 취업자수 추계. 농업교육과 인적 자원개발, 40(2).
- 유찬희. (2009). EU의 친환경 농식품 현황과 미래연구 전망. 세계농업 200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안동환. (2010).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27(4).
- 장종익, 황수철. (2010). 밸류체인적 접근을 통한 농식품산업분석의 의의와 방법: 건고추 관련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식품유통연구, 27(1).
- 전혜경. (2009).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및 한식세계화 연구개발 동향. 식품 산업과 영양, 14(1).
- 정해옥. (2006). 한식의 브랜드화 방안. 국학연구, 8.
- 정호철, 문광덕, 정신교. (2010). 중국 농식품 가공 산업의 현황과 발전. 식 품과학과 산업, 43(2).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조성제. (2009).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전망과 과제. 한국무역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조성제, 박현희. (2010). 농식품 수출을 위한 B2B AgroTrade 활성화 방안. e-비지니스연구, 1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2009). 복합비료의 시장 기술 보고서.

통계청. (2006).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관순. (2009). 저성장 시대의 농식품 포장 물류 혁신 방안. 포장계 19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업기계학회. (2010). 농업기계연감.

한국농기계산업진흥회. (2002). 농기계산업의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미국 농정의 주요이슈 및 정책결정 주체. 연구자료 D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a). 농업전망 2009: 한국 농업농촌 도전과 새로 운 희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b). 시설원예산업의 재도약 방안: 생산수출 중 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우리나라 외식산업 현황.

한국식품연구원. (2010). 2009 식품산업동향. 2010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2006). 산업연관표 2005.

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표 2006.

한국은행. (2008). 산업연관표 2007.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2008.

한국은행. (2010). 산업연관표 2009.

황만길. (2009).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식품 연계 방안. 지역과 농업, 5호.

황수철, 이명헌, 송주창. (2009). 식품산업의 국내 농어업 성장유발효과 분석. 농정연구센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민신문. www.nongmin.com 농수축산신문. www.aflnews.co.kr 농어민신문. www.agrinet.co.kr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뉴스1 news1.kr 매일경제 news.mk.co.kr 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월간식당. month.foodbank.co.kr 이데일리. www.edaily.c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부록1. 각종 통계 자료

표 47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농식품 후방연관산업 부문

통합누	부문(대분류)	통합부	부문(중분류)	통합누	부문(소분류)	7	기본부문
		01	농산물	005	비식용작	016	종자 및 묘목
01	농림수산 ≖	01	· 중인결	003	물	017	기타 비식용작물
	품	03	임산물	800	임산물	024	원목
		05	농림어업 서비스	011	농림어업 서비스	029	농림어업서 비스
02	과사프	08	비금속광	018	기타 비금속광	042	요업원료광 물
02	광산품	00	물	016	물	044	기타 비금속광물
03	음식료품	14	사료	033	사료	083	사료
			섬유사 및 직물	035	섬유사	090	재봉사 및 기타
		16					섬유사
			72	036	섬유직물	096	기타섬유직 물
				038	편직제의 복 및 장신품	100	편직제장신 품
					직물제의	101	직물제의류
04	섬유 및 가죽제품	17	의복 및 섬유제품	039	복 및 장신품	102	기타장신품
						105	직물제품
				041	기타	106	기타섬유제 품
					섬유제품	107	끈,로프및어 망
		18	가죽제품	043	가방 및 핸드백	110	가방및핸드 백
		10	기수에품	044	신발	111 112	가죽신발 운동화및기

							타신발
				0.45	기타	440	기타가죽제
				045	가죽제품	113	품
						114	제재목
				0.46	목재	115	합판
				046	국제	116	재생및강화
		19	목재 및			110	목재
		19	목제품			117	건축용목제
				047	목제 품	117	품
				047	「一つへ」占	118	목제용기
05	목재 및					119	기타목제품
05	종이제품			048	펄프	120	펄프
				049	종이류	123	기타원지및
				040	0 4111	120	판지
		20	펄프 및			124	골판지및골
		20	종이제품			124	판지상자
				050	종이제품	125	종이용기
						128	기타종이제
						120	품
06	인쇄 및	21	인쇄 및	051	인쇄 및	129	인쇄
00	복제	복제	복제	031	복제	129	근케
		22	석탄제품	052	석탄제품	131	연탄
						134	휘발유
						136	등
				054	연료유	137	경유
07	석유 및					138	중유 액화석유가
	석탄제품	23	석유제품			139	
						1.40	스 이 하이 파
				055	기타	140	윤활유제품 기타석유정
				055	석유제품	141	
							제품 석유화학기
						142	
					시 ㅇ ᅴ ㅎ .		초제품
08 화학자				056	석유화학	143	석유화학중
	화학제품	24	기초화학		기초제품		간제품
00	지금에古		제품			145	기타기초유
							기화합물
				050	무기화학	146	산업용가스
				058	기초제품	147	기초무기화
				1			

							합물
		25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59	합성수지	148	합성수지
			비료 및		비료 및	152	질소화합물
		27		062		153	비료
			농약		농약	154	농약
			의약품 및	063	의약품	155	의약품
		28	화장품	064	화장품 및 비누	157	비누및세제
				065	염료 및	159	도료
				063	도료	160	잉크
						101	접착제및젤
		00	기타			161	라틴
		29	화학제품	066	기타	162	화약및불꽃
					화학제품		제품 기타화학제
						165	품
						166	플라스틱1 차제품
		30	플라스틱 제품	067	플라스틱 제품	167	산업용플라 스틱제품
						168	가정용플라 스틱제품
				068	타이어 및 튜브	169	타이어및튜 브
		31	고무제품	060	기타	170	산업용고무 제품
				069	고무제품	171	기타고무제 품
		32	유리제품	070	유리제품	173	산업용유리 제품
09	비금속광	32	ㅠ니세품 	070	ㅠ니세품	174	기타유리제 품
09	물제품	33	도자기 및 점토제품	071	도자기	175	산업용도자 기
		35	기타 비금속광	075	기타 비금속광	182	석회및석고 제품

						404	석면및암면
			물제품		물제품	184	제품
						185	연마제
		36	선철 및 조강	076	선철 및 합금철	188	선철
						191	철근및봉강
				078	열간압연	192	형강
				070	강재	195	강관(주철강
		37	철강				관제외)
		37	1차제품	080	주단강품	197	주철물
					기타		기타철강1
				081	철강1차	200	차제품
10	제1차				제품		시세품
10	금속제품					202	알루미늄괴
					비철금속	203	연 및
				082		203	아연괴
			비철금속		괴	205	기타
		38				203	비철금속괴
			괴 및	083		206	동1차제품
			1차제품		비철금속	207	알루미늄1
						207	차제품
					1차제품	208	기타비철금
						200	속1차제품
						209	건물용금속
				084	건설용	209	제품
				004	금속제품	210	구조물용
						210	금속제품
					그소ᅰ		설치용금속
				085	금속제	211	탱크및저장
					용기		용기
11	금속제품	39	 금속제품				금속포장용
''						212	기
					공구 및	213	공구류
				086		214	나사제품
					철선제품	215	철선제품
				087		216	부착용금속
					기타		제품
					금속제품	217	금속처리
						218	가정용금속

							제품
							기타금속제
						219	품
					내연기관		내연기관
				088	및 터빈	220	및 터빈
					일반목적	221	밸브
				089	용기계부	200	베어링,기어
					품	222	및전동요소
				000	산업용	000	산업용운반
				090	운반기계	223	기계
	40						공기조절장
			일반목적			224	치및냉장냉
		40	용 기계	091	공조 및		동장비
			및 장비	091	냉온장비	225	보일러
						226	난방및조리
						220	기기
						227	펌프및압축
				092	기타 일반목적	221	기
						228	공기및액체
12	일반기계				용 기계		여과청정기
					등 기계	229	기타일반목
						220	적용기계
				093		230	금속절삭가
					금속가공		공기계
					용기계	231	금속성형처
							리기계
				004	농업 및	232	농업용기계
			 특수목적	094	건설기계	233	건설및광물
		41	용 기계				처리기계 음식품가공
		41				234	
			및 장비			235	기계 섬유기계
					기타	236	금형및주형
				095	특수목적		제지및인쇄
					용기계	237	용기계
					0,1,11		기타특수목
						239	적용기계
13	전기 및	42	전기기계	096	발전기,	240	발전기및전

					전동기 및		동기
						241	변압기
					전기변환	0.40	기타전기변
					장치	242	환장치
						040	전기공급및
						243	제어장치
			및 장치			044	전선및케이
					기타	244	블
				097	전기장치	245	전지
					선거정시	246	전구램프및
						240	조명장치
						247	기타
							전기장치
				099	반도체	250	개별소자
			전자기기		기타	254	인쇄회로기
		43	부분품	100	전자부분		판
				100	품	255	기타전자부
					В		품
	전자기기		영상,	4 04	영상 및	257	음향기기 기타영상·음
				101	음향기기	258	
							향기기 유선통신기
				영상,			259
		44	음향 및		통신 및		기 무선통신단
			통신기기	102		260	말기
				102	방송기기		무선통신시
						261	스템 및
						201	
					컴퓨터 및		방송장비 컴퓨터및주
			 컴퓨터및	103	주변기기	262	변기기
		45	사무기기		사무용기		[원기기
			^[〒/]/] 	104		263	사무용기기
					기		가정용냉장
						264	기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가정용 기정용		가정용		가정용세탁
		46	전기기기	105	전기기기	265	기
					L'1/1/1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266	기기
							/ /

							기타가정용
						267	전기기기
						268	의료기기
					의료 및	000	자동조정및
				106		269	제어기기
					측정기기	070	측정및분석
,,	TI []]]	47	T1013131			270	기기
14	정밀기기	47	정밀기기			074	촬영기및영
				4.07	고나하기기	271	사기
				107	광학기기		기타광학기
						272	기
				108	시계	273	시계
					자동차엔		715-144
		48	자동차?	110	진 및	279	자동차부분
					부분품		품
							선박수리및
15	15 수송장비	수송장비 49	선박	112	선박	283	부분품
				114	항공기	285	항공기
		50	기타 수송장비			286	모터싸이클
				115	기타	007	자전거및기
					수송장비	287	타운수장비
						288	목재가구
		51	가구	116	가구	289	금속가구
						290	기타가구
						291	장난감및오
	기타제조			117	장난감 및		락용품
16	-		기타	'''	운동용품	292	운동및경기
	업제품	52	│ '' │ 제조업제			232	용품
		52			기타	296	모형및장식
			품	118	제조업제	290	용품
				110		297	기타제조업
					품	297	제품
						298	수력
전력,가스	53	 전력	119	전력	299	화력	
	저려 가스	00		110	L 7	300	원자력
17				1.00		301	기타발전
	및수도		도시가스 도시가스	120	도시가스	302	도시가스
		54	및 수도	121	증기 및	303	증기 및
			ㅈ ㅣㅗ		온수공급		온수공급업

					업		
				122	수도	304	수도
18	건설	55	건축건설	125	건축보수	307	건축보수
						321	도매
19	도소매	57	도소매	129	도소매	322	소매
				132	철도운송	327	철도여객운 송
				132	을 <u>고</u> 正 등	328	철도화물운 송
		59	육상운송	133	도로운송	329	도로여객운 송
				133	工生亡	330	도로화물운 송
				134	택배	331	택배
		60	수상 및	135	수상운송	332	연안및내륙 수상운송
0.4	운수 및		항공운송	136	항공운송	334	항공운송
21	보관	61	운수관련			335	육상운수보 조서비스
				137	운수보조 서비스	336	수상운수보 조서비스
						337	항공운수보 조서비스
		01	서비스	138	하역	338	하역
				139	보관 및 창고	339	보관및창고
				140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340	기타운수관 련서비스
				4 4 4	우편 및	341	우편
				141	전화	342	전화
22	통신 및	62	통신		부가통신 및	343	초고속망서 비스
	방송			142	, ^첫 정보서비	344	부가통신
					성포시미 스 스	345	정보서비스
23	금융 및 보험	64	금융 및 보험	144	금융	348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
							급기관
							비은행예금
						349	취급기관
							기타금융중
						350	개기관
				145	보험	352	비생명보험
				140	금융 및	002	금융 및
				146	보험관련	353	보험관련서
				140	 서비스	000	보급한 단대 비스
					시미크		부동산임대
						355	및 공급
		65	부동산	147	부동산		부동산관련
						356	서비스
							연구기관(국
						357	공립)
							연구기관(비
				148	연구기관	358	영리)
		66	연구기관				연구기관(산
						359	업)
					기업내		기업내연구
				149	연구개발	360	개발
							법무및회계
	부동산 및				사업관련	361	서비스
24	사업서비			150	전문서비		시장조사
	<u></u>				스	362	및
					_		경영컨설팅
			사업관련	151	광고	363	광고
		67	전문서비		건축 및		키디고하다
			스	152	공학관련	365	기타공학관
			_		서비스		련서비스
					컴퓨터관		소프트웨어
				153	련서비스	366	개발공급
						0.5-	컴퓨터관련
						367	서비스
			기타니어		기티니어	0.00	기계장비및
		68	기타사업	154	기타사업	368	용품임대
			서비스		서비스	369	청소및소독

							서비스
							인력공급
						370	및 알선
						074	기타
						371	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 및 국방	69	공공행정 및 국방	155	공공행정 및 국방	372	중앙정부
		70	교육서비 스	156	교육서비 스	376	교육기관(산 업)
						377	의료및보건(국공립)
	교육 및	71	의료 및 보건	157	의료 및 보건	378	의료및보건(비영리)
26	26 보건					379	의료및보건(
			위생서비		-1	382	위생서비스(
		73		159	위생서비		국공립) 위생서비스(
					스	383	사업)
			출판 및		충교다미	384	신문
		74	문화서비 스	160	출판서비 스	385	출판
	사회 및	76	사회단체	163	사회단체	393	산업및전문 단체
27	기타서비 스				수리서비	395	자동차수리 서비스
		77	기타서비	164	스	396	기타개인수
			스		الماليا		리서비스
				165	개인서비 스	397	세탁
				166	사무용품	401	사무용품
28	기타	78	기타	167	가계외소	402	가계외소비
				168	비지출 분류불명	403	지출 분류불명
	1	l	I.				0

표 48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농식품 전방연관산업 부문

통합부	·문(대분류)	통합부	-문(중분류)	통합부	부문(소분류)	기	본부문
						012	섬유작물
					비식용작	014	화훼작물
01	농림수산	01	농산물	005		016	종자 및 묘목
01	품				물	017	기타
						017	비식용작물
		03	임산물	008	임산물	023	영림
03	음식료품	14	사료	033	사료	083	사료
						085	모사
				035	섬유사	007	견사 및
			섬유사			087	마사
		16	및 직물	036	섬유직물	092	면직물
			X 12		섬유표백		섬유표백및
04	섬유 및			037	및 염색	098	염색
	가죽제품		의복 및		기타		шп
		17	│	041		105	직물제품
			검파제품		섬유제품 가죽 및		
		10	ᄀᆝᄌᆌᄑ	0.40		108	가죽
		18	가죽제품	042	모피	1.00	
						109	모피
		19	목재 및 목	047	목제품	118 119	목제용기 기타목제품
			제품			121	신문용지
					122	인쇄용지	
				049	종이류		기타원지및판
	목재 및 종					123	٦J
05	이제품		펄프 및 종			104	골판지및골판
		20	이제품			124	지상자
				050	종이제품	125	종이용기
				030	9 N M B		
						128	기타종이제품
	석유 및				기타	140	윤활유제품
07		23	석유제품	055	기의 석유제품	141	기타석유정
	석탄제품				식규제품 	141	제품
						140	석유화학중
				0.50	석유화학	143	간제품
0.0		0.4	기초화학	056	기초제품		기타기초유
08 화학제품	와약세품	24	기소와약 제품		'- ""	145	기화합물
		세품					
				058	무기화학	147	기초무기화
	1	1	1		l	l	

					기초제품		합물
			합성수지	059	합성수지	148	합성수지
		25	및 합성고무	060	합성고무	149	합성고무
		27	비료 및 농약	062	비료 및 농약	153	비료
				000	OLOF #	154	농약
			의약품	063	의약품	155	의약품 화장품및치
		28	및 화장품	064	화장품 및 비누	156	약
			자연도		-11	157	비누및세제
				065	염료 및	158	염료,안료및 유연제
				003	도료	159	도료
						160	잉크
		00	기타			161	접착제및젤
		29	화학제품			101	라틴
				066	기타 화학제품	162	화약및불꽃
						102	제품
						165	기타화학제
						103	품
		30	플라스틱	067	플라스틱	167	산업용플라
		30	제품	007	제품	107	스틱제품
09	비금속광 물제품	33	도자기 및 점토제품	071	도자기	176	가정용도자 기
10	제1차 금속제품	38	비철금속 괴 및 1차제품	083	비철금속1 차제품	206	동1차제품
		51	가구	116	가구	288	목재가구
						290	기타가구
	기타제조			117	장난감 및 운동용품	292	운동및경기 용품
16			기타			294	문방구
	업제품 5	52	제조업제		기타	295	귀금속및보
			품	118	제조업제		석
					 품	296	모형및장식
						290	용품

						297	기타제조업		
						231	제품		
17	전력,가스 및수도	54	도시가스 및 수도	122	수도	304	수도		
19	도소매	57	도소매	129	도소매	321	도매		
	"			120		322	소매		
	LTINO		ONITA		0.11-1	323	일반음식점		
20	음식점	58	음식점	130	음식점	324	주점		
	및 숙박		및 숙박	101	숙박	325	기타음식점 숙박		
				131	독막	326	국막 연구기관(국		
						357			
	부동산						공립)		
				148	연구기관	358	연구기관(비		
24	및	66	연구기관				영리)		
	사업서비					359	연구기관(산		
	스						업)		
				149	기업내	360	기업내연구		
				149	연구개발	300	개발		
0.5	공공행정	00	공공행정	455	공공행정	372	중앙정부		
25	및 국방	69	및 국방	155	및 국방	373	지방정부		
								074	교육기관(국
			교육서비		4.50	교육서비	374	공립)	
		70 <u></u>	<u> </u>	스	156	스	_	교육기관(비	
			_	_		375	영리)		
	교육 및						의료및보건(
26	보건					377	국공립)		
			의료 및 의료 및			의료및보건(
		71	보건	157	보건	378	비영리)		
			ㅗ끈				의료및보건(
						379	산업)		
			출판 및				(선립)		
	사회 및	7.4		101	문화서비	007	문화서비스(
0.7		74	문화서비	161		387	기타)		
27	기타서비		스						
	스	75	오락서비	162	오락서비	392	기타오락서		
			스	. 02	스	002	비스		
				167	가계외소	402	가계외소비		
28	기타	기타 78	기타	107	비지출	402	지출		
				168	분류불명	403	분류불명		

표 49 2005년 후방연관산업 영향력 계수(상위 10개 부문)

부문명칭	농산물	부문명칭	축산물
	<u> </u>		2
농산물	1.016396	사료	0.394585
비료 및 농약	0.086662	도소매	0.110866
석유제품	0.051396	농산물	0.048287
농림어업서비스	0.028579	육상운송	0.03973
도소매	0.028492	금융 및 보험	0.037733
금융 및 보험	0.026117	의약품 및 화장품	0.036787
플라스틱제품	0.024101	석유제품	0.029063
기타	0.019598	기타	0.028633
기초화학제품	0.018796	전력	0.021684
펄프 및 종이제품	0.013897	통신	0.017404
	임산물		수산물
	3		4
임산물	1.055159	석유제품	0.14376
농림어업서비스	0.055604	기타	0.065139
금융 및 보험	0.028042	도소매	0.058846
비료 및 농약	0.027728	목재 및 목제품	0.04741
기타	0.023364	금융 및 보험	0.046522
석유제품	0.021766	플라스틱제품	0.036237
도소매	0.020534	의복 및 섬유제품	0.033347
전력	0.015837	운수관련서비스	0.03126
통신	0.008891	사업관련	0.022732
		전문서비스	
사업관련	0.008702	기타사업서비스	0.022057
전문서비스	0.000702	71971BN91	0.022007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10		11
도소매	0.131272	농산물	0.842545
석유제품	0.090458	비료 및 농약	0.071851
기타	0.048058	석유제품	0.048421
플라스틱제품	0.047002	금융 및 보험	0.036777
금융 및 보험	0.046584	육상운송	0.024112
육상운송	0.046322	농림어업서비스	0.023695
운수관련서비스	0.036636	플라스틱제품	0.0225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25266	기타	0.020896
부동산	0.021501	펄프 및 종이제품	0.019561

목재 및 목제품	0.02147	기초화학제품	0.016676
	기타식료품		음료품
	12		13
- AI -	0.440570	사업관련	0.074400
농산물	0.142576	전문서비스	0.071169
도소매	0.104069	도소매	0.065271
플라스틱제품	0.054112	금속제품	0.064258
석유제품	0.047968	플라스틱제품	0.048942
육상운송	0.047495	육상운송	0.03716
사업관련	0.000707	O크I케포	0.000007
전문서비스	0.039787	유리제품	0.033907
금융 및 보험	0.036559	석유제품	0.030559
펄프 및 종이제품	0.034805	기타	0.027916
기타	0.027029	농산물	0.024386
기초화학제품	0.02362	금융 및 보험	0.02345
	담배		
	15		
농산물	0.035706		
펄프 및 종이제품	0.021118		
인쇄 및 복제	0.016643		
기타 제조업제품	0.014986		
도소매	0.012779		
사업관련	0.000005		
전문서비스	0.009695		
기타	0.009198		
육상운송	0.008425		
석유제품	0.00822		
기타사업서비스	0.007696		

표 50 2005년 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부문(중분류)	합계	수출합계
금속제품	1032380	5585801
금융 및 보험	1359360	2520979
기초화학제품	164925	10698448
기타	1185728	1563453
기타 제조업제품	103489	1196367
기타사업서비스	408597	2978710
농림어업서비스	975145	332
농산물	163717	14951
도소매	4283777	10664454
목재 및 목제품	292691	69739
부동산	281461	249753
비금속광물	-3876	45898
비료 및 농약	2165903	461935
사료	487351	2039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629641	2235018
석유제품	1831165	13074897
운수관련서비스	681664	697788
유리제품	442782	635160
육상운송	1619419	579002
의복 및 섬유제품	380350	4856709
의약품 및 화장품	242794	825697
인쇄 및 복제	204737	211540
임산물	33401	222
자동차	110345	7831413
전력	607871	56920
통신	241171	790511
펄프 및 종이제품	1226608	597158
플라스틱제품	2162617	3664803

표 51 2005년 전방연관산업 감응도 계수(상위 10개 부문)

부문명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	1.016396	음식점 및 숙박	0.060287	임산물	1.055159
음식점 및 숙박	0.085721	기타	0.04666	목재 및 목제품	0.021086
기타	0.079982	농산물	0.005574	음식점 및 숙박	0.004034
사료	0.036866	사료	0.005506	기타	0.003658
의약품 및 화장품	0.016867	오락서비스	0.005337	농산물	0.003528
의료 및 보건	0.011366	연구기관	0.005051	가구	0.002202
연구기관	0.008534	의약품 및 화장품	0.004821	의약품 및 화장품	0.001585
공공행정 및 국방	0.006777	공공행정 및 국방	0.003801	사료	0.000885
오락서비스	0.006193	기타 화학제품	0.002973	기타 제조업제품	0.000878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457	의료 및 보건	0.00282	기타 화학제품	0.000481
	수산물		비금속광물		육류 및 낙농품
음식점 및 숙박	0.021785	비료 및 농약	0.005069	음식점 및 숙박	0.090392
기타	0.019802	기타 화학제품	0.002827	기타	0.068348
연구기관	0.002226	펄프 및 종이제품	0.002619	오락서비스	0.008268
사료	0.001916	기초화학제 품	0.002115	사료	0.008114
기타 제조업제품	0.001774	기타 제조업제품	0.001752	연구기관	0.007294
공공행정 및 국방	0.001605	가구	0.001635	공공행정 및 국방	0.005545
오락서비스	0.001413	기타	0.001298	기타 화학제품	0.004662

	1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115	의약품 및 화장품	0.001213	의약품 및 화장품	0.004332
의약품 및 화장품	0.001089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01205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3992
교육서비스	0.001028	플라스틱제 품	0.000878	교육서비스	0.003543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	0.016135	음식점 및 숙박	0.052611	기타	0.062951
기타	0.013068	기타	0.041933	음식점 및 숙박	0.060649
사료	0.00301	사료	0.026849	사료	0.038937
연구기관	0.001464	연구기관	0.004387	의약품 및 화장품	0.020731
공공행정 및 국방	0.001059	공공행정 및 국방	0.00341	연구기관	0.007274
오락서비스	0.000878	의약품 및 화장품	0.003039	의료 및 보건	0.006155
의약품 및 화장품	0.000838	오락서비스	0.002878	비료 및 농약	0.006103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0757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2365	기타 화학제품	0.005689
교육서비스	0.000676	교육서비스	0.002171	공공행정 및 국방	0.005451
도소매	0.000599	기타 화학제품	0.002028	오락서비스	0.005096
	음료품		담배		
음식점 및 숙박	0.070149	기타	0.007863		
기타	0.062104	연구기관	0.000821		
연구기관	0.00698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635		
공공행정 및 국방	0.005023	오락서비스	0.000522		

오락서비스	0.004124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0434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3429	교육서비스	0.000407	
교육서비스	0.003213	도소매	0.00036	
도소매	0.002859	의약품 및 화장품	0.000346	
의약품 및 화장품	0.002812	의복 및 섬유제품	0.000327	
의복 및 섬유제품	0.002586	의료 및 보건	0.000303	

표 52 2005년 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부문(중분류)	합계	수출
가구	5833	348551
공공행정 및 국방	25786	3758
교육서비스	1655	29595
기초화학제품	132504	7399485
기타	5108173	1563453
기타 제조업제품	14439	1489217
기타 화학제품	119403	2235732
농산물	3363	63728
도소매	1810	10664454
목재 및 목제품	1890	19739
비료 및 농약	21031	400399
사료	2199095	2039
연구기관	35174	1434934
오락서비스	76240	413632
음식점 및 숙박	20287452	2735786
의료 및 보건	275430	41209
의복 및 섬유제품	106	665891
의약품 및 화장품	661396	1326555
임산물	316	0
출판 및 문화서비스	2873	24341
펄프 및 종이제품	52125	1915811
플라스틱제품	3132	138531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405	11453842

표 53 2006년 후방연관산업 영향력 계수(상위 10개 부문)

부문명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1		2		3
농산물	1.017466	사료	0.42037	임산물	1.0447
비료 및 농약	0.079788	도소매	0.108659	농림어업서 비스	0.054378
석유제품	0.051749	농산물	0.066236	금융 및 보험	0.027329
도소매	0.033536	육상운송	0.047233	기타	0.025105
농림어업서 비스	0.028573	금융 및 보험	0.04103	비료 및 농약	0.024974
금융 및 보험	0.026351	의약품 및 화장품	0.038815	석유제품	0.020548
플라스틱제 품	0.026341	기타	0.033428	도소매	0.019644
기타	0.020934	석유제품	0.032569	전력	0.016011
기초화학제 품	0.018405	전력	0.023094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1015
펄프 및 종이제품	0.015041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21829	통신	0.010023
	수산물		비금속광물		육류 및 낙농품
	4		8		9
석유제품	0.141573	비금속광물	1.000237	사료	0.249628
기타	0.065791	석유제품	0.124965	도소매	0.140425
도소매	0.053548	육상운송	0.108897	육상운송	0.054026
금융 및 보험	0.046753	기타	0.054655	농산물	0.046949
목재 및 목제품	0.044332	자동차	0.047467	금융 및 보험	0.042387
의복 및 섬유제품	0.039501	금융 및 보험	0.033687	펄프 및 종이제품	0.039027
플라스틱제 품	0.039072	전력	0.028457	석유제품	0.036794
운수관련서 비스	0.031879	운수관련서 비스	0.028221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33935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25395	도소매	0.023033	기타	0.032653

기타사업서		기타사업서		플라스틱제	
비스	0.022216	기다사합시 비스	0.018981	글다스릭제 품	0.030885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10		11		12
도소매	0.132276	농산물	0.826031	농산물	0.141447
석유제품	0.086626	비료 및 농약	0.064791	도소매	0.09625
기타	0.047592	석유제품	0.048492	플라스틱제 품	0.057073
플라스틱제 품	0.045853	금융 및 보험	0.037365	육상운송	0.04596
금융 및 보험	0.044985	도소매	0.035008	석유제품	0.045862
육상운송	0.041376	아 아 아	0.025125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42938
운수관련서 비스	0.034484	농림어업서 비스	0.023202	금융 및 보험	0.036633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27037	플라스틱제 품	0.023187	펄프 및 종이제품	0.034849
부동산	0.020899	기타	0.022836	기타	0.027494
목재 및 목제품	0.020362	펄프 및 종이제품	0.020736	기초화학제 품	0.025004
	음료품		담배		
	13		15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74462	농산물	0.026643		
금속제품	0.063352	인쇄 및 복제	0.023764		
도소매	0.062852	펄프 및 종이제품	0.021552		
플라스틱제 품	0.049362	기타 제조업제품	0.021221		
육상운송	0.035389	도소매	0.016314		
유리제품	0.030795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1569		
석유제품	0.028908	기타	0.013351		

기타	0.027612	육상운송	0.011797	
농산물	0.026416	기타사업서 비스	0.011671	
금융 및 보험	0.023299	석유제품	0.00999	

표 54 2006년 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부문(중분류)	합계	수출
금속제품	1019249	7079718
금융 및 보험	1320452	4506840
기초화학제품	166874	12373487
기타	1217651	764542
기타 제조업제품	157823	1053535
기타사업서비스	434025	3797957
농림어업서비스	969346	2965
농산물	104867	232
도소매	4447530	10453883
목재 및 목제품	304196	48812
부동산	290212	289908
비금속광물	-5588	48364
비료 및 농약	1985718	457038
사료	4750765	1303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713149	1871312
석유제품	1875154	15642119
운수관련서비스	680296	706663
유리제품	410300	546890
육상운송	1533809	423113
의복 및 섬유제품	398486	4334742
의약품 및 화장품	222575	807030
인쇄 및 복제	249962	199508
임산물	34480	217
자동차	121329	9012424
전력	606946	57242
통신	275912	778629
펄프 및 종이제품	1208694	434579
플라스틱제 품	2269415	3607621

표 55 2006년 전방연관산업 감응도 계수(상위 10개 부문)

부문명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	1.017466	음식점 및 숙박	0.06264	임산물	1.0447
음식점 및 숙박	0.094253	기타	0.045602	목재 및 목제품	0.022901
기타	0.079879	사료	0.007473	음식점 및 숙박	0.004697
사료	0.04488	농산물	0.006822	기타	0.003971
의약품 및 화장품	0.016256	연구기관	0.005452	농산물	0.003512
의료 및 보건	0.011636	오락서비스	0.005091	가구	0.002388
연구기관	0.009348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4904	의약품 및 화장품	0.001642
공공행정 및 국방	0.007042	의약품 및 화장품	0.004803	사료	0.001172
오락서비스	0.006243	공공행정 및 국방	0.003876	기타 제조업제품	0.000932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4741	의료 및 보건	0.003002	기타 화학제품	0.000508
	수산물		비금속광물		육류 및 낙농품
음식점 및 숙박	0.027689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56499	음식점 및 숙박	0.092653
기타	0.022955	비료 및 농약	0.006285	기타	0.065962
사료	0.003624	기타 화학제품	0.003009	사료	0.011057
연구기관	0.00284	펄프 및 종이제품	0.002344	오락서비스	0.00784
기타 제조업제품	0.002157	기초화학제 품	0.002045	연구기관	0.007789
공공행정 및 국방	0.00194	기타 제조업제품	0.001544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7707
오락서비스	0.001607	가구	0.001495	공공행정	0.005579

				및 국방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1393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01202	기타 화학제품	0.004385
의약품 및 화장품	0.001316	기타	0.001151	의약품 및 화장품	0.004365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1197	의약품 및 화장품	0.001103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4003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	0.020304	음식점 및 숙박	0.053732	음식점 및 숙박	0.068793
기타	0.015198	기타	0.040039	기타	0.066811
사료	0.00628	사료	0.029723	사료	0.04884
연구기관	0.001881	연구기관	0.004611	의약품 및 화장품	0.019834
공공행정 및 국방	0.001284	공공행정 및 국방	0.003394	연구기관	0.008319
의약품 및 화장품	0.001028	의약품 및 화장품	0.002852	의료 및 보건	0.006496
오락서비스	0.001002	오락서비스	0.002693	비료 및 농약	0.006322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0911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2336	기타 화학제품	0.006097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0799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2142	공공행정 및 국방	0.006031
교육서비스	0.000782	교육서비스	0.002061	오락서비스	0.00552
	음료품		담배		
음식점 및 숙박	0.060891	기타	0.000667		
기타	0.051884	연구기관	0.000077		
연구기관	0.006403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56		
공공행정 및 국방	0.004374	오락서비스	0.000043		
오락서비스	0.003366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0038		

출판 및	0.00297	도자기 및	0.000035	
문화서비스	0.00297	점토제품	0.000033	
도자기 및	0.002692	교육서비스	0.000034	
점토제품	0.002092	교육시미드	0.000034	
교육서비스	0.002669	의복 및	0.00003	
교육시리 <u>스</u>	0.002009	섬유제품	0.00003	
의약품 및	0.000400	의약품 및	0.00003	
화장품	0.002429	화장품	0.00003	
도소매	0.002359	도소매	0.00003	

표 56 2006년 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부문(중분류)	합계	수출
가구	7097	406322
공공행정 및 국방	26500	11732
교육서비스	1933	33869
기초화학제품	128449	8227154
기타	4510223	764542
기타 제조업제품	18160	1282415
기타 화학제품	126755	2491881
농산물	3797	52776
도소매	1902	10453883
도자기 및 점토제품	8397	61746
목재 및 목제품	1970	19488
비료 및 농약	20780	412102
사료	2246028	1303
연구기관	38580	1467509
오락서비스	83115	287733
음식점 및 숙박	22608599	2113301
의료 및 보건	323700	22959
의복 및 섬유제품	97	503346
의약품 및 화장품	676834	1304519
임산물	455	0
출판 및 문화서비스	3481	29995
펄프 및 종이제품	60175	1788860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371	11660066

표 57 2007년 후방연관산업 영향력 계수(상위 10개 부문)

부문명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1		2		3
농산물	1.016475	사료	0.505363	임산물	1.02606
비료 및 농약	0.093537	도소매	0.114117	농림어업서 비스	0.059991
석유제품	0.046825	농산물	0.047765	비료 및 농약	0.030934
도소매	0.033077	육상운송	0.046352	금융 및 보험	0.025476
농림어업서 비스	0.029367	금융 및 보험	0.035377	기타	0.023738
금융 및 보험	0.023226	의약품 및 화장품	0.031248	석유제품	0.021474
플라스틱제 품	0.021295	석유제품	0.02961	도소매	0.020813
기초화학제 품	0.018119	기타	0.025082	전력	0.012985
기타	0.016505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19492	통신	0.010205
펄프 및 종이제품	0.011592	전력	0.0181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09714
	수산물		비금속광물		육류 및 낙농품
	4		8		9
석유제품	0.14979	비금속광물	1.000234	사료	0.293969
기타	0.060721	석유제품	0.130068	도소매	0.143763
도소매	0.056463	육상운송	0.10351	육상운송	0.052072
금융 및 보험	0.050667	기타	0.049522	금융 및 보험	0.04105
의복 및 섬유제품	0.048902	자동차	0.046469	펄프 및 종이제품	0.038076
목재 및	0.040701	금융 및 보험	0.03608	석유제품	0.035593
플라스틱제 품	0.04032	운수관련서 비스	0.02897	농산물	0.035076

운수관련서	0.03226	전력	0.028549	사업관련	0.032124
<u>비스</u> 사업관련		기타		전문서비스 플라스틱제	
전문서비스	0.02545	기다 화학제품	0.024315	글다스틱제 품	0.029533
선박	0.024349	도소매	0.022918	기타	0.026928
			되고 미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10		11		12
도소매	0.13468	농산물	0.845374	농산물	0.139254
석유제품	0.091218	비료 및 농약	0.077802	도소매	0.097812
금융 및 보험	0.049192	석유제품	0.042976	플라스틱제 품	0.058999
플라스틱제 품	0.046403	도소매	0.034176	석유제품	0.046807
기타	0.044588	금융 및 보험	0.030145	육상운송	0.044472
육상운송	0.039238	농림어업서 비스	0.024427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41862
운수관련서 비스	0.03569	플라스틱제 품	0.018738	금융 및 보험	0.038521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27373	육상운송	0.018309	펄프 및 종이제품	0.03452
의복 및 섬유제품	0.024309	기타	0.017118	기초화학제 품	0.026125
통신	0.020421	기초화학제 품	0.015536	기타	0.025466
	음료품		담배		
	13		15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70182	농산물	0.025354		
도소매	0.06483	펄프 및 종이제품	0.019806		
금속제품	0.062126	인쇄 및 복제	0.019124		
플라스틱제 품	0.052896	기타 제조업제품	0.018134		

유리제품	0.035697	도소매	0.015033	
0 1 L O A	0.004700	사업관련	0.010407	
육상운송	0.034792	전문서비스	0.013407	
석유제품	0.030268	기타	0.010699	
농산물	0.026526	육상운송	0.009693	
기타	0.025619	기타사업서	0.009606	
7 1 -1	0.020010	비스	0.000000	
금융 및	0.005107	금융 및	0.000000	
보험	0.025127	보험	0.009229	

표 58 2007년 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부문(중분류)	합계	수출
금속제품	1089695	8249255
금융 및 보험	1236378	6634301
기초화학제품	188750	14522271
기타	1030866	552338
기타 제조업제품	135903	1039364
기타 화학제품	274868	2204243
기타사업서비스	412756	6016609
농림어업서비스	936385	5487
농산물	150884	16015
도소매	4718467	11707785
목재 및 목제품	292758	52499
비금속광물	-6193	51284
비료 및 농약	2308062	501712
사료	5775701	7359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703052	2575886
석유제품	1826295	17001220
선박	152975	103513
운수관련서비스	682875	771979
유리제품	483340	645783
육상운송	1440624	394305
의복 및 섬유제품	445287	4164160
의약품 및 화장품	156642	1003748
인쇄 및 복제	214914	188562
임산물	32501	284
자동차?	112753	10678710
전력	527256	58023
통신	239938	695686
펄프 및 종이제품	1163384	504143
플라스틱제품	2330637	3926569

표 59 2007년 전방연관산업 감응도 계수(상위 10개 부문)

부문명칭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	1.016475	음식점 및 숙박	0.059184	임산물	1.02606
음식점 및 숙박	0.086246	기타	0.04171	목재 및 목제품	0.020162
기타	0.069169	사료	0.007195	음식점 및 숙박	0.004194
사료	0.041247	농산물	0.005512	기타	0.003275
의약품 및 화장품	0.018139	연구기관	0.005045	농산물	0.00248
의료 및 보건	0.013796	오락서비스	0.004484	가구	0.002075
연구기관	0.008187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4397	의약품 및 화장품	0.00137
공공행정 및 국방	0.006058	의약품 및 화장품	0.004174	사료	0.001053
오락서비스	0.005181	공공행정 및 국방	0.003486	기타 제조업제품	0.000761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387	의료 및 보건	0.002687	석탄제품	0.000715
	수산물		비금속광물		육류 및 낙농품
음식점 및 숙박	0.02912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5649	음식점 및 숙박	0.09263
기타	0.021813	비료 및 농약	0.006363	기타	0.06249
사료	0.003327	기타 화학제품	0.002595	사료	0.011221
연구기관	0.002738	펄프 및 종이제품	0.001954	연구기관	0.007448
기타 제조업제품	0.002014	기초화학제 품	0.001706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7193
공공행정 및 국방	0.001812	가구	0.001373	오락서비스	0.007171
오락서비스	0.001431	기타	0.001324	공공행정	0.005195

		제조업제품		및 국방	
		의약품 및		의약품 및	
문화서비스	0.001252	화장품	0.001066	화장품	0.003921
의약품 및 화장품	0.001197	기타	0.001027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3557
교육서비스	0.001074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0101	기타 화학제품	0.00354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	0.023055	음식점 및 숙박	0.050222	음식점 및 숙박	0.076174
기타	0.016062	기타	0.03487	기타	0.067292
사료	0.00574	사료	0.024827	사료	0.05361
연구기관	0.002009	연구기관	0.004035	의약품 및 화장품	0.020929
공공행정 및 국방	0.001334	공공행정 및 국방	0.002905	연구기관	0.008582
의약품 및 화장품	0.001065	의약품 및 화장품	0.00238	비료 및 농약	0.008086
오락서비스	0.000984	오락서비스	0.002191	의료 및 보건	0.00681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091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1898	기타 화학제품	0.006189
교육서비스	0.000787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1731	공공행정 및 국방	0.005982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0784	교육서비스	0.001708	오락서비스	0.005458
	음료품		담배		
음식점 및 숙박	0.059678	기타	0.000636		
기타	0.047639	연구기관	0.000074		
연구기관	0.00597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53		
공공행정 및 국방	0.003947	오락서비스	0.000038		

오락서비스	0.002853	출판 및	0.000034	
	0.002000	문화서비스	0.000001	
출판 및	0.002543	도자기 및	0.000031	
문화서비스	0.002343	점토제품	0.000031	
교육서비스	0.002332	교육서비스	0.000031	
도자기 및	0.002292	의복 및	0.000028	
점토제품	0.002292	섬유제품	0.000028	
도소매	0.00214	도소매	0.000028	
의복 및	0.00209	의료 및	0.000027	
섬유제품	0.00209	보건	0.000027	

표 60 2007년 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부문(중분류)	합계	수출
가구	6980	420189
공공행정 및 국방	28177	4172
교육서비스	2225	41011
기초화학제품	149581	9247018
기타	3492289	552338
기타 제조업제품	18197	1197753
기타 화학제품	122253	2750010
농산물	2915	71118
도소매	2411	11707785
도자기 및 점토제품	8284	63462
목재 및 목제품	1964	17456
비료 및 농약	31340	458876
사료	3014238	7359
석탄제품	1917	2269272
연구기관	50759	1260560
오락서비스	94482	490184
음식점 및 숙박	24053324	2278910
의료 및 보건	494057	28670
의복 및 섬유제품	101	472372
의약품 및 화장품	792475	1529929
임산물	483	0
출판 및 문화서비스	4054	28356
펄프 및 종이제품	58295	1805012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383	13394798

표 61 2008년 후방연관산업 영향력 계수(상위 10개 부문)

부문명칭	001		002		003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	1.015471	사료	0.606975	임산물	1.027819
비료 및 농약	0.101263	도소매	0.110941	농림어업서 비스	0.067337
석유제품	0.049619	농산물	0.050060	비료 및 농약	0.030505
도소매	0.032950	육상운송	0.047820	기타	0.027387
농림어업서 비스	0.031123	금융 및 보험	0.033315	금융 및 보험	0.025789
금융 및 보험	0.023559	석유제품	0.031939	석유제품	0.024909
플라스틱제 품	0.022587	의약품 및 화장품	0.030255	도소매	0.020825
기타	0.018491	기타	0.026469	전력	0.014125
기초화학제 품	0.018303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18606	통신	0.010905
펄프 및 종이제품	0.013910	전력	0.017906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09727
	004		008		009
	수산물		비금속광물		육류 및 낙농품
석유제품	0.158038	비금속광물	1.000255	사료	0.367133
기타	0.065481	석유제품	0.125976	도소매	0.141243
도소매		육상운송		육상운송	

	0.054412		0.106555		0.052396
금융 및		기타		펄프 및	
보험	0.048073	714	0.058954	종이제품	0.040196
목재 및		자동차		금융 및	
목제품	0.043120		0.043261	보험	0.038871
의복 및		금융 및		석유제품	
섬유제품	0.042226	보험	0.036620	111 "	0.037877
플라스틱제 품	0.038042	전력	0.030675	농산물	0.036720
운수관련서 비스	0.036126	운수관련서 비스	0.025066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30044
선박	0.023063	기타 화학제품	0.023203	플라스틱제 품	0.028371
사업관련		도소매		기타	
전문서비스	0.022852		0.023097	- 1 1	0.028193
	010		011		012
	010		 정곡 및		012
	수산가공품		제분		기타식료품
도소매	0.128739	농산물	0.823058	농산물	0.131554
석유제품	0.094750	비료 및 농약	0.082084	도소매	0.087469
기타	0.046421	석유제품	0.044202	플라스틱제 품	0.056225
금융 및 보험	0.046338	도소매	0.033065	석유제품	0.048306
플라스틱제 품	0.045017	금융 및 보험	0.029262	육상운송	0.041616
운수관련서	0.039004	농림어업서 비스	0.025229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39057
비스				펄프 및	

	0.038574	플라스틱제 품	0.019027	종이제품	0.036711
사업관련		71-1		금융 및	
전문서비스	0.024987	기타	0.018351	보험	0.035305
H = 11					
펄프 및		육상운송		기초화학제	
종이제품	0.021862		0.017904	품	0.026833
		펄프 및			
기초화학제	0.001005	_	0.04.505.4	기타	0.005040
품	0.021365	종이제품	0.015854		0.025210
	013		015		
	음료품		담배		
사업관련		펄프 및			
전문서비스	0.065888	종이제품	0.020950		
 금속제품		농산물			
ㅁᆨᄱ꿈	0.059597	- - - 건	0.019039		
도소매		인쇄 및			
그그메	0.058209	복제	0.017427		
		기타			
플라스틱제	0.050074	기의 제조업제품	0.014930		
품	0.050371	제소입제품	0.014930		
육상운송		도소매			
4070	0.032836		0.013508		
│ 석유제품		사업관련			
ㅋㅠ세곱	0.031355	전문서비스	0.011847		
 유리제품		기타			
HUMB	0.029969	719	0.010745		
기타	0.005000	기타사업서	0.000000		
	0.025388	비스	0.009233		
철강		٥٨١٥٨			
1차제품	0.023064	육상운송	0.009218		
금융 및		석유제품			
보험	0.022719	·····································	0.009102		

표 62 2008년 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중분류(78부문)	합계	수출
금속제품	1,159,351	11,107,463
금융 및 보험	1,319,709	7,445,640
기초화학제품	211,968	18,801,647
기타	1,192,379	509,936
기타 제조업제품	123,986	1,472,136
기타 화학제품	329,801	3,016,265
기타사업서비스	520,013	5,615,615
농림어업서비스	1,120,406	753
농산물	150,068	105,249
도소매	4,973,492	12,455,668
목재 및 목제품	336,758	72,567
비금속광물	-758	149,930
비료 및 농약	2,895,456	993,970
사료	7,986,107	17,741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935,800	5,134,353
석유제품	2,075,182	32,374,990
선박	163,508	75,348
운수관련서비스	783,069	634,614
유리제품	500,893	637,863
육상운송	1,548,203	523,618
의복 및 섬유제품	467,590	5,678,416
의약품 및 화장품	168,644	1,429,629
인쇄 및 복제	220,944	228,248
임산물	34,166	551
자동차	111,262	14,440,735
전력	567,878	62916
철강 1차제품	55,642	7,642,694
통신	249,069	940,624
펄프 및 종이제품	1,374,944	607,315
플라스틱제품	2,561,741	4,907,513

표 63 2008년 전방연관산업 감응도 계수(상위 10개 부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	. 045474	음식점 및	0.004440	임산물	4 007040
음식점 및	1.015471	숙박	0.064118	목재 및	1.027819
	0.000440	기타	0.044500		0.040700
숙박	0.083119		0.044583	목제품 음식점 및	0.019700
기타	0.066182	사료	0.006558	음식점 및 숙박	0.003797
사료	0.040676	농산물	0.005821	기타	0.002824
의약품 및 화장품	0.015566	연구기관	0.005536	가구	0.002192
의료 및 보건	0.012161	오락서비스	0.005040	농산물	0.002060
04 7 7 1 71		도자기 및		의약품 및	
연구기관	0.008119	점토제품	0.004552	화장품	0.001117
공공행정		의약품 및		u =	
및 국방	0.005682	화장품	0.004182	사료	0.000979
		공공행정		기타	
오락서비스	0.005372	및 국방	0.003650	제조업제품	0.000561
출판 및		의료 및		연구기관	
문화서비스	0.003659	보건	0.002759	연구기선	0.000361
	수산물				육류 및
	162		비금속광물		낙농품
음식점 및		도자기 및		음식점 및	
숙박	0.028287	점토제품	0.062497	숙박	0.095201
기타	0.020923	비료 및 농약	0.010326	기타	0.063633
사료	0.002939	기타 화학제품	0.003024	사료	0.009572
연구기관	0.002699	펄프 및 종이제품	0.002145	연구기관	0.007812
공공행정 및 국방	0.001705	기초화학제 품	0.001967	오락서비스	0.007675

기타		기타		도자기 및	
제조업제품	0.001704	제조업제품	0.001480	점토제품	0.007079
		가구		공공행정	
오락서비스	0.001473		0.001453	및 국방	0.005190
출판 및		합성수지		의약품 및	
문화서비스	0.001201	및	0.001258	화장품	0.003917
의약품 및		합성고무		출판 및	
화장품	0.001132	기타	0.001141	출신 호 문화서비스	0.003620
刊〇百	0.001132	의약품 및	0.001141	기타	0.003020
교육서비스	0.001102	화장품	0.001140	화학제품	0.003458
		, , , ,			
			정곡 및		
	수산가공품		제분		기타식료품
음식점 및		음식점 및		음식점 및	
숙박	0.020241	숙박	0.053881	숙박	0.074068
기타	0.013627	기타	0.037656	기타	0.062279
	0.0700=7		0.007000		313313
사료	0.005257	사료	0.028436	사료	0.057263
연구기관		연구기관		의약품 및	
	0.001754		0.004531	화장품	0.020100
공공행정		공공행정		 연구기관	
및 국방	0.001111	및 국방	0.003077		0.008185
0=1.1.1.1		의약품 및		비료 및	
오락서비스 의약품 및	0.000905	화장품	0.002618	농약 의료 및	0.007737
	0.00000	O 라니니 ^	0.000566	, , , , , ,	0.000400
화장품 출판 및	0.000890	오락서비스 출판 및	0.002566	보건 공공행정	0.006439
물년 중 문화서비스	0.000780	물년 중 문화서비스	0.002035	및 국방	0.005409
프 <u>ન</u> , 기리	0.000700	트뤼/기키―	0.002000	X 70	0.000400
교육서비스	0.000715	교육서비스	0.001976	오락서비스	0.005386
도자기 및		도자기 및		기타	
점토제품	0.000683	점토제품	0.001920	화학제품	0.005371
	0 = =		담배		
음식점 및	음료품		님매		
숙박	0.059862	기타	0.000566		

기타	0.047195	연구기관	0.000069	
		공공행정		
연구기관	0.006106	및 국방	0.000046	
공공행정				
및 국방	0.003838	오락서비스	0.000037	
		출판 및		
오락서비스	0.003060	문화서비스	0.000030	
출판 및				
문화서비스	0.002498	교육서비스	0.000030	
		도자기 및		
교육서비스	0.002475	점토제품	0.000028	
도자기 및				
점토제품	0.002329	도소매	0.000026	
		의복 및		
도소매	0.002188	섬유제품	0.000026	
의복 및		의료 및		
섬유제품	0.002142	보건	0.000025	

표 64 2008년 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중분류(78부문)	합계	수출
가구	5,376	458,946
공공행정 및 국방	24,929	6,055
교육서비스	1,984	65,966
기초화학제품	193,380	12,694,974
기타	3,767,163	509,936
기타 제조업제품	16,771	1,691,294
기타 화학제품	167,149	3,774,298
농산물	2729	105866
도소매	2,347	12,455,668
도자기 및 점토제품	8,813	105,321
목재 및 목제품	1282	29,787
비료 및 농약	48,863	941,920
사료	4,816,193	17,741
연구기관	52,653	2,240,573
오락서비스	103,110	718,246
음식점 및 숙박	27,451,481	4,481,662
의료 및 보건	465,291	39,959
의복 및 섬유제품	115	623,929
의약품 및 화장품	934,590	2,446,453
임산물	571	
출판 및 문화서비스	4,753	39,322
펄프 및 종이제품	64208	2,355,106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699	18,288,334

표 65 2009년 후방연관산업 영향력 계수(상위 10개 부문)

부문명칭	001		002		003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	1.014326	사료	0.584532	임산물	1.032235
비료 및 농약	0.120483	도소매	0.114186	농림어업서 비스	0.075313
석유제품	0.045538	농산물	0.053978	비료 및 농약	0.037416
도소매	0.036754	육상운송	0.048460	기타	0.028917
농림어업서 비스	0.033166	금융 및 보험	0.035059	금융 및 보험	0.027429
고 당 보 보 함	0.025628	의약품 및 화장품	0.030714	석유제품	0.024720
플라스틱제 품	0.023773	석유제품	0.029364	도소매	0.021299
기초화학제 품	0.023627	기타	0.026053	전력	0.014366
기타	0.018734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20219	통신	0.012028
펄프 및 종이제품	0.015555	전력	0.019054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11488
	004		008		009
	수산물		비금속광물		육류 및 낙농품
석유제품	0.110462	비금속광물	1.000232	사료	0.360141
기타	0.048554	석유제품	0.115970	도소매	0.139442
금융 및		육상운송		육상운송	

보험	0.046010		0.106948		0.053441
도소매	0.045338	기타	0.055148	펄프 및 종이제품	0.043630
목재 및 목제품	0.034631	자동차	0.033148	등이제품 금융 및 보험	0.043630
의복 및 섬유제품	0.032920	금융 및 보험	0.039422	농산물	0.039969
운수관련서 비스	0.030613	전력	0.030841	석유제품	0.034579
플라스틱제 품	0.030355	기타 화학제품	0.026236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31724
선박	0.019987	운수관련서 비스	0.025306	플라스틱제 품	0.029038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19210	도소매	0.024996	기타	0.027927
	010		011		012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도소매	0.116342	농산물	0.764828	농산물	0.132667
석유제품	0.072437	비료 및 농약	0.090858	도소매	0.093462
금융 및 보험	0.046615	도소매	0.051513	플라스틱제 품	0.057632
플라스틱제 품	0.041830	석유제품	0.038759	육상운송	0.043868
기타	0.038775	금융 및 보험	0.030995	석유제품	0.043196
육상운송	0.037603	농림어업서 비스	0.02501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42255
		육상운송		펄프 및	

운수관련서 비스	0.036003		0.019726	종이제품	0.039979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23915	플라스틱제 품	0.018908	금융 및 보험	0.037192
펄프 및 종이제품	0.022287	기타	0.018249	기초화학제 품	0.027452
기초화학제 품	0.018894	기초화학제 품	0.018221	기타	0.025190
	013		015		
	음료품		담배		
사업관련		펄프 및			
전문서비스	0.066342	종이제품	0.021121		
		인쇄 및			
금속제품	0.060799	복제	0.019216		
도소매	0.059542	농산물	0.014683		
플라스틱제 품	0.048132	도소매	0.014345		
		기타			
유리제품	0.036162	제조업제품	0.013444		
0.41.0.4		사업관련			
육상운송	0.033403	전문서비스	0.011452		
석유제품	0.027540	기타	0.010394		
기타	0.023906	육상운송	0.009526		
금융 및		금융 및			
보험	0.023737	보험	0.009149		
철강 1차제품	0.022716	기타사업서 비스	0.008184		

표 66 2009년 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중분류(78부문)	합계	총계
금속제품	1,307,412	15,841,491
금융 및 보험	1,411,307	5,765,086
기초화학제품	224,296	18,742,065
기타	1,119,263	272,951
기타 제조업제품	112,055	1,872,743
기타 화학제품	391,764	3,717,207
기타사업서비스	486,157	5,265,280
농림어업서비스	1,116,269	11,341
농산물	182,839	30,464
도소매	5,503,807	14,564,391
목재 및 목제품	319,818	81,729
비금속광물	-1,403	62,196
비료 및 농약	3,203,465	676,073
사료	8,945,539	20,155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2,113,643	5,191,515
석유제품	1,732,172	23,816,773
선박	187,502	65,863
운수관련서비스	805,633	458,831
유리제품	605,873	671,665
육상운송	1,696,538	597,474
의복 및 섬유제품	449,243	6,269,543
의약품 및 화장품	179,686	1,537,127
인쇄 및 복제	245,657	317,523
임산물	25,991	106
자동차	107,724	13,971,425
전력	639,241	67468
철강 1차제품	60,506	5,475,754
통신	248,627	1,141,483
펄프 및 종이제품	1,570,148	776,600
플라스틱제품	2,705,236	5,493,526

표 67 2009년 전방연관산업 감응도 계수(상위 10개 부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 AI -		음식점 및		목재 및	
농산물	1.014326	숙박	0.072667	목제품	0.029720
음식점 및		기타		음식점 및	
숙박	0.077809	714	0.050223	숙박	0.004007
기타	0.061472	사료	0.008714	기타	0.003049
사료	0.055805	가죽제품	0.007444	가구	0.002849
의약품 및		농산 물		농산 물	
화장품	0.015030	OCE	0.006473	OCE	0.001768
의료 및 보건	0.010358	연구기관	0.006426	사료	0.001444
연구기관				의약품 및	
연구기원	0.007785	오락서비스	0.005562	화장품	0.001160
		도자기 및		기타	
오락서비스	0.005065	점토제품	0.004735	제조업제품	0.000624
공공행정		의약품 및		 연구기관	
및 국방	0.004359	화장품	0.004331		0.000406
		공공행정		도자기 및	
교육서비스	0.003494	및 국방	0.003324	점토제품	0.000388
					0 7 11
	수산물				육류 및
음식점 및		도자기 및	비금속광물	음식점 및	낙농품
	0.00000		0.050077		0.107007
숙박	0.030699	점토제품 비료 및	0.052377	숙박	0.107937
기타	0.022091	시프 본 농약	0.008962	기타	0.071869
	0.022091	기타	0.006962		0.071669
사료	0.003463	화학제품	0.002010	사료	0.012218
연구기관	0.002955	펄프 및 종이제품	0.001699	가죽제품	0.011888
	0.002935	하기세품	0.001099		0.011008
기타 제조업제품	0.001874	기초화학제 품	0.001362	연구기관	0.009078

오락서비스	0.001561	가구	0.001315	오락서비스	0.008429
공공행정	0.001361	기타	0.001313	도작시미스 모	0.006429
	0.001450	i -	0.001001		0.007000
및 국방	0.001456	제조업제품	0.001231	점토제품 공공행정	0.007336
70.11.1	0.004000	농산물	0 004004		0.004700
교육서비스	0.001238		0.001084	및 국방	0.004739
출판 및		기타		의약품 및	
문화서비스	0.001223		0.001006	화장품	0.004200
의약품 및		의약품 및			
화장품	0.001163	화장품	0.000941	교육서비스	0.004016
			-1-7 -01		
			정곡 및		
	수산가공품		제분		기타식료품
음식점 및		음식점 및		 사료	
숙박	0.020962	숙박	0.050281		0.085468
기타		 사료		음식점 및	
710	0.013803	\\\\\\\\\\\\\\\\\\\\\\\\\\\\\\\\\\\\\\	0.040993	숙박	0.079252
N P		71=1		71=1	
사료	0.005946	기타	0.035527	기타	0.064576
04 7 71 71		04 7 7 1 71		의약품 및	
연구기관	0.001837	연구기관	0.004400	화장품	0.019223
				04 7 7 1 71	
오락서비스	0.000919	오락서비스	0.002463	연구기관	0.008799
공공행정		의약품 및		비료 및	
및 국방	0.000910	화장품	0.002462	농약	0.007830
의약품 및	0.000010	공공행정	01002102	의료 및	0.007.000
화장품	0.000868	및 국방	0.002345	. 보건	0.006467
708	0.000000	2 10	0.002010	<u> </u>	0.000107
교육서비스	0.000770	 교육서비스	0.001983	 오락서비스	0.005624
출판 및	0.000770	출판 및	0.001000	기타	0.000021
문화서비스	0.000762		0.001853	 화학제품	0.005056
의료 및	0.000702	의료 및	0.001000	공공행정	0.000000
기표 <u>두</u> 보건	0.000667	기표 보 보건	0.001700	및 국방	0.004400
포긴	0.00067	<u></u> 포인	0.001792	후 수당	0.004499
	음료품		 담배		
음식점 및			<u> </u>		
숙박	0.059193	기타	0.000485		
기타	0.009190	연구기관	0.000403		

	0.044251		0.000061	
연구기관		공공행정		
한구기선	0.005958	및 국방	0.000032	
공공행정				
및 국방	0.002910	오락서비스	0.000031	
오락서비스	0.002874	교육서비스	0.000027	
		출판 및		
교육서비스	0.002468	문화서비스	0.000024	
출판 및		도소매		
문화서비스	0.002238	ᆂᅩᄳ	0.000023	
도소매		도자기 및		
그그데	0.002108	점토제품	0.000022	
도자기 및		의료 및		
점토제품	0.002008	보건	0.000021	
의료 및		의복 및		
보건	0.001965	섬유제품	0.000021	

표 68 2009년 전방연관산업 총합과 수출(상위 10개 부문)

통합중분류(78부문)	합계	수출
가구	5,137	539,332
가죽제품	817,427	839,667
공공행정 및 국방	18,091	4,425
교육서비스	2,150	50,459
기초화학제품	199,127	13,093,198
기타	3,486,617	272,951
기타 제조업제품	17,854	1,960,018
기타 화학제품	175,617	3,999,188
농산물	2886	125183
도소매	2,569	14,564,391
도자기 및 점토제품	8,635	112,869
목재 및 목제품	1273	34,212
비료 및 농약	43,491	633,975
사료	5,024,448	20,155
연구기관	66,541	3,110,098
오락서비스	108,924	699,150
음식점 및 숙박	29,996,721	4,869,928
의료 및 보건	438,144	41,004
의복 및 섬유제품	109	686,848
의약품 및 화장품	978,437	3,159,843
출판 및 문화서비스	5,689	44,738
펄프 및 종이제품	70272	2,506,840

부록2. 분야별 AHP 설문지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유망 분야 선정 AHP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농식품 연관산업수출활성화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농식품과 전후방 효과를 가지는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유망한 수출 분야를 선정·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 수출지원 정책은 해당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시너지를 일으켜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관산업 분석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의 범위를 확정한 후, 여러 농식품 연관산업 분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수출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유망 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수출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문가 AHP 설문은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 수출유망 분야 선정을 위한 정성적 평가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조사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바쁘시더 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직장과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구성에 대한 고견은 언제 든지 연락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연구원: 엄 석 진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년 11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질문] 아래의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분야 중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의 해당 공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소분류								
	1. 농기계								
1. 농식품	2. 비료								
후방산업	3. 사료								
	4. 온실플랜트								
	5. (동물사육을 위한)의약품								
	6. 외식업								
2. 농식품	7. (천연재료를 이용한)의약품								
전방산업	8. 천연화장품								
	9. 천연비누·치약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 AHP는 정책대 안 간 쌍대비교를 통해 대안의 타당성과 중요도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쓰이는 분석기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정책대안을 설문함으로써 대안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농식품 연관산업**은 농식품 이외의, 농식품과 연관된 전방산업, 후방산업을 의미합니다. **농식품 전방산업**은 농식품을 투입재로 사용한 산업이며, **농식품 후방산업**은 농식품 생산을 위해 사용된 투입재 산업을 의미합니다.

	_																	1
A항목의 수출 유망도	A가 절대 많이 유망		A가 메우 많이 유망		A가 상당 히 유망		A가 약간 더 유망		비슷 하게 유망		B가 약간 더 유망		B가 상당 히 유망		B가 매우 많이 유망		B가 절대 많이 유망	B항목의 수출 유망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식품 후방산업																		농식품 전방산업
A항목의 수출 유망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수출 유망도
농기계																		사료
농기계																		온실플랜트
농기계																		(동물사육용) 의약품
농기계																		외식업
농기계																		(천연재료사용) 의약품
농기계																		천연화장품
농기계																		천연비누·치약
A항목의 수출 유망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수출 유망도
비료																		사료
비료																		온실플랜트
비료																		(동물사육용) 의약품
비료																		외식업
비료																		(천연재료사용) 의약품
비료																		천연화장품
비료																		천연비누·치약
A항목의 수출 유망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수출 유망도
사료																		온실플랜트
사료																		(동물사육용) 의약품
사료																		외식업
사료																		(천연재료사용) 의약품
사료																		천연화장품
사료																		천연비누·치약

A항목의 수출 유망도	A가 절 대 망 이 유 망	8	A가 매우 많이 유망	6	A가 상 당 히 유 망	4	A가 약 간 더 유 망	2	비슷하게유망 1	2	B가 약 간 더 유 망	4	B가 상 당 히 유 망	6	B가 맥 우 많 이 유 망	8	B가 절 대많 이유망 9	B항목의 수출 유망도
온실플랜트																		(동물사육용) 의약품
온실플랜트																		외식업
온실플랜트																		(천연재료사용) 의약품
온실플랜트																		천연화장품
온실플랜트																		천연비누·치약
A항목의 수출 유망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수출 유망도
(동물사육용) 의약품																		외식업
(동물사육용) 의약품																		(천연재료사용) 의약품
(동물사육용) 의약품																		천연화장품
(동물사육용) 의약품																		천연비누·치약
A항목의 수출 유망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수출 유망도
외식업																		(천연재료사용) 의약품
외식업																		천연화장품
외식업																		천연비누·치약
A항목의 수출 유망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수출 유망도
(천연재료사용) 의약품																		천연화장품
(천연재료사용) 의약품																		천연비누·치약
A항목의 수출 유망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수출 유망도
천연화장품																		천연비누·치약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3. 농기계 분야 정책별 AHP 설문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지원정책 AHP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농식품 연관산업수출활성화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농식품과 전후방 효과를 가지는 연관산업을 발굴하여 유망한 수출 분야를 선정·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 수출지원 정책은 해당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시너지를 일으켜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관산업 분석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의 범위를 확정한 후, 여러 농식품 연관산업 분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수출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유망 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수출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문가 AHP 설문은 **농기계 분야** 수출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정성적 평가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조사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직장과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구성에 대한 고견은 언제든지 연 락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연구원: 엄 석 진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년 11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지원정책 우선순위 설정>** 아래의 수출지원 정책 중 현재 농기계 분야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의 해당 공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소분류
1)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	(1) 해외전시회 지원: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여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수출 관련 종합 혹은 개별상담회 개최 (3) 해외상품홍보지 제작/배포: 기업 상품을 홍보책자화하여 해외전시회, 무역유관기관에 배포
2) 무역정보제공 지원정책	(1) 해외시장조사 지원: 개별 수출업체 의뢰로 공 공기관의 해외무역관이 현지 조사하여 제공 (2) 무역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무역정보 DataBase 구축, 인터넷 거래알선시스템 운 영 (3) 무역실무교육 지원: 상품 수출에 필수적인 실 무지식에 대한 교육
3) 수출인프라 지원정책	(1) 수출선도조직 선정·육성: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하는 농식품 수출조직 선정 및 육 성 (2) 수출 물류 인프라 지원: 물류비(선별비, 포장 비, 운송비 등) 부담이 큰 경우 물류비 지원 (3) 수출 전용 상품개발 R&D 지원: 수출을 위한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4) 수출금융 지원정책	(1) 무역금융 지원: 상품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2) 수출신용보증 지원: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연대보증 지원 (3) 수출보험 지원: 환율변동, 가격상승 등 수출여 건을 고려한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문의 도

A항목의 중요도	A 가절대많이중요 9	8	A 가 매 우 많 이 중요 7	6	A가상당허중요 5	4	A 가약간더중요 3	2	비슷하게중요 1	2	B 가약간더중요	4	B가상당허중요 5	6	B 가메우많이증요 7	8	B 가절대많이증요 9	B항목의 중요도
A항목의 중요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중요도
해외전시회 지원																		해외시장개척 단 파견
해외전시회 지원																		해외상품홍보 지 제작/배포
해외시장개척 단 파견																		해외상품홍보 지 제작/배포
A항목의 중요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중요도
해외시장조사 지원																		무역정보시스템 구축·관리

해외시장조사 지원																		무역실무교육 지원
무역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무역실무교육 지원
A항목의 중요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중요도
수출선도조직 선정·육성																		수출물류인프라 지원
수출선도조직 선정·육성																		수출 전용 상품개 발 R&D지원
수출물류인프라 지원																		수출 전용 상품개 발 R&D지원
A항목의 중요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항목의 중요도
무역금융 지원																		수출신용보증 지원
무역금융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 지원																		수출보험 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4. 인터뷰 질문지

<농식품 연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와 함께 '농식품 연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농식품 연관 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농식품 연관 산업 수출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식품연관 산업의 수출의 애로점을 검토하고, 연관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법제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인터뷰를통해 (1) 농림수산식품 연관 산업의 분류 및 범주 (2) 농식품연관 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정책담당자, 전문가, 현업 종사자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반영코자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엄석진 올림

I. 농식품 연관 산업의 범위

- 1. (연관 산업 분류의 필요성) 농식품 연관 산업이라는 별도의 분류(범주)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연관 산업의 범주) 농식품 산업과 연관 산업을 별도로 분류한다면 농식품 산업과 연관 산업의 범주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 (범위 재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농식품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관 산업의 범위를 재정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이나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해외 참조 사례 포함).
- ※ (통계 및 code) 현재의 <u>농식품 및 연관 산업의 (수출) 통계</u>에서의 문제 점과 개선 사항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Ⅱ. 농식품 연관 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 1. (수출 환경) 현재 농식품 및 농식품 연관 산업의 수출 분야에 대한 간략 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 2. (수출 유망분야) 농식품 연관 산업 분야 중 수출과 관련하여 새로이 주 목할 만한 산업이나 세부 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3. (개선방안) 농식품 연관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십시오(장단기, 산업 분야별, 수출 단계별 어느 방법으로 설명하셔도 무방합니다).
- 4. (국내외 사례) 국내외 농식품 연관 산업의 수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

- 고 있는지 국내외 제도나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 5. (전문가/자료 추천) 마지막으로 연구진의 '농식품 연관 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좀 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u>의견청취가 필요한 전문가</u> 나 산업 단체, 참고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본 인터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성욱준(010-2003-1951, <u>side91@snu.ac.kr</u>)